

2002년 겨울호

언론중재

특 집

연예저널리즘과 인격권 보호

- 판결로 본 연예관련 기사의 법적 문제
- 연예기사의 익명보도와 실명보도
- 연예부 기자가 바라본 연예저널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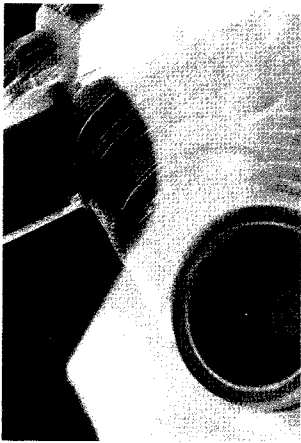
기획연재

일본 언론윤리법제의 현주소④

언론중재

2002. 겨울

차 례



계간/2002년 겨울호 • 제22권 • 제4호/통권85호
 인쇄/2002년 12월 25일 • 발행/2002년 12월 30일
 등록/1981년10월14일 등록번호/비-692
 발행인/박 영 식 • 편집인/최 정
 인쇄인/이 병 석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화:732-6031~5, 732-6011~3, 725-0050,
 730-9498, 2001-7627
 FAX:730-9420, 730-5487, 732-7585
 www.pac.or.kr
 식자편집/태성인쇄기획
 인쇄/(주)제이디씨텍

특 집

연예저널리즘과 인격권 보호

- 4 • 판결로 본 연예관련 기사의 법적 문제 • 김택수
- 16 • 연예기사의 익명보도와 실명보도 • 차용범
- 30 • 연예부 기자가 바라본 연예저널리즘 • 이유현

기획연재

37 • 일본 언론윤리법제의 현 주소 ④ • 한영학

지방토론회

- 46 • 대전지방토론회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 • 차재영
- 53 • 제주지방토론회
자유언론과 명예훼손 • 강정홍

해외언론계시찰기

60 • 스페인 • 포르투갈 • 프랑스 언론계
시찰 보고 • 강현석

위원칼럼

66 • 그림자가 작게 똑바로 서기 • 김광옥

해외동향

68

자 료

- 72 • 언론중재신청사례
- 104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 132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 154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언론과 법

160

위원회소식

164

언론법제권한

166

지상중계

168 • On-Line 중재상담실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특 집

연예저널리즘과 인격권 보호

판결로 본 연예관련 기사의 법적 문제

I. 들어가는 말

연예인의 인기는 언론보도의 양에 비례하며, 그 보도의 대상이 미담이든, 추문이든 개의치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연예인의 '성공욕'도 있을 터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연예자본의 이윤추구동기로 인해 일단 '스포츠라이트'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심산도 작용하는 듯 하다. 게다가 대중매체의 상업적 동기가 가세하면 연예상품은 연예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품으로 유통된다. 대중의 인기가 곧 돈이 되는 자본주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량홍보 수단만큼 손쉬운 통로는 없기 때문이다. 공연예술의 정수라 할 라이브 연예공연이 홀대받고, 대중매체에의 출연, 인터뷰 등에 '검은 돈'이 수수되고 있는 현실도 엔터테인먼트 상품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법적 쟁송도 증가일로에 있다. 정치적, 사회적 의미에선 '보도하는 자'의 독점적 권력이 무너지고, '보도되는 자'가 하나의 문화권력으로 권위의 경쟁을 시작하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한 권위의 경쟁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그 분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예관련 보도의 대표적인 분쟁은 단연코 특정 기사가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해 위법성이 있는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해 위법한지 등이다. 대개는 마약, 음주운전, 성상납, 뇌물수수 등 연예인관련 범죄보도에서 파생하는 문제가 많고, 이른바 '삼각관계' 등 스캔들관련 보도가 분쟁의 불씨가 되곤 한다. 최근에는 이와 달리 연예인의 초상권 또는 퍼블

김택수
변호사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월간 『말』 기자
- 제40회 시법시험 합격
-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 Ohmynews감사
- MBC 프로그램 자문변호사

미디어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유명 연예인들이 제기하는 소송도
증가일로에 있어

리시타권(Publicity)침해를 주장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연예인의 인권과 언론의 보도자유는 과연 상호 불상용의 간극이 있어 공존할 수 없는 것일까. 법원은 연예인관련 분쟁에 대해 어떤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II. 유형적 분쟁

1. 총 설

연예인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일반 사인과 다른 독특한 구조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연예인 역시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때론 사업자로서, 노동자로서 사적 계약의 주체가 되므로 계약과 관련한 민사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현행 형사법상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일반 사인보다 공중에 노출되는 횟수, 선정적 표현방법 등이 많아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예인이 원·피고 등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할 경우 일반 사인과 다른 법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고, 소송상 공격방어의 쟁점이 되기도 한다. 먼저 침해유형에 따른 제 분쟁형태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보고, 이른바 연예관련 보도, 특히 범죄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침해유형

1) 명예훼손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에서 부여하는 평가(‘외적 명예’)를 말한다.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일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명예감정’이나,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는 내재적 가치인 인간적 존엄성(‘내적 명예’)은 여기서 말하는 명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고(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명예훼손이란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등).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에 의하여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기사(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방송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방송보도)의 전체적인 흐름,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방송보도)가 독자(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¹⁾²⁾

한편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어떤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제3자가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여도 상관없으며, 전문보도로 이를 적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흔히 '공정한 논평의 법리'를 주장해 위법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그 경우에도 "논평 혹은 의견의 표명이 묵시적으로라도 어떠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고 그 전제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판결).

예컨대 스포츠신문 등에서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중국 섹스관광이 성행하고 있다는 비평기사로 왜곡된 성풍속을 고발하거나, 유명 연예인의 누드사진집이 지나치게 선정적이어

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한 경우 법적 책임이 다투어진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보도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그것이 공정한 논평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정당한 공익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 또는 공지의 사실에 터잡아, 의견의 정직한 진술이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³⁾

대법원은 일본 사진전문주간지에 우리 나라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이 실렸다고 보도하면서 그 기사내용과 함께 그 잡지에 게재된 사진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아가 그 잡지의 편집저자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잡지의 상업성을 충족시키고자 한국작가의 사진예술향을 악용하였다는 내용의 비평, 논평을 가한 잡지기사는 그 인용내용이 위 일본잡지가 상업성의 충족을 위하여 사진저작자의 사진예술향을 악용하였다는 비평으로서 사진저작

1) 신문의 경우는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일간신문사 기자가 타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위 기자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피의자가 범행혐의를 받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직접 취재에 의하여 그 범행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경우, 일간신문에 있어서의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사를 게재한 것이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방송의 경우는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텔레비전 뉴스 담당자들이 자동차 연비향상장치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도 하에 보도 첫머리에 "부스터 효과 없다"라는 제목을 화면으로 내보낸 다음,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그 연비향상장치 제조자들의 선전이 과장선전임을 암시하게 하고, 제조업자를 등장시켜 제품 설명을 하도록 한 후, 제조업자들이 선전 근거로 제시하는 각종 시험결과와 부정확성을 밝히면서 그와 대비되는 시민단체의 시험결과를 그 허구성을 밝히는 자료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자들의 선전은 과장선전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들에게 그와 같은 광고공세에 현혹되지 말도록 당부하는 말로 보도를 끝맺고 있는 경우, 보통의 주의를 가진 일반의 시청자들로서는 위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방식의 영향으로 보도 앞부분에서 한 제조업자의 제품에 대한 설명은 보도 첫머리의 뉴스진행자의 암시대로 그와 대비되는 객관적인 시험결과에 의하여 허구임이 밝혀졌으며, 그 보도에 등장하여 제품을 설명한 제조업자는 뒤에서 허구임이 밝혀진 효과 없는 제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제조업자 및 그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사회적 평가와 신용은 그 제조업자와의 인터뷰 장면을 자의적으로 삽입하여 편집 보도한 보도에 의하여 훼손되었다고 본 사례.

3) 영미에서는 '공정한 논평의 권리'(fair comment rule), '의견의 면책특권'(opinion rule) 등의 법리에 의하여 논평, 의견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왔다(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p.433 이하).

이니셜 보도만으로도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또한 연예인 본인은 자기와 관련한 명예훼손적 보도임을 알 수 있지만, 당해 기사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른바 ‘이니셜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최근 검찰의 연예계 비리 수사와 관련, 한 스포츠신문이 S자매, H양, K양 등 일부 정상급 연예인들이 성상납, 매매춘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하자, S자매측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측은 이니셜보도만으로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연예부기자들은 “이니셜도 사용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특징은, 반드시 성명이나 명칭을 사용하여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 약칭, 애칭이나 가명을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실제로 26세의 중견 모델 진모 양이 호텔과 여관을 돌아다니며 아무개를 접대하였다는 기사에 관하여 “수사기록 및 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일간신문에 허위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방송, 모델업

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위 기재만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하급심 판례로는, ‘프로듀서연합회보 특보’에 ‘연기자협회장 이모 씨’라고 표시하였더라도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누구임은 다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특정’을 인정한 바 있다(서울지방법원 1996. 2. 15. 선고 95가합26099, 97978 판결).

2) 사생활 침해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사항(예컨대, 이혼 사유, 출생의 비밀 등)은 그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공개되지 못한다. 따라서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보도할 경우에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민사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은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 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면서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

할 경우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⁴⁾

그러나, 연예인관련 보도의 대부분은 연예관계(스캔들), 이혼경위, 성형수술 등 사적인 비밀영역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 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의당 사생활침해로 인정될만한 분쟁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닌 한 연예인관련 사생활 보도가 법적인 쟁송으로 비화되는 일은 찾기 어렵다.

그런데, 유명 연예인이라고 하여 그가 내면적 자유로서의 사생활의 비밀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일지라도 피해자가 이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된다.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한다. 그러나 동의는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침해가 이루어진 때 그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와 관련하여 자주 다투어지는 바,

이는 결국 계약에 나타난 의사해석의 문제라 할 것이다.

또한, 보도의 대상이 된 자가 사인인가 공인인가에 따라 사적 사항의 범위와 그 공개의 허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사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동의가 없는 한 사회적 영역, 사사적 영역, 비밀영역 등에 대해 보도할 수 없다. 그러나 공인 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사적 사항을 공개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거나 또는 공적 인물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정당한 알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즉, 일반 명예훼손과는 달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가 여부는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문제는 연예인과 관련한 사적인 사항의 보도가 공공의 정당한 알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이다. 한국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하급심 판례로는, ① 인터뷰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혼 사유 등을 밝힌 것처럼 보도한 사안에서 명예 훼손과 함께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인정한 경우(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7. 선고 93가합25344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2. 2. 선고 99가합64112 판결), ② 유방 확대술에 관한 보도에서 피해자가 알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보도할 것을 조건으로 촬영을 허락하였는데 피해자가 누구인지 주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방송한 사안에서 “유방은 여성의 성적 부위의 하나로서 그 확대를 위한 성형 수술은 여성의 비밀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인의 비밀 보존 의사가 있는 한 이를 가족, 친지, 친구 등으로부터도 비밀 사항으로써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경우(서울고등법원 1996. 2. 2. 선고 95나25819 판결), ③ 신원을 철저히 숨길 것을 조건으로 인터뷰 촬영에 승낙하였는데도 인신 매매 조직원이라는 자막과 함께 그의 성(姓)을 인용하고, 얼굴의 일부분과 실제 목소리를 그대로 방영한 경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4. 2. 선고 98가합16587 판결) 등이 있다.

유명 연예인이라고 내면적 자유로서의
사생활의 비밀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한편 만일 유명 연예인이 언론기관에 대해 자신의 사생활관련 보도를 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경우에도 공공의 정당한 알 권리를 이유로 언론기관은 이를 보도할 수 있을까. 과문한 탓이겠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판결례를 찾을 수 없으나, 사건으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그 사생활에 관한 보도가 공적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초상권 침해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고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의 내용으로는, ① 자신의 초상이 함부로 촬영·작성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촬영·작성거절권), ② 촬영·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공표거절권), ③ 자신의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초상영리권,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등이 거론된다.

초상권을 정면으로 거론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보이지 않으나, 하급심 판결 중에 “초

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등의 규정에 의할 때 모든 국민은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초상권은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하고,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하며,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라 한 사례가 있다(서울지방법원 2000. 7. 4. 선고 99나83698 판결). 일반적으로 일반 사인의 경우엔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한 초상권 침해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그러나, 이른바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초상권침해를 부인한 하급심판례도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사진을 사

5) 그밖에 하급심 판례로는, ① TV에 대한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한 경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② 속칭 ‘오렌지 족’의 생활을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에서 원고들의 얼굴 사진을 승낙 없이 게재한 경우(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4가합36754 판결), ③ 주간 잡지에 과소비, 배금주의 풍조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중간에 “돈의 노예들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라는 부제를 단 여대생 사진을 그들의 동의 없이 무단 수록한 경우(서울지방법원 1993. 7. 8. 선고 92가단57989 판결), ④ 유명 연예인의 여동생이 사실은 딸일지 모른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사로 작성하면서 그 사진을 함께 게재한 경우(서울지방법원 1997. 2. 26. 선고 96가합31227 판결) 등.

용하거나 성명을 표기하는 것, 그 내용에 가족 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지법 1995. 9. 27. 자 95카합3438 결정).

연예의 초상권 보호와 관련한 분쟁은 대개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하급심 판례로는 ①“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스포츠선수 등과 같이 대중의 인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그 존재가 사회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품에 부착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그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 촉진의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유명인사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당해 유명인사가 획득한 사회적 명성, 평가 및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서 이는 당해 유명인사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유명인사는 이러한 고객흡인력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바, 이러한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 하면서, 이는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인격권과 같이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상속, 양도가 가능하다고 한 경우(서울지방법원 2000. 7. 14. 선고 99가합84901 판결 ; 이 판결에서는 미국의 영화배우였던 제임스 딘에게는 그의 사회적 명성, 평가 및 지명도 등에 기하여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흡인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임스 딘은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지배하

는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이 있다고 보았다). ②“유명 연예인(최진실)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음성, 연기 등을 상품의 광고나 포장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00. 5. 16. 선고 99나30444 판결) ③“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 하는 바, 이는 비록 인격권에 기초한 것이나 본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격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고객흡인력을 가지는 등 경제적 가치가 객관화되었다면 인격권과는 별도로 법으로 보호된다”고 한 경우(서울지방법원 1999. 7. 30. 선고 99가합13985 판결) ④최근 탤런트 홍리나가 “모델로 활동했던 모 의류브랜드의 카탈로그 사진을 현대백화점(천호 부평점)이 세일 광고전단에 무단 게재,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재판부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연예인의 초상권 무단 도용, 즉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만화 속의 모델이 성명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만화 속의 모델은 만화 속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침해의 금지를 요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헌법상 예술의

연예인 관련 범죄보도는
황색저널리즘의 상업적 이용과
보도의 공익적 가치간의 갈등을 유발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특히 모델이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공적인 인물인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고 하면서 “상업적 이용 또는 공표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만화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로 실존 인물의 성명과 경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만화 또한 예술적 저작물의 하나라고 보는 이상,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하급심 판결례도 있다(서울지법 1996. 9. 6.선고 95가합72771판결).

그렇다면 언론 보도와 관련해 연예인의 초상권이 충돌되는 경우는 없을 것인가. 퍼블리시티권은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 보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성명, 초상 등을 사용하는 것은 상업적 언론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본인의 허락 없이 전기를 쓰거나 소설화, 영화화, 연극화하여 성명, 초상을 사용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III. 연예인 범죄관련 보도

일반적으로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연예인관련 범죄보도가 과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매스미디어의 순기능에 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업적 언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유명 연예인의 인권침해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지 적잖은 논란이 제기된다.

유명 연예인의 범죄관련 보도는 대부분 성적인 담론과 관계돼 있거나(간통, 강간, 성상납 등), 마약, 음주운전 등과 관계된다. 한때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H양의 사례는 ‘성과 마약’이 복합돼 있어 매스미디어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아야 했다.

흔히 연예인관련 범죄보도에 있어서의 논란은 이른바 ‘황색저널리즘’의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명예 및 사생활 침해’와 ‘보도의 공익적 가치’간의 갈등을 어떤 수준에서 조절한 것인가에 있다. 첫째, 연예인의 범죄보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익명 보도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가. 둘째, 연예인은 그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실명이 공개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가. 실명공개가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보도의 한계는 무엇인가.

첫째, 대중매체의 범죄보도에 있어 ‘익명 보도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실천요강은 ‘범죄보도와 인권존중’에 관하여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

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현행범인 경우와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경칭의 사용여부는 개별 언론사의 편집정책에 따른다"고 정하고,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여 사생활 보호를 위한 윤리적 원칙들을 정해놓고 있다.

대법원도 "범죄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대중매체의 범죄보도는 출입처 중심의 취재시스템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체포단계 등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 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애당초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후에는 침해된 명예회복을 위한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기 어렵다. 어찌면 사법부의 판결이전에 '보도의 자유'라는 우산아래 '여론재판'이 선행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범

죄관련 보도에 있어 '익명보도의 원칙'이 준수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둘째, 그러나 예외적으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의 공공적 가치와는 별개로 그 범죄와 관련한 특정 신분(정치인, 연예인 등)이 범죄의 비난가능성을 가중시키거나, 불특정다수를 향한 추가적인 범죄 발생이 예견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반론과 더불어 의혹제기형 실명 기사를 허용할 수는 있다고 본다.

서울지방법원은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도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인 한 확정적인 사실 보도와 더불어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민주적 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기관의 속성상 당연히 그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언론기관에 대하여 의혹 내지 의문제기를 제한하고 확정적인 사실 보도만을 요구한다면 극단적으로는 어떤 사안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가 서로 모순되거나 상이한 경우 아무런 보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결론에 이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하고, 다만 언론기관의 의혹 내지 의문제기도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므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진실하여야 하고, 언론기관이 보도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피해자의 주장 및 이에 상반되는 자료를 함께 보도하여야 하며, 또한 언론기관으로서 그 상반되는 자료가 피해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등 또는

범죄관련 보도에 있어
'크로스취재'의 부재가 부실보도를 낳고,
소송으로 이어져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포함된 정당한 의혹 내지 의문제기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표제 또는 소제목을 편파적으로 편집하여 한쪽 편견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⁶⁾ 매스미디어의 범죄관련 보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이른바 ‘크로스취재’의 부재가 부실보도를 낳고, 결국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보도용어의 부정확성, 불필요한 사항의 보도 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연예인관련 마약범죄를 보도하면서, 마약의 취득경위, 범행의 수법, 현장 등에 대해 보도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범죄를 부추기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다.

IV. 연예인 신분인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 - 공적인물 이론

민형사 소송에 있어 법원은 원·피고 또는 피고인의 신분에 따라 어떤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원칙적으로 연예인도 법질서 테두리 내에

서 생활하고 있어, 그 일반적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 형사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신분은 특별한 신분범죄를 제외하고는 그 범죄의 성립요건을 좌우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 다만 양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로 될 뿐이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이 관련된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그가 강간, 간통 등 성폭력 관련 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에 가담한 경우 불리한 정상자료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에서 유명 연예인이 원고로서 언론기관을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그 원고의 신분 또는 지위에 따라 책임의 성부 및 범위를 달리 취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른바 유명 연예인의 경우 그가 ‘공적 인물’이란 이유로 언론사의 책임을 조각할 수 있는냐의 문제이다.

공적 인물의 이론 또는 공인이론이란 공직자나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원고로서 언론기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으려면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 혹은 미국을 위시한 외국에서의 진보적 발전을 고려하여 언론기관에 기사조작과 같은 고의가 있거나, 진위에 대한 무모한 경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예훼손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대법원은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에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목만을 따로 떼어 개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지만, 기사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주는 특정한 제목의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게재되어 일반 독자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의 게재행위 자체가 본문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 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인정하고 있다.

는 이론을 말한다.⁷⁾ 공적 인물로는 공무원 (public official), 전국적 인기의 연예인 및 운동선수, 전국적 인기의 앵커맨, 대기자, 예술가(persaive public figure) 등과 같이 업적, 생활양식, 직업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은 사람이 포함되고, 때에 따라서는 사건이나 공공의 문제나 행사 등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일시적으로 유명해진 사람들(vortex public figure)도 이에 해당한다. 공적 인물은 그의 존재나 직업이 이미 공적 성격을 띠고 있고, 언론은 대중에게 공익에 관한 정당한 관심사항을 알릴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사생활보호의 제약은 불가피하다. 또한 전국적인 인기나 지명도를 얻지 못하고, 공적인 논쟁의 계기도 없어 논쟁사안의 공적 인물로 취급될 수 없지만, 공개적인 직업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일해 일정한 전문적인 부문에서 지명도를 누리는 운동선수, 연예인 등을 제한적 공적 인물(limitted public figure)로 보아, 이들은 자신이 공개하려고 노력한 일정한 범위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거절된다고 한다.

물론 미국 관례법상 공인보도의 면책이론을 우리 법제 하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해석론상 부리가 따른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위법성조각의 범위를 확장하는 듯하다(헌법재판소 1999. 6. 24. 97헌마265 결정). 이에 이어 대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

7) 미국연방대법원은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공직자(public officer)의 공적행위에 관한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그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현실적 악의”가 있음을 피해자가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서는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책임을 상당히 제한하였는데, 그 뒤 위와 같은 법리는 공적인물(public figure)에까지 확대되었다(예컨대, 1967년 *Times, Inc. v. Hill* 사건). 한편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에 대하여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언론의 엄격책임주의가 배제·완화되었는데 그 최초의 판결은 1971년 *Rosenbloom v. Metromedia Inc.* 사건에서라고 한다(김상호, “언론의 명예훼손”, 『비교형사법연구』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pp.146-149).

우리 판례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론을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보도의 대상 및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당성의 면책범위를 확장

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254, 37531 판결).

이에 따르면, 우리 판례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론’을 수용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보도기사의 대상 및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당성의 면책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연예인이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그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다만 그 보도의 대상이 전면적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그 보도의 내용의 공익적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 그만큼 면책범위는 넓어질 것이다. 일반 공중에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연예계의 신인으로서 아직 이른바 ‘스타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한 연예인, 제한적 공적 인물일 경우에는 일반 사인보다는 그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이 적겠지만, 전면적 공적인물보다는 폭넓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연예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보도자유가 충돌할 경우 각각의 기본권적 가치를 보호하면서 상호 공존시키는 입법 및 해석의 기술이

손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 잣대가 자의적인 경우에는 형평성 시비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최소침해의 기준을 지켜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각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보도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보도 매체의 성격과 보도 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情報源)의 신빙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 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황색저널리즘의 무책임한 상업적 폭로주의도 배격되어야 한다. 그만큼 보도의 공공성, 공익성이 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이 공공적 이해에 기반해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단지 ‘chilling effect’만을 노리고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상 불이익한 제재를 주어야 한다.

결국 연예인 관련 보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자유와 인격권보호라는 양 기본권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상호 공존시킬 수 있는 규범조화적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특 집

언예저널리즘과 인격권 보호

언예기사의 익명보도와 실명보도

-작위적 익명보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차 용 범

동아대·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강사

- 동아대 법학과, 동 대학원 석, 박사(언론법)
- 미 미주리주립대 언론대학원 수료
- 부산일보 기자, 부산매일 시회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 저술: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시법적 논의의 한계",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추세", "언론법제 연구의 몇 가지 과제 - 판례연구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등

I. 언론자유와 한국의 언예보도

부정확 불공정한 보도는 언론자유를 파괴한다
-와트 홉킨스 '언론과 법'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이다. 민주 국가들은 통상 언론의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¹⁾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도 무제한 절대적인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언론은 자유만큼 책임도 갖는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 나아가 그 규제문제는 민주사회의 중요명제이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은 상호제약의 관계²⁾에 있는 만큼 적절한 조화가 절실하다. 현실적으로 문명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인격권 역시 철저하게 보장하는 경향이다. 이 같은 경향은 개인의 존엄성을 더욱 존중하려는 의미와 함께, 언론매체가 갖는 위험성을 뚜렷하게 인식한데도 그 이유가 있다. 언론활동에 있어서의 상업주의의 격화는 개인의 인격권을 경시하는 성향이 현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

- 1) 언론자유와 우월적 지위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입각, 이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등을 통하여 형성시켜온 법리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헌법의 한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헌재 1991. 9. 16.선고 89헌마165 결정).
- 2) 미국 헌법학자 샤푸어는 명예훼손법이란 각 사회의 고유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며, 명예훼손현상에 대한 해결은 각 사회가 명예의 중요성과 언론자유도의 중요성에 두는 사회적, 정치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Schauer, Frederick, "Social Foundation of the Law of Defamation: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Media Law and Practice 1, May 1980, pp.3-23; 이재진, "언론관련 명예훼손소송 추이 비교", 『언론중재』 2002 여름, p.37에서 재인용).
- 3) 김병국, 『언론과 시민권』,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p.18.

일부 언론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보도의 도구로서
작위적인 익명보도를 하고 있어

우리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언론보도에서의 인격권 침해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침해 가능성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⁴⁾ 특히 우리 언론은 언론매체의 양적인 증가세와 함께 언론의 책임과 윤리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헌법은 인격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언론도 미확인의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 과장된 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의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논의 주제가 아니다. 특히 타블로이드 저널리즘(tabloid journalism)으로 불리는 일부 저급지와 방송 연예보도의 인격권 침해 문제는 심각한 논의대상이다.⁵⁾ 이 같은 저급 언론들은 진실보도와 정확보도에 대한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지 않은 채, 소문이나

추측에 근거하여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를 반복하며 이윤을 추구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⁶⁾

연예보도의 취재방식 및 보도자세에 따른 폐단은 뚜렷하다. 익명보도의 문제점을 중시하지 않는 보도관행도 그 중의 하나이다. 최근의 연예보도에서 드러나는 익명보도 방식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기본명제를 되돌아보게 한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무시하거나 왜곡하여 보도하는 도구로 작위적인 익명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⁷⁾ 한 스포츠신문은 지난 2002년 8월 'S자매 H양 K양 성 상납-매매춘 검찰조사' 제목의 1면 기사를 보도했다가 민·형사상 재판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⁸⁾ 우리 언론은 환경변화에 대한 책임이나 익명보도 방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이다.

- 4) 이광범 외,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출판, 2001, p.16; 장호순, "언론자유와 명예훼손", 한국언론학회 2001년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pp.1-19; 차용범,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논의의 한계", 『한국언론학보』 제45-2호(2001 봄), p.388 등.
- 5) ①스포츠지 연예기사에 대한 취재원들의 반론 및 정정보도 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명예훼손소송도 늘어날 전망이다. 스포츠지가 2002년 들어 10월까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를 받은 사례는 4개사에 3-4건씩 15건으로 지난해 1-2건씩보다 늘고 있다. 소송 건수는 5개사에 8건으로 예년 수준이었으나 앞으로 더 빈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한 연예기사는 "기자들이 아직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연예인들은 과거와 달리 사실여부를 떠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미디어오늘, 2002. 11. 21일자, '스포츠지 연예기사 분쟁 늘다').
- ②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방송에 의한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개선방안을 위한 전문가토론' 결과 방송사 연예프로그램들의 여성연예인 관련 보도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토론 중 '여성연예인 인격권 침해 사례 분석'(발표: 언론중재위 임병국 중재심의실장)에 따르면, 황수정 씨 마약복용, 이영자 씨 지방흡입술, 백지영 씨 비디오, 이태란 씨 매니저 고소, 성현아 씨 마약복용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건 중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있는 것이 13건(52%),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 가능성 있는 것이 각각 4건(16%)으로 나타났다(미디어오늘, 2002. 8. 15일자, 'TV 여성연예인 보도 인권침해 심각').
- 6) 강승구 외, 『미디어비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1, p.102. : 이경숙, '방송의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탐구', 2002년 한국여성단체연합 토론회 발표원고.
- 7) 서정우, "오보의 발생과 대책", 언론중재위원회 2000년도 부산지방토론회 발표원고.
- 8) 서울지검 형사7부는 이 기사를 작성하여 미스코리아 출신 여자 모델트 설수진 수현 자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해당 스포츠신문 당시 편집국장과 연예부장, 취재기사를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1월 30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기사는 "성 상납과 관련한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정 재계 인사들과 상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설씨 자매는 지난 8월 23일 이 스포츠신문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제 우리 언론은 자기 판단에 따라 보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언론 스스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넓은 언론자유를 누리는 상황. 언론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매체경쟁 역시 치열해진 상황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이 글은 보도원칙으로서의 실명보도 및 익명보도의 일반 이론을 훑어본 뒤, 특히 최근의 연예보도에서 나타나는 작위적 익명보도의 문제점을 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작위적 익명보도의 언론법제 및 언론윤리 차원의 문제점을 도출, 연예보도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려 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작위적 익명보도의 사례와 최근 연예보도의 경향도 충실하게 검토할 것이다.

II. 익명보도, 예외적 원칙과 작위적 관습

‘사실을 기초로 하라’는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믿어라

-뉴욕타임즈 편집국장 클린턴 다니엘의 ‘기자의 의무’에서-

1. 일반적 보도원칙으로서의 실명보도

언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덕목은 ‘정확한 보도’이다. 언론보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취재과정에서 추구한 공정성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자가 가령 용어의 선택이나 취재한 사실의 인위적 취사선택, 적절하지 못한 강조방식 등으로 기사를 어느 방향으로 은밀하게, 또 의도적으로 몰고 간다면 이는 분명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 언론인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⁹⁾

그렇다면 어떤 기사가 독자에게 신뢰를 주는 정확한 기사인가? 원론적으로 ‘시간, 장소, 배경과 함께 실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의 신원이 명확한 기사’라는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이 때문에 초창기 미국 언론은 취재를 하고도 보도하지 않는 행위와 함께,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기사를 쓰는 행위를 언론자유 의 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¹¹⁾

결국 언론의 일반적 보도원칙은 실명보도이다.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취재원과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기자는 ‘항상’ 직접인용의 출처를 밝혀야 하며, 간접인용의 경우도 대개는 출처를 밝혀야

9) 콘라드 핑크(한국언론연구원 편역), 『언론윤리』, 한국언론연구원, 1995, pp.147-149.

10) 윤식홍, 『오프 더 레코드』, LG상남언론재단, 1998, p.16.

11) 최근 미국신문편집인협회(ASNE) 연구 프로젝트의 중심주제는 신문의 신뢰도 향상이다. 언론인과 독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의 근본적 원인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성인독자의 77%는 익명의 정보원을 통한 기사의 신뢰도에 우려를 표시했다. 협회는 독자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확성-선정성 배제-편견 배제(공정성)-독자와의 유대 등 4가지를 지목,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Robert J. Hairman, *Best Practices for Newspaper Journalists*, 1999-1, The Freedom Forum, p.17.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예외적으로 익명보도를 할 때에는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¹²⁾ 그래야만 수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마이크 밀러(Mike Miller)는 WSJ이 지켜온 전통적인 가치로 '모든 정보의 출처를 독자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것', 그리고 '독자에게 기사 정보 하나 하나는 모두 확인된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을 들고 있다. 신문은 독자에게 정보의 출처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¹³⁾

뒤집어 보면 취재원의 익명보도는 언론매체가 불신 받는 원인의 하나이다. 언론계는 익명보도를 하나의 관행으로 삼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기자가 추측으로 쓴 것인지, 취재원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프리덤 포럼(Freedom Forum)이 클린턴-르윈스키 보도와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익명보도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대답했다. 미 신문편집자협회(ASNE)의 독자 신뢰도 조사 결과 역시 독자의 77%는 익명보도 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다고 대답했다.¹⁴⁾

언론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예외적으로 익명보도를 할 때는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상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없을 때 언론매체는 수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여론조작 등의 부작용을 빚게 되는 것이다.

2. 예외적 보도원칙으로서의 익명보도

실명보도가 일반적 보도원칙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취재원을 모두 밝힌다는 것은 이상이다. 취재원을 밝히지 못하고 보도해야 할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과 취재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인용되기를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익명보도는 언론보도의 필요악이다. 현실적인 보도과정에서 익명보도를 피할 수 없으며, 실제 언론이 만나는 익명보도 상황 역시 천차만별이다.

미국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공보비서였던 터호스트(J.F. Terhost)는 백악관 출입기자에게 기사출처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온 더 레코드(on-the-record), 온 백그라운드(on background), 온 디프 백그라운드(on deep background), 오프 더 레코드(off-the-record) 등이 그것이다.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의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취재원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 취재원의 요청을 깨뜨리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오프 더 레코드와 관련한 유명한 사례로 워싱턴 포스트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다. 밥 우드워드 칼 번스타인 두 기자는 결과적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사임하게 만든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하며 '고위 소식통'(high-level sources)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기사화를

12) The Missouri Group, *News Reporting & Writing*, 4th edition(NY: St.Martin's Press, 1994), pp.131-133.

13) Chip Scanlan, *Reporting and Writing: Basics for the 21st Century*, www.poynter.org; 백병규, "취재보도: 작문과 표절, 그 위험한 유혹을 퇴치하는 방법", 『Media Worldwide』, 2002, 10월호, p.36-41에서 재인용.

14) Hairman, op.cit, p.17.

계속했다. '딥 스로우트(deep throat)'라는 익명의 내부 제보자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영원히 햇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언론은 이처럼 취재원을 익명으로 보도했을 때 언론사가 입는 피해(신뢰도 추락 등)보다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취재원 익명보도를 하는 것이다. 그만큼 익명보도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자는 확인한 정보를 온 더 레코드(on the record)로 취재하기 위해 제3의 장소에서 정보를 얻으려 노력해야 한다.

미국 언론들은 오랜 기간 비밀스런 정보원을 밝히지 않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왔다. 이른바 '취재원을 감출 권리'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언론들은 취재원을 공개할 권리를 위해 법원과 잦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취재기자가 취재원 비공개를 약속했다라도 편집간부가 뉴스가치를 위해 취재원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¹⁵⁾

'오프 더 레코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이념은 독자에게 더 중요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보다 많이 알려 주는데 있다. 이를 위

해 불가피하게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오프 더 레코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많은 폐단이 발생한다. 취재원과의 담합, 언론의 감시기능 약화, 취재원의 악용(언론 조작), 언론과 일반의 정보격차 발생, 보도의 질 저하(오보 발생), 취재원과의 분쟁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그런 경우 언론은 이용당하며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다.¹⁶⁾

이 때문에 세계 유수 언론사들은 '오프 더 레코드' 등 익명보도를 기자 개인에게 맡겨두지 않고 회사 차원의 처리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취재원을 완전히 밝히지 않고 정보를 입수하려 할 때 기자는 취재원을 명기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도 불가능할 경우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를 기록해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익명보도는 언론사의 공신력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 국민 일반의 권리의식이 날로 높아가는 상황에서 자칫 언론사의 이미지나 경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익명보도를 요구하는 예외적 원칙도 있다. 인격권 보호를 위한 익명보도원칙

15) 연방대법원의 심리에 따른 원칙(Cohen v. Cowles Media Co.)은, 취재원 비공개 약속은 법적 의무가 있는 약속이라는 것이다. 취재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기자의 약속은 금반언(禁反言: 과거의 언행에 어긋나는 주장을 금하기 위한 영미법상 원칙) 이론(the theory of promissory estoppel)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라는 것이다.(Communication Law Writers Group, *Communication and the Law*, 2002 edition(AL:Vision Press, 2002), pp.297-299).

16) 미 스탠퍼드대 부르스 매켄타이어 교수에 따르면, 취재원이 '오프 더 레코드'를 불순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관측기구(Trial Balloon)의 역할이다. 정보를 띄워 언론의 반응을 살펴거나, 여론을 의도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둘째, 연막전술(Smoke-screen) 효과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 언론과 여론을 혼란시켜 화살을 피하려는 전법이다. 셋째, 역정보 작전이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쓴 고육책으로, 역정보를 오프 더 레코드를 통해 흘리는 방법이다. 이런 정보는 과장되거나 거짓인 것이 대부분이다(윤석홍, 위의 책, pp.74-75에서 재인용).

연예인 관련 보도시
무책임하게 이니셜을 남발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교묘하게 자극

이다. 언론윤리강령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존중을 위해 익명보도를 권장하고 있다. 언론의 범죄보도에 공익성이 있고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면이 있더라도 피의자의 명예권도 그에 못지 않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⁷⁾ 우리 법원도 원칙적으로 익명보도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도 예외는 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실제로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경우 실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사안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보도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보도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인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보도에 따른 인격권 피해가 없도록 보도 전의 철저한 기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⁸⁾

3. 작위적 보도관습으로서의 익명보도

우리 언론의 보도관습 중에는 작위적인 익명보도가 있다. 취재원을 익명으로 쓰느냐, 실명으로 쓰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다. 단순히 보도의 편의를 위해 익명보도를 하는 예도 적지 않다. 우리 언론은 실명보도의 전통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표기사의 경우 누가 '발표했다' 또는 누

가 '밝혔다'고 취재원을 드러내지만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도 취재원을 명시하지 않는 예가 많다. 의도성이 없으면서도 취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며, 익명보도가 보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듯 하다. 언론 수용자들은 매일같이 정부 당국자는, 여권은, 야권은, 검찰은,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금융계는, 사정당국은 등등의 취재원이 불투명한 기사를 읽고 있다. 단순한 생활기사에서 '회사원 모씨' '가정주부 K씨' 따위를 예사로 쓴다.

우리 연예보도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폐단 중에는 '행위를 한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작위적 익명보도가 있다. 이른바 '이니셜보도'이다. 우리 언론은 특히 연예인관련 보도 때 무책임하게 이니셜을 남발, 대중의 호기심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이니셜보도는 당연히 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나아가 사건과 관련 없는 연예인에까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톱 탤런트 김모양'의 추문을 다룬 기사가 보도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같은 김씨 성을 가진 다른 탤런트들까지 피해를 입는다. 'K양'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김씨뿐 아니라 강씨, 고씨, 구씨, 권씨 등 같은 이니셜로 표시될 수 있는 여러 탤런트가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인격적인 법익을 내세워 마치 익명보도가 사건보도의 원칙인 양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익명보도가 독자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이다. 보도에 대한 소송이

17)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2001 봄호, p.110.

18) 동아일보, 2002. 11. 15일자('피의자 및 의혹사건 관련자의 인권보호').

요즘처럼 빈발하는 세상에서 익명보도는 기자들에게 손쉬운 도피처일 수는 있다. 반면 익명보도를 남발하면 기사의 신뢰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III. 연예기사의 작위적 익명보도, 왜 문제인가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에 수반되는 가장 큰 위험은 언론이 자유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망각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월버 쉬람의 '언론과 책임'에서-

최근 연예보도에서 드러나는 작위적인 익명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분명 문제가 있다. 선정적이고 경쟁적인 기사로 개인의 인격권을 무참하게 침해하는 유형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¹⁹⁾ 그 연예보도 중 작위적 익명보도 관행은 법률적인 책임을 저야 하거나 언론윤리를 위배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언론의 작위적 취재관행이 문제를 빚는 요인은 대략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매체간의 치

열한 속보경쟁, 특종경쟁, 판매경쟁으로 위법적 보도관행을 규제할 윤리규범이나 법규정의 적용이 무력화되고 있고, 둘째, 언론인의 윤리강령이 가지는 직업적 규범의 구속력(자율규제)이 약해지고 타율적인 법적 규제가 부상하고 있으며, 셋째, 국민들의 법의식과 권리의식이 높아져 위법적 취재관행을 전처럼 감수하고 있지 않고,²⁰⁾ 넷째, 위법적 취재관행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²¹⁾

결국 언론이 윤리와 품위를 잃고 정확하지 않은 보도, 선정적인 보도를 거듭할 때 언론보도에 따른 인격권 침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언론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언론의 책임에 따른 마찰 역시 그만큼 커질 것이다. 우리 언론의 작위적인 익명보도 형태와 익명보도에 따른 부작용, 언론계의 비평 등 몇 가지 사례를 본다.

〈사례 1〉 부정확한 근거와 분별없는 익명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

○ 설수진 '성 상납' 분통 - 'S자매 헛소문' 강력대처

탤런트 설수진과 그 가족이 난감한 오해 때문에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S자매가 성 상납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

19) 성동규, "스포츠신문의 연예인 보도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 2002 봄, pp.82-83.

20) 분별없는 익명보도에 대한 국민일반의 법의식 역시 무시 못할 수준이다. 서울 'M산부인과' 소속 의사 4명은 최근 "공포영화 '하얀방'에 등장하는 병원 이름을 'M산부인과'로 지어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제작사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의사들은 "산부인과와 특성상 환자들은 의료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극히 민감함에도 제작사는 특정 산부인과의 상호를 써 병원 업무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영화 '하얀방'은 방송국 PD와 형사가 여자들의 의문의 죽음을 조사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심리 공포물이다(조선일보, 2002. 11. 12.).

21) 이승선,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언론중보자 책임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제27호(2000 봄), pp.304-306.

작위적 익명보도의 관행은 언론 윤리에 위배되며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초래

돌면서 주변에서 S 자매를 자신과 동생 설수현을 지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 ...설수진이 성 상납설에 휘말린 것은 연예계 비리 수사 과정에서 성 상납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는 시기에 공교롭게 설수진이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 설수진은 앞으로 자신과 관련된 헛소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한다는 입장이다.(일간 스포츠, 2002. 8. 15.)

○“성 상납 기사로 명예훼손” 설수진 자매 10억 손해소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설수진-수현 자매는 “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로 개인적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다”며 모 스포츠신문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측이 최근 보도한 ‘S자매, H양, K양 성상납-매매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마치 원고들이 관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피고측이 기사에 적시한, 현재 탤런트로 활동하고 있는 S자매는 원고들 밖에 없어 일반인이라면 누가 S자매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세계일보 2002. 8. 23.)

〈사례 2〉 익명보도 남용 사례

○연예인 ‘성 상납-매매춘’ 검찰조사

H양 K양 P양...정재계 인사-PD-영화 감독 ‘성 태풍’

이미 세 명의 정상급 여자 탤런트들이 성 상납과 매매춘 관련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두 명은 추가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등 연예계 성 상납, 매매춘 관련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미 검찰에 출두해 성 상납, 매매춘 조사를 받은 여자 탤런트는 H양, K양, P양 등 세

명이다.

이들 외에도 유명 매니지먼트사인 A사 소속의 K양, G사 소속의 또 다른 K양 등이 정,재계 인사에게 성 상납과 매매춘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도 할 예정이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김규현)는 가요계 PR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연예인 성 상납, 매매춘의 고리도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한국일보, 2002. 8. 13.)

○연예인 섹스 스캔들 ‘누가 누구에게 줬나?’

‘PR비(앨범홍보비)’ 비리 수사과정에서 터져나온 인기연예인들의 ‘성 상납’ 의혹으로 연예계가 온통 들끓고 있다. 이미 여자 연예인과 기획사 관계자, 유명 ‘마담 뚜’ 등이 성 상납 연루혐의로 줄줄이 검찰에 불려 들어갔다. 이들 상당수는 톱클래스의 인기 탤런트와 CF 모델. 검찰은 인기 탤런트 H씨를 불러 정치권과 재계 인사들과의 성관계 여부에 대해 조사할 데 이어 CF모델 출신 신세대 스타 K씨 등도 조사했다.

인기탤런트 K, P, K씨, 신인 K씨 등도 성상납 혐의가 포착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거명되는 여자 연예인과 정·재계 인사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사회지도층 전체의 ‘섹스·부패 스캔들’로 비화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주간한국, 2002. 8. 23.)

〈사례 3〉 익명보도 남용 뒤 중간 수사결과 보도

○PR비 수수 14명 구속기소 ‘성 상납’ 대가성 못 밝혀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현 부장검사)는 25일

연예계 비리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연예계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 여배우·탤런트 4-5명을 소환, 성관계 여부를 집중조사했으나 사실관계 및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서울경제, 2002. 8. 26.)

〈사례 4〉 범의자는 의명보도하며 범죄 피해자인 연예인의 실명과 피해사실을 공개한 기사

○이태란 전 매니저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 10단독 박영희 판사는 14일 탤런트 이태란을 협박하고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란의 전 매니저 안모 씨(4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98년 8월부터 이태란 매니저로 일하면서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일간스포츠, 2002. 3. 15.)

〈사례 5〉 의명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례

○신승훈 "신모 씨 저 아닙니다"

가수 신승훈이 '검찰조사 받고 왔다'는 구설에 휘말려 긴급 진화에 나섰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예계 PR비에 대한 검찰조사와 관련, '인기가수 신 모씨와 김 모씨가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된 후 신승훈은 '신모 씨의 주인공'이라는 소문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임을 밝혔다. 신승훈은 "팬들이 너무 놀라고 걱정해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S자만 들어가도 가슴이 철렁하는 팬 여러분, 신 모씨는 제가 아닙니다"라며 팬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글을 남겼다.(일간스포츠, 2002. 7. 19.)

〈사례 6〉 연예보도 비평기사

○'루머'도 과연 정보인가

문제는 스포츠신문과 TV 연예프로그램이 근거 없는 루머를 무차별 확대 재생산하는 풍토이다. 분별없는 보도가 연예인을 대중의 술 안주감으로 만들고, 끝내 송사로 치닫는 불행을 만드는 것이다. 연예계 주변에서 생산되는 이런 터무니없는 괴담은 부지기수다. '여배우 D와 E는 동성애 관계'라거나, '중견 여배우 F씨가 운동선수 출신 G씨와 묘한 관계'라는 등, 그야말로 끝이 없다.

민영 MBC와 SBS는 물론이고 명색이 공영방송인 KBS조차 주말 황금시간대에 이른 바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 각종 스캔들과 루머를 '정보'라며 마구잡이로 방송하고 있다. 인기인의 인격과 시청자의 건강한 정서를 함께 짓밟는 행태는 이제 그만되어야 한다.(한국일보, 2002. 9. 17.)

○연예계에 '이니셜 증후군'

연예계가 '이니셜 증후군'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월 연예인 마약수사를 시작으로 촉발된 이니셜 증후군은 지난 7월 중순 연예계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확산되더니 이달 들어서는 연예인 성 상납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 절정을 맞고 있다.

이는 연예인관련 보도 때마다 무책임하게 영문 이니셜을 남발하면서 비롯된 현상. 특히 대중의 호기심을 교묘히 자극하는 이니셜의 특성 때문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인터넷, 메신저 등에서는 '이니셜 주인공 찾기'로 떠들썩하다. 언론사 등에도 이니셜 주인공을 확인하려는 문의전화와 이메일의 폭주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니셜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건과

이니셜 보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건과 관련 없는 연예인들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

는 관련이 없는 연예인들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마약, 성 상납 의혹 등으로 세인의 입에 올랐던 한 인기 여배우의 매니저는 “사건에 관련 있다는 소문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면 오히려 그 소문이 왜곡, 확대되는 걸 경험했다”며 “그렇다고 해명을 안할 수도 없고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니셜 증후군’에 몸살을 앓는 연예인이 늘어 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문화일보, 2002. 9. 27.)

1. 언론법제 측면에서

우리 법제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언론이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보도했을 경우, 나아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경우 명예훼손을 했더라도 면책을 인정한다. 언론의 면책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은 언론의 비판기능상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만한 보도를 하기 때문이다. 또 언론은 제3자를 정보원으로 한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언론의 활동공간을 넓히려는 것이다.

한편 인격권 보호를 위해 언론보도 때는 원칙적으로 진실확인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원(출처)을 밝히지 않는 익명보도에 있어서도 ‘진실한 사실’은 중요하다. 우리 언론의 전문(傳聞)보도는 흔히 “이 ...라고 주장하였다” 또는 “에 대하여 ...라는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진실한 사실’은 주장의 존재 또는 혐의의 존재 자체가 아닌, 주장이나 혐의내용이 진

실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사실이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근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실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언론기관이 그 진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책임을 진 사례는 많다. 언론기관이 타인으로부터 제보나 풍문 또는 우연히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하는 경우 관계자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진실확인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만 비로소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를 인정한다는 것이다.²²⁾ 피의자의 범죄를 보도할 때도 우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한다. 단 피의자가 이른바 ‘공인’이고 피의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공공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실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

익명보도원칙은 이름만 밝히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김모 씨, L정치인 처럼 표시하더라도 그 기사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언론기관이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예컨대 ‘유명배우 김모 씨(40세)’ 또는 ‘탤런트 ○양’ 등과 같이 익명처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본인으로 오해받아 그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실명을 밝히던지 실명을 밝힐 상황이 아니면 가명임을 표시하고 사용하거나 단순히 ‘모 배우’, ‘모 탤런트’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는 익명표시를

22)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등.

잘못했을 경우 그 범주에 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공표는 내용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²³⁾하므로,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경우 면책이 될 수 있을 뿐 일부 사람의 흥미위주의 관심사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흔히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개인의 주거지, 서신, 초상 등에 대한 침해 개인정보에 대한 공적 폭로 개인을 왜곡시키는 공표 개인의 이름과 초상의 영리적 활용 등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우리 언론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 명예훼손에 이은 큰 걱정거리이다.²⁴⁾ 우리 연예보도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사실상 실명보도는 언론에 대한 소송을 예방한다. 많은 인격권 침해소송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비슷한 신원을 공개하는데서 발생한다. 실명이라 하더라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무책임한 신원공개 때 주변 여러 사람이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미

국 판례는 당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 또는 비슷한 신원 표기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도용행위로 본다.²⁶⁾

특히 미국이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개인의 명예보다 더 중시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전통에 따라 언론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를 더 중시해 왔다.²⁷⁾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흥미위주의 무책임한 보도를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추세라는 것이다. 언론은 국민의 인격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2. 언론윤리 측면에서

최근 언론보도의 인격권 경시현상은 '언론인은 본질적으로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하는 메릴(John C. Merrill)과 데니스(Everette E. Dennis)의 논란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²⁸⁾ 이 같은 논란은 언론자유 측면에서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논란은 결국 언론매체에 대한 외부적 규제 필요(David Gordon)와 외부적 규제 반대(John M. Kittross)의 윤리적이며 정치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

23)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24) 언론보도에 따른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는 구체적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프라이버시의 경우 사회적 평가의 저하와 관계없이 침해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진실의 면책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미국 법제는 특히 '사적인 정보'를 '영리적 목적'에 따라 공표하는 것을 프라이버시 침해의 주요요건으로 본다(Donald M. Gillmor, Jerome A. Barron, *Fundamentals of Mass Communication Law*(MN: West Publishing Co., 1996), pp.83-85).

25) Fred Felder, John R. Bender, *Reporting For The Media*, 7th edition(TX: Harcourt College Publication, 2001), p.507.

26) Wayne Overbeck, *Major Principles of Media Law*, 1993 edition(TX: Harcourt Brace, 1993), pp.152-154.

27) 차재영,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위원회 2002. 10. 18. 토론회 발제자료.

28) Everette E. Dennis, John C. Merrill, *Media Debates: Issues in Mass Communication*(NY: Longman Publishing Group, 1991, pp.150-157).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운 우리 언론의
연예보도는 국민의 알 필요를
앞지르고 있어

이다. 언론매체에 완전한 자유를 주어 개인의 인격권을 지켜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언론의 연예보도 방식을 볼 때 역시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주장하는 언론매체의 입장은 실제 국민의 알 필요(need to know)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²⁹⁾ 연예보도에서 나타나는 '문제 있는 기사'들은 더러 언론법제의 영역을 피할 수는 있다. 언론법제는 언론자유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언론의 책임을 경감하는 여러 특이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문제 있는 기사'들이 언론윤리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언론인은 전문인인 만큼 전문직에 맞는 언론윤리를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³⁰⁾

이 언론윤리는 보도현장에서 흔히 강령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윤리강령은 언론기관이 스스로 올바른 관행을 확립하고 책임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 행동의 기준으로 제정한 윤리적 기준이다. 우리 언론도 전적으로 통합한 언론윤리강령을 갖고 있고, 전국규모 언론단체들과 주요 신문·방송도 각각의 윤리강령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강령 역시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항목별 윤리준칙을 선언하고 있다. 제5조 '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항에서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한 것이 그러

하다.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나아가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항에서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방자하여 보도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항은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항에서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선언한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항에선 "언론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약속한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항은 "언론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라고 전제하고,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공중의 신문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공정하고 정직하게 취재할 것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윤리를 다시 공표했다. 신문과 기자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 저하현상에 직면, 취재나 보도에 있어 철두철미하게 직업윤리에 입각하여 언론의 사명에

29) 강승구 외, 위의 책, p.104.

30) '저널리즘은 전문직'이라는 Dennis와 '저널리즘은 전문직이 아니다'는 Merrill의 논쟁(위 각주 28과 같음)이 있었으나, 이제 언론인은 전문직의 두드러진 특성을 대부분 구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보편적이다. 미국 '언론인의 신조(The Journalist's Creed)'는 도입부터 "나는 믿는다. 언론인은 한 전문직이라고"로 출발한다.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새 '기자행동규범'은 첫째, '기자가 취재에 임할 때는 항상 인권 존중을 마음에 새겨두고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신문들이 요미우리 같은 규범들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 언론매체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인권침해와 보도피해 소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¹⁾

우리 언론은 이제 언론윤리부터 자각해야 한다. 굳이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기사만이 '문제 있는 기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언론은 스스로 선언한 언론윤리를 위배하는 기사를 '문제 있는 기사'로 취급해야 한다. 언론은 왜 언론윤리를 지키지 못하는가? 아니, 언론은 왜 언론윤리를 지키지 않는가? 언론은 자율규제를 위한 언론윤리를 포기하는가? 타율규제에 따른 법적 쟁송을 자초하는가? 우리 언론은 '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 '취재원의 명사와 익명조건' 같은 너무나 뚜렷하고 간명한 선언규정들을 너무나 저돌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다.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의 언론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맨처(Melvin Mencher)의 '기자의 윤리적 기준' 중 한마디는 특히 연예보도가 명심해야 할 경구일 듯 하다. '기자의 한계와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an awareness of our limitations and responsibilities)는 것이다.³²⁾ 기사는 언제나 진실을 말할 수는 없는 것. 그런

만큼 기자는 자신이 작성한 기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 등에 관해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IV. 연예보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

'흠치지 말라(표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짜맞추어 놓고 보도인 척 가장하지 말라', '이것은 옳은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깜박거리면 즉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라 -미 버클리대 언론학 교수 신시아 고니의 '바른 언론'을 위한 세 가지 규칙에서-

월간 '신문과 방송'의 '2002 언론계 10대 뉴스' 선정 결과를 보면 언론계도 언론윤리에 대한 심각한 자성을 하고 있는 듯 하다. 1위부터 3위를 '연예계 금품비리 사건', '중앙 일간지 경품전쟁', '언론인 패스21 주식수수(유타식 게이트)'가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 조사 결과를 전하는 기사는 "해마다 언론윤리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처럼 언론비리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언론인들의 심각한 자성이 절실하다"고 적고 있다.³³⁾

언론인들의 언론윤리에 대한 자성 움직임에도 우리 언론의 위법적·비윤리적 보도관행은 좀처럼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스포

31) "부정확한 기사-요미우리 사회부장이 말하는 기자행동규범", 『Media Worldwide』, 2002.7월호, pp.10-13.

32) Melvin Mencher, *News Reporting and Writing*, 5th edition, (IA: W.C.Brown Publishers, 1991), p.256.

33) 프레시안 2002. 11. 26. '연예계 금품비리' 올해의 언론계 뉴스 1위.

연예보도 관행의 개선은
언론윤리 의식의 향상과 저널리즘
원칙의 회복에서 찾아야

츠신문의 선정적 보도경쟁은 여전하다.³⁴⁾ 주요 일간지의 보도 역시 ‘연예계 성 상납’ 기사 같은 선정적 보도가 ‘10대 뉴스’ 중 1위인 ‘연예계 금품비리’ 보도를 양적으로 압도한다.³⁵⁾ 결국 우리 연예보도는 이제라도 옛 관행을 극복할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연예인을 흥미위주의 관점으로 다뤄온 현재의 보도태도를 탈피하지 않으면 선정성 시비는 물론 언제까지 인격권 침해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예보도의 보도관행을 바꿀 전기는 크게 언론윤리 의식의 향상과 저널리즘 원칙의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 언론의 수준은 실속있는 기사로 판가를 나는 것이지만 그 품격은 사회적 책임성에 바탕한다. 대중매체로서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의 구현 여부가 곧 그 품격의 높고 낮음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스포츠신문들은 제호 밑에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 선언을 단순한 전시용 구호로 끝낼 수는 없다. 스포츠신문은 ‘독자가 원하기 때문에’ 혹은 언론의 자유라는 구실로 지금과 같은 타블로이드 저널리즘을 고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 언론인은 스스로 독자 시청자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취재보도과정의 신뢰성 약화요인으로 사실성의 차원, 윤리성의 차원을 들고 있다.³⁶⁾ 그러면서

도 좀처럼 개선 노력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언론인은 언론현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진실 밝히기, 인간성 존중, 언론의 책임 같은 저널리즘의 여러 원칙들이 그것이다.

나아가 우리 연예보도에도 보다 폭 넓고 깊이 있는 보도비평이 필요하다. 최근 연예보도에선 최소한의 윤리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제어하는 언론 내부의 윤리적 압력이 걱정스러울 만큼 취약하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우리 연예보도에 필요한 보도비평의 유형³⁷⁾은 특히 직업주의적 규범(professional code) 준수의 원칙이다. 언론과 언론인이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 차원에서 연예보도 관행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언론은 수용자와의 벽이 더 두텁고 높아지기 전에 나서야 한다. 그것은 규정이나 강령 같은 ‘형식’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행동’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분명 언론이 나아갈 길은 이것밖에 없음도 깨우쳐야 한다. 특히 언론인은 ‘전문인’인 만큼 진정한 의미의 전문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전문적 능력을 갖추며,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인지 회의할 도덕적 반성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

34)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는 2002년 11월 27일 스포츠신문의 소모적인 선정성 경쟁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기사는 스포츠신문의 선정성 실태와 요인을 분석하며, 최근 1면 제목으로 나온 “연예인 매매춘 진상 확인...재벌3세 6개월에 50명”, “심야 밀애 들통, 미시텔런트A-재벌 2세”, “유민 ‘내 가슴 왜 만져’”, “‘다리 못벌려’ 장나라 촬영 거부” 등 사례를 들고 있다(한국언론재단 미디어뉴스, 2002. 12. 3. ‘스포츠신문의 소모적인 선정성 경쟁’).

35) 한국언론재단의 신문기사 검색사이트 ‘카인즈’를 통해 스포츠신문이 아닌, 서울지역 일간지의 2002년 1월부터 11월까지 보도기사 양을 조사한 결과 ‘연예계 금품비리’ 보도는 44건, ‘연예계 성 상납’ 보도는 77건을 차지했다.

36) 한국언론재단, 조사연구서『한국언론의 신뢰도-위기현황 분석과 극복방안』, 한국언론재단, 2001, pp.199-202.

37) 한국언론연구원, 연구보고서 98-4 『신문보도와 비평』, 한국언론연구원, 1998, pp.117-118.

특 집

연예저널리즘과 인격권의 보호

연예부 기자가 바라본 연예저널리즘

'총성 없는 전쟁'의 시작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삼성 마해영의 끝내기 홈런이 터지는 순간부터였다. 바로 스포츠지의 연예시존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면 스포츠지 연예기자들은 바빠진다. 연예인과 관련된 각종 뉴스들이 1면에 전진 배치된다. 결혼, 파경 등 각종 스캔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튀어나온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연예인들의 스캔들도 증가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겨울엔 별다른 스포츠 이벤트가 없어, 연예뉴스가 크게 취급된다고 봐야하는 것이 정확하다. 월드컵 기간 중에 단신으로 처리됐음직한 밸류의 기사들이 중신이 되고, 중신은 박스, 박스는 톱으로 커진다.

문제는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된다. 대중지를 표방하는 5개 스포츠신문 모두가 가판독자에 타깃을 맞추고 있고, 가판 판매는 1면에 좌우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예기자들의 특종경쟁과 이를 감추려는 연예인들의 숨바꼭질은 마치 엇갈린 평행선과 같다. 각종 오보가 양산되고,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는 이유다.

연예기사와 관련된 각종 송사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취재환경의 변화와 매니저, 연예기자와 연예인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예계의 취재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불과 10여 년전까지만 해도 연예인은 신문사를 방문해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는 톱스타는 신인급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 연예기자의 수만해도 한 신문사에 10~13명에 이르며, 가요·영화 등은 1, 2, 3진까지 두고 있다. 심지어 일부 신문은 톱스타 담당제를 실시, 연예인 1명에 기

이 유 현

스포츠조선 연예부 방송팀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스포츠조선 체육부, 야구부, 사회부 기자
- 현 연예부 방송팀장(차장)

연예기자들의 특종경쟁과
이를 감추려는 연예인들의 숨바꼭질은
엇갈린 평행선과 같아

자 1명을 배치, 밀착마크시키기도 한다.

스포츠신문뿐만이 아니라 각종 주간지와 월간지, 그리고 수십여 개의 인터넷업체까지 합치면 연예인과 관련된 취재인력은 수백명에 달한다.

마약 사건 등 연예계에 대형사건이 터지면 한꺼번에 50~60명의 취재진이 몰려드는 것도 몇 년 전엔 보지 못하던 현상이다. 그만큼 대중문화와 그 중심을 차지하는 연예인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중문화에서 연예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은 연예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벤처사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는 합종연횡을 통한 대형화, 전문화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형 기획사는 거대 자금과 인력을 앞세워 '실력행사'를 하기도 한다. 자사 소속 스타급 연예인을 캐스팅하며 신인끼워 넣기를 한다든지, 한 드라마나 쇼프로에 소속 연예인을 대거 투입해 제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결국 방송국이나 연예기자는 연예인 개인보다는 기획사를 상대하게 되고, 방송-연예계에서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매니저들의 말을 종합하면 연예기획사 입장에선 '실익 없는 인터뷰'는 언제든 사양이다. 가령 톱스타의 경우 TV 드라마 인터뷰는 차일피일 미루지만 영화 개봉을 앞둔 탤런트는 앞장서 인터뷰 스케줄을 잡기도 한다.

새로 음반을 낸 가수의 경우는 더욱 인터뷰에 적극적이다. TV 출연에 대한 신문 인터뷰는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영화나 가요와 관련한 인터뷰는 관객수, 음반판매

량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한다. TV와 영화에 동시에 출연하는 연예인의 경우 방송담당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할 때는 이리저리 거절하다가 같은 회사의 영화담당 기자에게는 자청해 인터뷰를 하는 일도 있다.

TV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평소 토크쇼 등의 출연을 고사하던 톱스타들은 음반이나 영화 개봉시점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도 패키지로 TV에 출연한다.

방송사에서 이런 홍보성 짙은 출연의도를 알고 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이들을 출연시키는 게 현실이다.

물론 아직도 신인 가수나 탤런트는 스타가 되려면 언론을 통해 얼굴을 알려야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지면 위치는 역전된다.

스타를 보유한 대형 기획사들의 잇단 출현, 그리고 스타와 관련된 취재환경의 급변화는 연예사업과 대중문화의 본질적인 흐름까지 바꿔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캔들의 정보원은?

필자는 1년전 특집으로 '매니저의 세계'를 취재하며 스포츠지에 근무하는 30여 명의 연예기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스캔들은 주로 어디에서 정보를 얻습니까?"

그리고 그 순은 1)매니저, 2)동료연예인, 3)본인, 4)코디, 5)방송PD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니저가 스캔들의 가장 큰 취재원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작고한 이주일 씨가 유랑극단을 떠돌 때도

매니저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형성된 것은 80년말~90년초라는 게 정설이다.

매니저는 다양하다. 학력 하나만 보더라도 국졸에서부터 카이스트 출신, 외국 유학파까지 있다. 하지만 어떤 매니저건 요즘의 공통점은 연예인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TV속에서의 캐릭터는 물론이고 사생활까지 완벽하게 계산하고 관리한다. 톱스타가 매니저를 거치지 않고 기자와 직접 인터뷰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필자도 신인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몇몇 연예인과 전화통화를 했으나, 스타가 된 뒤 연락이 끊긴 연예인은 한둘이 아니다. 매니저가 휴대폰 번호를 바꾸게 하고, 사생활을 통제하는 탓이다. 톱스타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연예기자가 어지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확률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소위 톱기사를 장식하는 스타들의 사생활은 대부분 매니저를 통해야 취재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매니저들은 필요에 따라 스캔들을 ▲막기도 하고, ▲퍼트리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한다.

스캔들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신인급이다. 별 이슈가 없는 신인이 톱스타와 함께 나란히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지면을 장식하다보면 주의를 끈다고 믿는 것이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두 사람의 연예인이 나란히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을 경우 향의하는 쪽은 대개 인지도가 높은 쪽이다. 이러다보니 같은 기획사 소속의 톱스타와 신인이 연애상대로 등장하면 십중팔구 매니저들의 '떡우기'를 의심할 정도

다.

하지만 불이익한 스캔들은 사력을 다해 막는 게 또한 매니저다. 청순 가련형의 여자 연예인이 품행이 방정치 못한 남자 연예인과 교제를 한다든지, 곧 결혼한다는 소식 등이 그것이다.

매니저들이 스캔들을 막는 경우는 광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여배우의 경우 결혼소식이 터지면 순식간에 이미지가 다운되며 광고계약이 끊긴다는 게 상식화돼 있다. 이를 우려한 일부 연예 기획사들은 아예 전속 계약기간 동안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계약서에 명기하기도 한다.

이쯤되다 보니 설사 3~4개월 뒤에 결혼을 하더라도 "일단은 부인하자"가 연예인들과 매니저들의 공식이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열애설이 터지자 명예훼손 운운하며 소송까지 제기했던 연예인들이 적지 않다.

물어보면 뭐해, 아니라고 할텐데

방송국 취재에 나갔다가 한 작가로부터 김한석-이상아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자는 당시 김한석 이상아와는 일면식도 없었지만 개인 휴대폰번호를 알아내 각각 통화를 하게 됐다.

이상아는 팔짱 떠었다. "금방 점심 먹고 각자 녹화하러 갔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죠?" 김한석도 오리발. "누가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퍼뜨립니까?"

필자는 결국 그들의 과정을 기사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 뒤 가정법원서 합의 이혼한 뒤 남남이 됐다.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매니저 등 주변인물에게 간접확인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

김한석과 이상아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기자에게 굳이곧대로 얘기
하는 연예인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 결혼한 개그맨 김국진-이윤성 부부
도 마찬가지였다. 필자는 한밤중에 이윤성
에게 전화를 해 교제설을 들었다며 확인취재
했는데, 이윤성은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둘러대다 하루가 지난 다음에야 시인했고,
얼마 뒤 결혼을 공식발표 했다. 인기가
있으면 있을 수록, 사안이 예민하면 예민
할 수록 연예인들은 입을 다무는 게
생리다. 상황이 이쯤되다 보니 연예
기자들은 언제부터인가 연예인들을
믿지 않는다.

그들과 관련된 빅뉴스가 감지되면 정작
가장 중요한 본인의 말은 제외하고,
친분있는 연예인, 매니저에게 간접
확인을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물어보면 뭐해, 아니라고 할텐데”가
연예기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의식이다.

이와 함께 기자들의 지나친
특종욕심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예컨대
모 연예인과 관련된 빅 뉴스를
들었을 경우 정보의 공유화를 막기
위해 ‘고의로 취재’를 미루는
것이다.

해당 사안을 취재했다가 취재원이
더 친분이 있는 기자에게 거꾸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비밀비재하다.
변죽만 울리고 정작 특종은 타지에
뺏기는 - 따라서 고참기자들은
“특종을 하려면 지뢰밭을 잘
피해가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사는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게 되고 추측과 가설이
난무하게 된다.

얼마 전 있었던 “오현경-홍승표
회장 서약

식”도 유사한 사례다.

이들 커플은 기업회장과 미스코리아
출신 텔런트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여배우였던 만큼 큰 대중적
관심사였다. 그리고 연예기자
들은 이들의 주장대로 ‘서약식’이
있던 날, 날 밤을 샜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날 밤 ‘비밀 결혼식’이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연예기자들은
진위과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필자도 주변취재를 통해 이들이
모 화랑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러나 밤늦게 연결된 전화통화
에서 홍회장은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저녁도 떡볶이를
사다 먹었다”며 화를 냈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당사자가
직접 육성으로 “결혼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었다.

그럼에도 다음날 대부분의
스포츠신문은 결혼을 공식화
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본인이
직접 “결혼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믿지 않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다.

홍회장이 당시 결혼식을
올렸는지 안올렸는지는
지금도 베일에 휩싸여 있다.
중요한 것은 추후 홍회장은
그날 밤은 결혼식이 아니라
서약식이라고 둘러댔으로써
“오현경과는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짓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고
말았다.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아야 특종이 된다”는 말이
농담만은 아니다.

기자들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하는 기사는 대부분
소송감이다. 그렇다면 소송
없이 정확한 기사를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

연예인들은 아는 기자에겐
어느 정도 사실을 털어놓게
된다. 나중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안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기

자는 경력이 많을수록 절대 유리하기 마련이다. 그만큼 인맥이 넓고, 취재 노하우도 풍부해 지게 마련이다. 물론 이런 시스템은 연예인과의 유착으로 이어져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문제가 없는 스캔들 기사는 취재기자가 해당 연예인이나 매니저와 의논을 거친 게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스캔들이 연예인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경우는 어차피 터질 일이 잘 포장되어 나갔다던지, 노련한 기사작성으로 이미지에 별 손해를 입지 않았을 때이다.

연예인들이 교제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그들은 부담을 안고 연예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고 공식 연인을 선언한 가운데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은 신현준-손태영, 한고은-박준형, 이승환-채림, 공효진-류승범, 유준상-홍은희 등 소수커플에 불과하다.

실제 교제중인 연예인들은 TV를 통해 '물타기'를 하기도 한다. 신문기자와의 맨투맨 취재에선 "교제하고 있으니 예쁘게 써달라"고 했다가 막상 TV 연예정보프로에 출연해서는 "만나본 적도 없는 사이다. 그저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며 둘러댄다. TV 연예정보프로는 독자적인 취재보다는 신문 기사를 인용 보도하고 연예인들의 변명성 해명을 옮겨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요즘 들어 네티즌은 '제2의 취재기자'

각 신문사 취재기자들이 각종 인터넷 게시판 판을 수시로 체크하는가 하면 주요 인터넷 사이트는 당번을 정해 훑어보고 있다. 그만큼 네티즌의 힘은 막강해 졌고, 중요한 취재원이 되

고 있다.

연예인 누가 누구와 만났다더라, 결혼했다더라, 무슨 비행을 저질렀다더라가 속속 인터넷에 올라온다. 연예인들도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 직접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몇몇 여자 연예인들이 포르노 비디오 파문으로 연예활동을 접은 것도 인터넷에 동영상의 순식간에 유포됐기 때문이었다. 얼마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길은정-편승엽 사건도 길은정의 지웠다 쓰는 인터넷일기로 문제가 불거진 것이었고, 결혼을 앞둔 박신양은 신부를 음해하는 사이버테러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인터넷은 여론을 조작하고 루머를 확산시킬 수도 있다. 가령 특정 연예인을 비하하는 루머를 퍼트리고 이를 기사가 인용해 쓴 뒤 TV의 연예정보프로를 통해 방송되면 전 국민이 알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취재기자의 양심과 사실을 확인하려는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인터넷의 글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올린 사람은 누구인지, 사회적 파장은 어떨 것인지를 기자적 양심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

엔터테인먼트사업은 확실한 벤처산업

막 얼굴을 내민 신인 탤런트도 시쳇말로 뜨면 수억원의 광고모델료를 받는다. 톱스타 한 명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웬만한 중소기업의 매출규모와도 맞먹는다.

올해만 하더라도 '겨울연가'의 배용준은 7편의 CF로만 26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원, 장동건, 고소영, 이미연 등도

대중문화에서 연예사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연예부 기자는 연예인들의 사생활도 어느 정도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여겨

각각 20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연예인의 경우 공식 수익은 20억원으로 집계됐지만 각종 사인회와 출연료, 카탈로그 촬영 등으로 무려 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가수는 한술 더 뜬다. 조성모의 경우처럼 음반 한 장이 터지면 한해에 100억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한다.

꼭 돈뿐만이 아니더라도 연예인은 '꿈의 직업'이다. "정치인 100명의 말보다 톱스타 한명의 말이 청소년에게 더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수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펼쳐는 인기가수의 콘서트 현장. 중국 등 대만에서 열렬히 환영받는 안재욱 김희선 등의 한류스타들을 보면 실감이 난다. 톱스타를 꿈꾸는 청소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연예인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 '자격시험'도 보지 않고 학력도 전직도 묻지 않는다. 탤런트 중에는 윤다훈처럼 정수기 외관원을 한 사람도 있고, 구본승처럼 카페 종업원 출신도 있다. 심지어 여자 연예인 중엔 룸싸롱 접대부 출신도 있다.

과거 방송사에서는 자체 공채탤런트를 뽑기도 했으나, 끼와 외모가 중요한 연예계의 속성상 공채무용론이 제기되며 지금은 사실상 이런 제도도 사라져 가고 있다.

연예인과 대중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질수록 연예인에게 더욱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청소년의 우상인 톱스타가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부도덕한 일을 저지를 때 수십만명의 청소년이 좌절한다. 하지만 이들 연예인들의 도덕성을 검증하거나 비행을 예방할 어떤 단체나 방법도 현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한 달만 해도 10여 건에 이르는 연예인 탈법-불법 행위가 발생해 그들을 아끼는 많은 팬들을 실망시켰다. 현재 방송사에서는 자체 심의를 통해 물의 연예인에 대해 출연규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 약방문'일 뿐이다. 결국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의 자질을 판단할 곳은 이들을 통제하고 상품화해 스타로 키우는 연예기획사 혹은 연예인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예인의 사생활,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나

연예인의 사생활은 과연 어디까지고, 얼마만큼 보호되어야 하는가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중문화에서 연예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그 중심에 선 연예인들의 사생활도 어느 정도는 독자들의 알 권리에 속한다고 봐야한다는 것이 연예기자들의 생각이다.

기자들이 가장 곱끄러워 하는 것은 소송이다.

해당사건을 취재할 때 소송얘기만 꺼내면 움추러들게 마련이다.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사안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피곤하기 이룰데 없는 소송 때문에 취재를 중도포기하기도 한다.

특히 연예기사는 맨투맨 취재가 많은 만큼 이해가 엇갈리는 일이 어느 분야보다 많다.

일부 연예인과 매니저들은 오히려 기자들의 이런 심리를 역이용.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소송부터 내고 보자는 식의 심리가 내재돼 있기도 하다. 최근 몇년간 연예기자와 취재원간의

소송 사건은 수없이 불거졌지만 판결에 의해 시비가 가려진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은 연예인들의 소송행위가 '엄포성'에 그친 예가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연예인의 사생활과 권익에 대한 보호가 과거 몇 년 전에 비해선 늘어났지만 오히려 공룡이 된 연예사업을 감시, 견제할 기능은 성장하지 못했다.

이를 나약해져 가는 기자정신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스포츠조선이 2년째 시행 중인 기사보험제는 이런 점에서 긍정적이다. 아직까지 보험의 혜택(?)을 받은 기자는 없지만 기사보험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또 기자 본인의 과실을 따지기 때문에 보험만을 의지하고 책임 없이 기사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스포츠조선의 기사보험제는 한 사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간 총액 2억원까지 보상된다. 그러나 해당기자에게도 명백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이에 상응한 자기부담금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인적인 스포츠지 기자의 노동량

일간 인쇄 매체 중 가장 먼저 초판(보통 오후 1시 정도)이 나오고 하루에 3~4차례 개판

을 한다. 노동량은 살인적이다. 연예부원 10여 명으로 하루 6~7면의 면을 매일 메우고, 낙종과 특종 경쟁을 벌인다.

경쟁지가 많아지면서 기사의 밸류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얼마전엔 한 여자 연예인의 해외 실종사건이 1면에 등장했다. 그러나 불과 5분만에 국내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1시간여 만에 자고 있던 본인과 연락이 돼 해프닝에 그쳤다.

그런데 최근엔 '실종사건'은 약과다. 이니셜 보도와 확인불가능한 추측성 연예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연예기자들 사이엔 자성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신문은 부-팀장 주재 취재기자회의를 거친 뒤 편집국장 주재 부장회의를 거쳐 1면이 정해진다. 따라서 기사의 밸류를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은 기사를 쓰는 취재기자 본인이다.

신문의 신뢰가 떨어지고, 저급한 대중문화가 경쟁적으로 양산되는 것은 결국 'NO'라고 말할 용기가 없는 취재기자 한 명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대중문화에서 연예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재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스포츠지 종사자들의 책임과 자성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

일본 언론윤리법제의 현주소 ④

-인권옹호법안의 정립과 언론-

한영학

일본 上智大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야마나시학원(山梨學院)대 법학부 강사

I. 머리말

근년에 국민들의 인권의식의 고양과 더불어 차별, 학대 등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2002년 3월, 인권구제기구의 설립을 담은 인권옹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이 정립되기까지 많은 논의가 분출되었는데, 일본 특유의 차별 등 인권침해의 해소방안, 새로운 인권기구를 창설하여 대처하는 국제적 조류,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구제의 한계 등이 주된 논의대상이었다.

한편 정부의 법제화 작업과는 별도로, 변호사연합회가 제43회 인권옹호대회(2000년 10월)에서 정부로부터 독립한 인권기구의 설치를 요청하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인권기구의 설치,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온갖 인권침해를 그 구제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인권기구의 요강시안이 제시되었다.¹⁾

그러나 이 제안은 강력한 언론규제가 우려되고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과도한 행정권의 발동에 대한 비판이 변호사회 내부에도

제기되어 성안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구상하는 인권법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의 법제화작업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제출한 인권옹호법안에 따르면, 공적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국한하지 않고 사인간의 인권침해도 규율대상으로 하며, 언론에 대해서도 특정한 인권침해는 기본적으로 법적 강제력의 동원을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주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언론은 그 규제로부터 배제되는 한국의 인권위원회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서는 일본의 인권옹호법안을 소재로 하여, 법안정립의 배경과 과정, 법안의 주요내용을 개관하고, 언론과의 관계에서 바라본 법안의 문제점 등을 소개·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인권옹호법의 정립

1. 법안정립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경과

1) 요강시안에 관한 자료는 日本辯護士連合會, 『第四三回人權擁護大會シンポジウム第一分科會基調報告書 / 一人で悩んでいませんか』, 2002. 10. 2. 참조.

일본에서 새로운 인권기구의 창설을 포함한 인권구제제도 정비를 위한 논의가 가시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후이다. 새로운 인권기구의 창설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국내적 요인에는 위법한 각종 행정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수사절차나 구금·수용 시설에 있어서 폭행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차별·침해문제뿐만 아니라, 사인간에 있어서도 외국인, 장애인, 아이누족 등에 대한 차별·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구제제도 정비를 위한 논의의 실질적인 발단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일본 고유의 인권문제인 동화(同和)문제이다. 동화란 신분상 사회적으로 현격한 차별대우를 받아온 사람들이 집단으로 사는 지역, 즉 부락(部落)에 대한 해방을 의미한다. 부락은 에도시대에 형성되어 그 주민들은 메이지 초기에 법제상으로는 신분이 해방되었으나,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온존되어 왔다.²⁾

동화문제는 지금까지 정부의 특별대책을 통해 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 왔는데, 2002년 3월 이후에는 일반대책으로 정책의 전환을 꾀하고 있었다. 지역개선 대책사업 특별조치법과 함께 설치된 지역개선 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정책의 전환은 부락문제에 대한 대응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동화행정을 인권행정 일반의 틀 속으로 전이시키는 작업으로 해석된다. 부락문제를 인권문제의 지주로 자리

매김하고 21세기에 걸맞는 인권행정(인권침해 구제제도)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협의회의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인권옹호에 관한 시책추진에 대해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체계를 정비하여 보다 인권옹호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옹호시책추진법(5년간의 시한입법)을 시행하고(1997년), 동 법을 근거로 설치된 법무성의 자문기관 인권옹호추진심의회(이하, 심의회)가 인권교육·계발의 바람직한 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³⁾

한편 국제적 요인으로는 인권침해에 대해 기존의 사법구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정기구의 설립을 통한 구제가 국제적인 유력한 조류로서 부상되면서, 국제연합이 국내 인권기구의 설치를 호소하는 일련의 인권활동을 전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단적으로 적시할 수 있는 것은 심의회의 설치 등으로 일본의 인권 실상에 대한 반성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국제연합의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구제의 신청을 가능케 하는 독립기관을 설립할 것을 일본에 권고한 사실이다(1998년 11월). 사실 현재 일본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재판 외 구제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인 체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무부의 인권옹호국·법무국 인권옹호부는 인권침해·차별에 관한 고충의 상담접수와 고충의 수리·조사·구제활동 전반을 맡고 있지만, 인권옹호라는 업무자체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아니어서, 국가나 행정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2) 총리부에 설치된 동화대책심의회는 답신에 의거하여, 부락차별의 해소를 위해 대상지역에 있어서 경제력의 배양, 주민의 생활안정,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해야 할 시책과 특별조치를 정한 동화대책사업 특별조치법이 제정(1969년)된 이래로, 지역개선대책사업 특별조치법(1982년), 지역개선대책 특정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상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1987년)과 피차별 부락의 생활환경면의 개선을 위한 시한 특별법 등이 제정·실시되어 왔으나, 여전히 부락차별문제는 완전히 일소되지 않고 있다. 阿部浩己, “人權救濟制度の構築—國際人權法の視座”, 『法律時報』, 73·2(2001. 2), p.25.

3) 阿部浩己, 전개논문, pp.25~26; 景山太郎, “人權擁護推進新議會における調査審議の概要”, 『ジュリスト』1196(2001. 3. 15), p.2.

대해 구조상 적확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⁴⁾

그리고 법무성의 인권옹호행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인권옹호위원회제도가 있는데, 위원들의 업무처리는 사후적인 조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관계로, 그동안 인권침해가 확인되어도 권고·의견발표에 그치고 법적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아 인권구제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⁵⁾

이에 국제연합의 인권위원회가 일본의 인권옹호위원회제도는 법무성의 감독 하에 있으며 권고권한밖에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인권구제를 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를 강력하게 권고한 것이다. 여기에 앞서 파리원칙의 채택⁶⁾도 일본 정부의 새로운 인권구제기구의 창설에 자극요소가 되었고,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국내의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국제적 조류도 이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압박해왔다.

다음으로 이러한 국내외적 배경에 의해 추진된 인권기구의 창설을 내포하는 인권옹호법의 성립에 이르기까지의 주요경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97년 인권옹호시책추진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법무대신의 자문기관인 심의회는 법률, 교육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법무대신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인권교육·개발의 바람직한 상에 관한 자문 제1호와 인권구제의 바람직한 상에 관한 자문 제2

호에 대해 심의해왔다. 심의회는 우선 자문 제1호에 대해 답신을 한 바 있고(1999년 7월), 자문 제2호에 관해서는 1999년 9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심의를 시작하여 2년 3개월간 활동을 계속해왔다.

심의회는 당시 법무성의 인권옹호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처리의 실재를 파악하고 외국 인권기구에 관한 조사와 국내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구제대상으로서 논의해야 하는 인권침해의 유형과 필요한 구제제도의 구체화를 위한 논점정리를 공표하였다(2000년 7월 28일). 그 후 차별·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옹호제도나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재판은 한계가 있으므로 간단하고 신속한 구제 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강제조사권한을 가지며 일정한 독립성을 견지한 행정기구의 설치를 주장하는 '중간정리'를 발표했다(동년 11월 28일). 중간정리에서는 인권침해의 유형을 차별, 학대, 공권력에 의한 것, 언론에 의한 것 등 4종류로 나누고, 인권구제기구가 상담·알선·지도 등의 소극적인 구제 이외에 조정·중재·권고·공표·소송원조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을 제언했다. 특히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⁷⁾는 언론측의 자율규제에 의한 대응이 도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충실·강화를 요망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도를 통해 발생하는 프라이버시침해 등 인권옹호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인

4) 山崎公士, “國內人權システムと人權救済制度”, 『法學セミナー』565(2002, 1), pp.29~30.

5) 山崎公士, 전제논문, p.30.

6) 1993년 12월, 국제연합의 총회는 파리원칙(국내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채택하고, ①인권침해·차별로부터의 구제, ②정부·국회에 대한 인권정책의 제언, ③인권교육·공보활동의 연락조정 등 국내인권기구의 주요기능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①국내인권기관의 구성원은 사회의 다원성을 반영하여 선출하고, ②그 임기를 명확히 하며, ③독립한 재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7) 과잉취재에 의한 범죄피해자나 가족의 프라이버시침해, 소년피의자의 실명보도의 문제 외에 인터넷을 사용한 차별 표현의 유포 등 기타 인권침해 등을 들고 있다.

권침해와 동일하게 조정·중재·권고·공표·소송원조에 의한 적극적 구제가 필요함이 언급되었다.

이어서 심의회는 2001년 5월 25일, '인권구제제도의 바람직한 상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최종답신을 법무대신에게 제출하였다. 최종답신은 상기 중간정리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만 사인간의 차별에 있어서 여성·고령자·장애자·동화관계자·동성애자 등이 추가되고,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구제를 프라이버시침해나 과잉취재에 한정하며, 조사수단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배려'의 견지에서 강제조사의 적용을 보류하고 임의적 조사로서 대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임의적 조사에 언론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성은 2001년 11월 8일, ①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인권위원회'를 법무성의 외국으로 신설하고, 인권구제, 인권계발, 정부에 대한 조언 기타 사무를 소관하게 하며, ②종래의 임의적 수단에 의한 인권구제에 더하여 공권력 또는 사인에 의한 차별·학대, 언론에 의한 특정 인권침해 등을 명시한 특별구제절차를 정비할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인권구제제도의 골격을 제시하였다. 그 후 법무성은 2002년 1월 30일, 강제 조사권을 가진 인권위원회의 설치(법무성의 외국)를 주축으로 하는 인권옹호법안의 대강(大綱)을 발표했는데, 초점이 되었던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프라이버시침해로 판단한 경우에는 정정이나 회수를, 과잉취재로 판단한 경우에는 취재행위의 중지를 권고·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옹호법안은 그 후 3월 8일 각의결정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 법안은 언론규

제적 요소 등 적지 않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야당, 시민단체, 언론 등의 비판에 부딪쳐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보류되었다.

2002년 가을 임시국회에서 재부상된 동 법안은 일시적이거나 실질적인 심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정부 여당이 문제의 언론규제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배제시키기 전까지는 시행을 동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법률전체를 개선한다고 하는 법안 내용의 일부 수정을 시사했다. 그러나 결함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법안성립은 사실상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2. 인권옹호법안의 주요내용

인권옹호법안은 내년 정기국회에 수정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국회에 상정된 원안을 토대로 그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언론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인권침해'는 부당한 차별, 학대 기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제2조). 이 법안은 인권침해에 의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의 적정하고 신속한 구제 또는 그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인권존중의 이념에 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한 계발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통해, 인권옹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이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기 목적을 달성할 것을 임무로 하는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법무대신의 소관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5조). 위원회는 인권구제, 인권계발 등의 사무를 담당하며(제6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제7조). 위원회는 위원장(1인) 및 위원 4인으로 구성되며(제8조), 양원의 동의 를 얻어 총리가 임명한다(제9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의 직원 중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두지 않으면 안 되며(제15조), 사무국의 지방기관으로서 각지에 지방 사무소를 두고, 그 사무를 지방법무국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제16조). 그리고 인권위는 매년 총리를 경유하여 국회에 소관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그 개요를 공표해야 하는(제19조) 한편, 총리 혹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회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20조).

또한 지역사회에 있어서 인권옹호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에 인권옹호위원을 두는데(제21조), 이들은 위원회의 지휘감독 하에서(제30조) 인권계발, 인권상담,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수집 등의 직무 외에 위원회의 위임에 의해 인권침해에 관한 일반조사 및 일반구제직무를 수행한다(제28조).

인권구제절차(제37조~제65조)는 일반구제절차와 특별구제절차로 대별된다. 우선 위원회는 인권침해에 의한 피해의 구제 또는 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를 할 수 있고, 또한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일반조사, 제39조), 인권침해에 의한 피해의 구제 또는 예방을 도모하게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①피해자 등에 대한 조언, 관계행정기관 등에 소개, 법률부조에 관한 알선 기타 원조, ②가해자 등에 대한 설시, 계발 기타 지도, ③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조정 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다(일반구제, 제41조). 그리고 위원회는 ①부당한 차별적 취급, ②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공포·곤혹·현저한 불쾌감을 주는 것, ③학대, ④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기타 보도기관 또

는 보도기관의 보도 혹은 그 취재 업무에 종사하는 자(보도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일반구제 이외에 조정·중재·권고·공표·소송원조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특별구제, 제42조).

여기에서 보도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로서 특별구제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제42조).

①특정한 자(㉞범죄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 ㉟범죄행위를 행한 소년, ㊱범죄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범죄행위를 행한 자의 배우자, 직계 혹은 동거하는 친족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보도가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무분별하게 전달하여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와, ②상기 열거하는 자를 취재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취재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행위(㉠항상 따라 붙어 다니는 것, ㉡감복하여 진로를 가로막아 서는 것, ㉢주거·근무지·학교 기타 통상 소재하는 장소 부근에 있어서 망을 보거나 이들 장소에 밀어닥치는 것,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사용하여 송신하는 것)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생활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이다. 그러나 “보도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나 조치는, 보도기관 등의 보도 혹은 취재의 자유 기타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심분 배려함과 동시에 보도기관 등에 의한 자주적인 해결을 위한 대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병기하고 있다.

III. 인권옹호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규율대상과 인권위원회의 위상

그동안 공적 기관(공권력이나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특히 경찰, 형무소, 입국관리국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재판소의 구제가 실효성을 결여한 점⁸⁾을 감안하면, 인권위원회의 설치구상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인권옹호법안은 공적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도 그 구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종래에 경제적, 시간적 비용 때문에 재판소에 호소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도 간단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규율대상에 있어서 입법취지와 유리된 점이 없지 않다. 즉 현실적으로 공적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사인에 의한 것보다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전체적으로 전자보다는 후자를 폭넓게 상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원래 인권은 공권력과 관계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사인간의 인권침해 문제도 경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사적 자치원칙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중심은 여전히 공권력과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법안은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를 공적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동일한 잣대 혹은 그 이상으로 규율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법안은 공적 기관에는 느슨하고 사인에게는 엄중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법안의 근거에 흐르는 이와 같은 문제점 이외에 법안은 개별 규정에 있어서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적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래에 상술하는 언론규제적 요소와 함께 인권위원회의 위상문제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인권위원회는 법무성 산하

의 외국형식으로 설치하는 것(법안 제5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상 독립행정위원회라고 하나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국가기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제연합 등의 요청은 차치하고라도 일본 국내적 상황에서 보면 공적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온상은 형무소, 구치소, 입국관리국 등 주로 법무성 소관기관이 다수를 점함에도 불구하고, 법무성 산하에 인권기구를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안의 구조적인 결함을 스스로 노출시키는 결과이다. 인권위원회가 법무성의 외국형식으로 설치될 경우, 실효성에 비난이 가해지고 있는 기존의 인권옹호국 직원들을 포함하여 현 체제가 그대로 인권위원회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인권위원회의 위상문제와 관련하여 그 독립성에 의문이 불식되지 않는 한, 법무성 산하기구는 물론 공적 기관 일반에 의해 빚어지는 제반 인권침해문제에 직함한 구제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행정부처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독립된 기구로 설치될 것이 요망되는 것이다.

2. 언론규제적 요소

언론관련 규정과 관련된 법안내용을 음미해볼 때, 법안이 제출되기 전의 심의회의 논의는 당초의 설립취지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즉 부락문제 등 차별해소 외에 구금시설·입국관리시설, 경찰 등에 의한 피의자에 대한 폭력적인 취급 등 공적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으로부터 출발된 논의의 초점이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등으로 확산·경도된 점이

8) 松井茂記, “人權擁護法案とマス・メディアの表現の自由”, 『法律時報』924, 2002, 11, p.53.

다. 일련의 법제화 과정에서 언론관련규정에 대한 의견과 비난⁹⁾이 쇄도하자 점차 다소간 배려¹⁰⁾가 있어온 것은 사실이나, 법안은 여전히 행정기구, 그것도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기구(인권위원회)에 대해 언론의 특정 취재행위나 보도내용에 개입하여 조사(강제 권한은 없음)를 하고, 조정이나 중재를 행하며 취재행위의 정지 등을 권고하는 권한(특별구제)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중대한 문제점으로는, 크게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와의 조정원리가 결여된 점, 그리고 인권침해의 판단주체 및 구제기구(인권위원회)와 언론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우선,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와의 조정원리의 문제이다. 인권위원회가 언론과 관련하여 특별구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법안 제42조에 제시하는 특정한 자에 대한 보도가 그 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무분별하게 전달하여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프라이버시침해)와, 동 조에서 열거하는 취재행위(과잉취재)이다. 전자는 문리해석상 일견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종답신' 단계에서 명예훼손은 보도의 자유와의 조정에 있어서 미묘한 법률판단을 요한다고 하여 재판소에 구제를 일임한 경위가 있고 법안은 이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프라이버시침해만을 상정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침해 또한 표현의 자유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¹¹⁾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으로 생활의 평온(프라이버시)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성이 인정되고 표현 내용과 수단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관례·학설의 유력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안에서 제시한 프라이버시침해 사항은 사인의 경우는 별도로 하고라도, 헌법상 정당하게 보호받는(제21조) 영역이 비교적 넓은 것으로 기대되는 공인에 관한 보도도, 인권위원회가 당해 보도를 프라이버시침해로 간주하는 이상, 일련의 특별구제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것이다.

과잉취재에 관한 규정도 문제의 본질은 마찬가지이다. 취재 대상자가 공인 혹은 공적 관심사인 경우, 취재를 통해 취재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고충 및 피해보다 취재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폐해 및 국민의 알 권리에 미치는 손상과를 비교했을 때, 취재수법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치가 등에 대한 추문보도 등은 정상적인 취재수법만으로는 진상을 밝히는

9)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에 행정기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보도·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재고의 요구 및 법제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성명 등이 주로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중간보고'에 대해서는 일본신문협회(2001. 1. 11), 일본잡지협회(2001. 1. 18), 일본변호사연합회(2001. 1. 19), 저널리스트·언론연구자 216명 연명(2001. 1. 19), 민방련(2001. 1. 19)이 각각 심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최종답신'에 대해서는 민방련이 코멘트를 발표하고(2001. 5. 25), 신문협회가 의견서 제출한(2001. 5. 30) 바 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는 보도 3단체(민방련, 신문협회, NHK)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2002. 3. 7).

10) 심의회의 '중간정리' 단계에서는 언론에 대해서도 적극적 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최종답신' 단계에서는 언론에 대해서는 강제조사의 적용을 보류하고 임의조사로 대처하였으며, 단 언론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 인권위원회가 조사과정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취재의 비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사과정에 대한 공표는 보류되었다.

11) 松井茂記, 전계논문, p.56.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안이 제시하는 프라이버시침해 및 과잉취재는 취재대상자의 사회적 지위(공인인가 사인인가)와 공적 관심사의 정도 등 표현의 자유와의 조정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권위원회와 언론과의 관계문제이다. 인권위원회는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하는 기구로 설정된다. 법제당국도 인정하고 있듯이, 외국의 인권위원회의 경우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를 그 구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언론 규제적 규정의 삽입을 고집해왔다.

언론과의 관계에서 인권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제42조에서 적시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제44조) 조정 및 중재를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45조~제59조), 인권침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제60조)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권고내용을 공표할 수 있으며(제61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인권침해에 관한 청구에 관련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제63조).

법안 제42조가 적시하는 사항은 물론 그 외의 구체적인 취재·보도행위에 대한 프라이버시침해, 과잉취재 여부를 인권위원회가 판단한다고 할 때, 결국 허용되는 취재·보도행위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 관(인권위원회)에 위임되어, 관의 논리로 호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권위원회가 사인과 사인의 충돌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명목으로, 언론의 표현활동을 규제·감독할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제42조에는 주요 언론과 언론단체들의 저항을 일부 반영하는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배려

하는 단서조항이 병기되기는 했으나, 인권침해에 대한 일련의 조사나 조치도 인권위원회가 행하는 만큼, 단서조항의 실효성도 인권위원회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본래 표현의 자유는 그 발전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열의 금지를 비롯하여 표현시장에서의 국가권력(특히 행정권)의 배제가 요체가 된다. 그러나 현대 언론상황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등과의 관련 속에서 언론에 대한 일체의 국가권력의 개입을 부정하기는 힘들며, 일정한 개입은 부득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언론의 다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그쳐야 하는 것으로, 보도피해(인권침해) 등은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적 구제의 경우 독립성이 담보되는 사법구제가 원칙임을 주시해야 한다. 그래서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 행정기구의 관여는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기구의 언론에 대한 개입은 언론의 위축효과에 그치지 않고, 틀에 박힌 취재·보도만이 정당화되어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진정한 국민의 알 권리를 장래적으로 위축시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IV. 결 어

새로운 인권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인권옹호법안의 정립은 그간 국제사회의 요청에 비추어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경제비용과 시간비용에 더하여 명확한 입증책임을 요하는 사법구제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법안이 성립될 경우, 부락문제 등 일본 특유의 학대나 차별문제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

이 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문제의 핵심인 공적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 적확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언론규제적 요소가 일소되지 않는 한, 언론에 대한 직·간접적인 행정개입도 예상되어 결국은 시민적 자유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는, 최근 언론에 대한 소송의 증가현상이 시사하듯 언론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언론 스스로의 노력(2002년 봄호와 여름호 참조)을 포함하여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를 행정기구에 맡기는 것은 별도문제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

돌에 대한 법적 구제는 재판에 의한 조정·해결이 기본으로, 이 문제에 행정기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오히려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는 행정개입이 정당화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라는 단선적인 논의를 넘어, 일본에서 등한시되어 온 반론권 등 새로운 구제수단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을 비롯한 각계의 비난으로 국회심의회가 보류되어 온 인권옹호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2002년 가을 임시국회에서, 여전히 행정편의논리에 사로잡혀 인권위원회의 위상에는 수정을 가하지 않고 언론규제적 조항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안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근원적인 해소라고 할 수 없어 다음 회기에도 법안의 행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

- 명예훼손의 구제를 중심으로 -

차 재 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대전과 제주에서 지역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지방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18일에는 대전 유성호텔에서 차재영 위원(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조균상 위원(전 대전일보 논설위원)의 사회로 토론회가 있었고, 11월 29일에는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강정홍 위원(전 제민일보 편집국장)의 주제발표와 한림화 위원(제주대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다음은 주제발표논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갖는 특수한 위치에서 볼 때, 언론에 의한 명예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비록 그 동안 우리 언론에서는 이러한 자율적 해결방식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혁의 요구가 점증하는 가운데 언론이 외부의 강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율에 의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언론사들은 보도에 의해 명예권 침해가 일단 발생한 후에는 원상복구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언론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언론윤리 및 법제 교육을 통해 기사를 작성할 때 항상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언론사는 사내에 신망 있고 능력을 인정받은 중견 언론

인을 ombudsman으로 임명하여 기사에 대한 자체 비평을 상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언론종사자들에게 기사 작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시정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일부 언론사들은 자사 보도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비평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비평은 대부분 보도방향이나 기사 처리 방식에 대한 비평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도에 있어서의 인격권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 상임으로 ombudsman을 채용하여 자사 보도 기사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하거나 고정칼럼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언론중재 신청이나 명예훼손 소송 제기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더구나 손해배상 인용액의 규모가 크게 증대되면서 다수 언론사들이 법조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고문변호사를 선임

하여 자문을 받거나 기사를 사전에 열람하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언론계의 윤리강령은 일반적으로 반론권을 인정하고 오보의 시정을 약속하고 있다. 1996년에 기자협회와 편집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새로 작성한 신문윤리강령 제6조는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천요강 제10조 5항에는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사실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뚜렷하게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개별 언론사들도 유사한 윤리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이 같은 윤리강령에 의거, 보도에 의해 인격권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일단 제기되면, 그것을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즉각적인 피해구제 조치에 나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기사에 의해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한다.

특히 오보가 확인되었을 경우, 언론사는 공신력을 지키기 위해 이 사실을 숨길 것이 아니라 즉각 정정보도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오보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일단 오보가 확인되면, 그 사실을 즉각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한다. 그럴 경우 언론사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공신력 손상을 입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진실보도의 가치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감추려했다가 나중에 진상이 드러난다면 해당 언론사는 진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되어 공신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언론은 정정보도를 내는데 소홀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자율적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동아일보(독자인권위원회), MBC(시청자주권위원회) 등 일부 중앙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언론피해구제 기구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제도가 아직 모색단계에 있어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위에서 살펴본 옴부즈맨 제도나 자문번호사 제도와 결합하여 사전 예방을 위한 기사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확대 발전될 수 있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제도는 제5공화국 시기의 대표적인 언론약법으로 꼽히는 언론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반론권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독일의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언론법의 반론권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언론피해구제의 전통적 수단인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 제도에 추가하여 새로운 형태의 구제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서는 권리 행사에 있어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과 무관하게 오로지 보도내용과의 개별적 관련성, 즉 객관적으로 해당 보도로 인해 관련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인격적으로나 재산상으로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받았는지 여부만 문제되기 때문에 그 행사가 신속하고도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책임을 묻는 가히 혁명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제5공화국 당시에는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인식하는 언론인이나 학자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차츰 이러한 오해가 불식되어 이 제도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 없이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1980년대 말 민주화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정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과 방송법에서도 채택되었다.

언론중재제도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법원보다 이용이 편리한 분쟁 해결 제도로서 언론에 관한 분쟁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화해와 절충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론보도·정정보도·추후보도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제도로 간주된다.

언론중재제도는 우리 나라의 독특한 언론 피해구제 제도로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그 동안 제도 밖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거나 권위 또는 체면을 의식해서 언론중재제도를 외면하던 국가기관이나 고위 공무원, 심지어 언론사까지도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의 명예훼손 소송 추이를 보면, 80년대 이전까지는 명예훼손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왔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근에는 그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80년대까지 손해배상 인용액이 3,000만원 미만이던 것이 지난 10년 동안 평균 3,600만원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95년 이후에는 1억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언론의 책임을 점차 엄중하게 묻는 경향이 있다.

90년대 언론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 사례에 대해 조사 분석한 조준원에 의하면, 원고 유형별로는 전체 139건 가운데 사인이 원고인 경우가 58.4%인 80건, 유명인이 30건(20.4%), 공직자가 12건(8.8%), 일반단체가 11건(8.0%), 기업체 6건(4.3%) 순이었다. 특히 공직자가 소를 제기한 건수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 90년대 전체 12건 가운데 무려 8건이 98년과 99년에 제기되었다. 그리고 공직자가 원고인 경우 전체 12건 가운데 11

건에서 승소하여 승소율은 무려 91.6%에 이르러 사인(75%)이나 유명인(67.6%), 기업체(66.6%), 일반단체(45.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원고 유형별로 손해배상 인용액의 규모를 보면, 공직자는 평균 약 5,400만원인데 비해, 유명인은 약 4,190만원, 사인은 1,613만원에 불과하여 우리 법원이 공직자의 명예권 보호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공직자는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인 공공의 이익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이 공직자들을 기사로 다룰 때 사인들의 경우보다 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언론보도에 위협적 효과(chilling effect)를 미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자유로운 언론에 의한 권력감시라고 하는 근대적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의 결정에서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하여 공적 인물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법원의 판례들은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안에 대해 언론자유를 폭을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 같지는 않다.

바람직하기는 우리 법원이 명예훼손 소송 판결에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특히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폭넓게 용인하는 쪽으로 가되,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받아들여 언론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조작, 왜곡하거나 기본적인 사실확인 작업을 무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토론

사회 조 균 상
전 대전일보 논설위원

인터넷이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

사회자 : 잘못된 언론보도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참석하신 각계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개진과 활발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오영권 (변호사) :

최근 인터넷 매체에 의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도의 경우 기사내용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고, 누가 보도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도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

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인터넷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주제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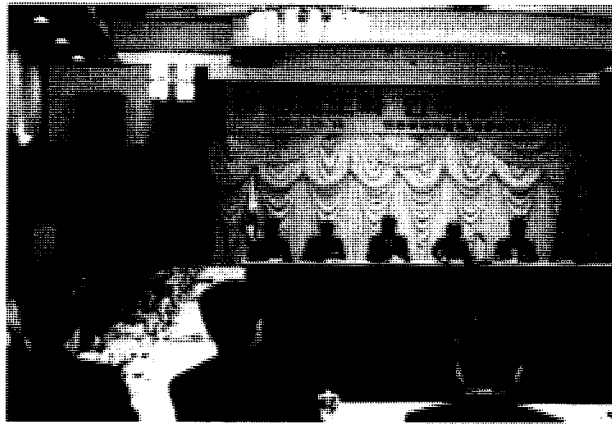
김재걸 (목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론회의 주제가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인데 인격권의 개념에 대해서 주제발표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이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매체인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인터넷은 실제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추적

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허인숙 (금산저널 발행인) : 주제발표자께서는 법원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공적인 사안과 사적인 사안을 구별해서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언론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상당히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신문에서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군수, 군의원, 도의원 등의 자질문제, 예산 등 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도는 지방자치제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 언론인들은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개인감정을 배제하고 보도하려 노력하는데, 보도 대상자측에서는 본인들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오히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적인 사안에 대한 보도의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제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발표자 : 인격권이란 흔히 생명, 신체, 명예,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고 봅니다. 명예권은 그러한 인격권 중 하나의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법적으로 인터넷을 특정해서 규정해놓은 법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규정에서도 인터넷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문제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기에는 입법상의 미비로 인해 불가능한 상태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통합법령이 마련되어 제도화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 군의원, 시의원 등의 자질, 재산문제 등을 공개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보도의 공익성 여부와 별개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있는 과도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들이 선거를 위

해 충분한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관한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제도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인터넷 언론의 보도내용은 중재대상이 되지않아

위원장 : 이른바 전자신문, 인터넷 방송, 전광판 뉴스 등 인터넷 매체는 현행 정기간행물법이나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 방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터넷 매체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중재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언론중재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에서는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다만 현행법 하에서 구제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죄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윤병구 (중재부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 현재 인터넷 매체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 인터넷 운영자와 행위자 중 누가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운영자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게시된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을 알면서 방치했거나 삭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운영자 입장에서 게시된 내용을 모두 심사해서 게시여부를 결정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게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적인 사안에 대한 보도의 경우 명

예훼손이라는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도방법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와 적용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언론에 대한 책임추궁의 정도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미국이나 서구와는 그 운용에 있어 조금 다른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송화순 (대전MBC 보도국장) : 현직 언론인으로서 얼마 전 대전지역 법조비리를 어렵게 취재, 보도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특종보도를 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와 관련해 현재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소장파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고등법원에서는 일부 4명의 검사들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려 현재 상고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을 보도할 당시 우리 방송사에서는 큰 공익성을 가지고 취재에 접근했고, 그 보도는 결국 법조개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도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신원을 이니셜로 거론하거나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적도 없는데, 대전지역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제기나 손해배상 인용판결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범죄사건과 관련해서 형사피의자를 보도할 경우의 초상권 침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윤충원 (대청미디어포럼 회원) : 언론은 공공성, 공익성, 나아가 사회정의성에 입각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언론사에 '현실적 악의'가 없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현실적 악의가 없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일단 재판에 계류되면 언론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언론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도내용이 진실하다면 언론의 공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취재나 보도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지켜내게 되어 정의사회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공공성과 개인의 인격보호 가운데 어떤 사항에 비중을 두고 처리하고 있는지 중재위원회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와 미국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나 면책범위가 다른 점을
고려해야

발표자 : 언론의 공익성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중 어느 쪽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사안에 따라 어느 쪽에 우선권을 두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와 관련한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문제는 신원공개가 곧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유형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최근에 청소년 성범죄에서 가해자의 신원공개가 문제된 적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매우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중대범죄인 경우에는 과감하게 신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병구 (중재부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 대전 지역 법조비리 사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

인 사건이라 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상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 공직자의 초상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공공에 대한 책임을 더 강조하는 입장인 것 같고 우리는 미국보다는 경미하다고 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공공성과 개인의 인격권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지는 각 사안에 따라 보도내용 중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보도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 형량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재위의 중재대상 확대는
오히려 분쟁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

신효철 (대전동구문화원장) : 뉴스의 속성상 독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언론의 사회적 교육이라는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영상매체에서 잔인한 장면을 그대로 방송한다거나 청소년들의 도덕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면처리 등은 언론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언론의 막중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혁 (기독교방송 대전본부 제작국장) : 주재발표자께서 발표한 내용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중재대상에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언론계에서는 이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마치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분쟁을 확대시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 확대는 오히려 분쟁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언론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입법작업이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인지 아니면 주재발표자의 견해에 불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 주재발표자께서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점을 소상히 발표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매체에 의한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한 해결을 위해 현재 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어 구제방안이 확보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중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원에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결국 법관은 일도양단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중재부의 1인은 반드시 전직 언론계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언론의 현실을 잘 인식할 수 있고, 분쟁의 완충 역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원에 가는 시간과 비용 없이 우선 중재부에서 설득하고 권고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 가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언론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을 거친 결과 언론계 인사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법률제정을 기대하면서 긴 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에 임해주신 각계의 여러분과 토론을 이끌어 주신 사회자께도 감사드립니다. □

자유언론과 명예훼손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는 필연적으로 충돌하는가-

강 정 홍

전 제민일보 편집국장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는 필연적으로 충돌하는가. 그 조정점은 어디에 있는가. 기자들의 '숨 쉴 공간'은 그만큼 좁아지는가. 기자들의 '자기검열'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진정 명예훼손 법규는 '은밀한 검열'인가.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해결은 각 사회가 개인의 명예의 중요성과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가운데 어디에 비중을 두는 것이 사회적 공익 실천에 중요한가 하는, 사회적 정치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언론의 자유가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넘어서 언론이 이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으로 우리의 법제에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금전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이와 함께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구제를 인정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는 '사죄광고' 등이 있었으나, 그것의 강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89헌마160)(그러나 언론중재사건에서 간혹 '사과'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였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거나, 취재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면책된다.

민법에서는 형법에서와 같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면책사유가 민법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학계와 대법원 역시 일관적 법체계를 위해 긍정적이다. 우리 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면책사유는 빈번히 발생하는 명예훼손 소송으로 인하여 언론의 본질적인 측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기도 하다.

언론보도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인가, 또는 사회 공익의 증진에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기준으로 한다. 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보도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로 한다.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공익성이 없고 오로지 사적인 사실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은

면책되지 않는다. 보도기사의 기술내용, 기술 방법 등으로부터 객관적으로 보아 흥미위주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보도, 더 나아가 개인에 대한 저질적인 모욕적 언사에 의한 인신 공격 등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관한 보도 등은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우리 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①형법 제 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야 한다. ②여기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일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③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실적시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보도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판결 95도1473, 97도158 참조).

또한 명예훼손행위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보도된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증거가 없더라도 최소한 기사를 작성한 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① '진실'이란 보도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사실과 합치되어야 한다. 비록 보도된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요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다면 곧바로 허위라고는 할 수 없다.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여부의 판단은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이 보통의 주의 하에 받게 되는 인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단순한 인용이나 소문에 의한 사실의 적시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반인에게 진실이라고 인정될 정도에 달하여 그로 인하여 명예가 침해된 경우에는 직접 사실을 적시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 사실의 적시가 암시적이어도 마찬가지이다. ②보도기관이 보도한 내용이 비록 허위라 하더라도 그 보도를 함에 있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면책된다. 우리 법원은 상당성의 기준에 대하여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 대면 등 진실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대법원판결 97다 24027).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진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언론사가 확인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가, 또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성심껏 노력했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진실성 입증'의 한 예로서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이론으로 성립되어 온 '공인이론'이 있다.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 기타 공인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이 비록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도된 사실의 당사자인 공인 스스로 '당해 보도를 행한 언론사가 그 내용의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했다든지, 또는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하여 허위로 보도했음을 거증하지 못하는 한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이른바 '현실적 악의의 원칙'). 이때의 공인은 공직자는 물론, 국가적 사항에 상당한 책무를 가지거나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을 말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개인의 활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

우 행위자나 피해자라는 개인 대 개인간의 사적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당해 표현이 공공적 사회적 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그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 즉 '알 권리'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97헌마265)고 하여 공인개념을 공익개념과는 별개의 심사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공인개념 수용에 적극적이지 못했고, 공익과 관련하여 하나의 고려요소로서 참작해 온 정도이다. 언론의 비판의 자유가 위축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어 공익이 피해를 입는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과 공직자에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보다 확실한 입장과 예측가능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당 등 공공기관의 명예를 허용해야 하는지, 공공기관의 대표와 구성원들의 명예훼손을 어느 선에서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언론에 대한 공직자들의 명예훼손소송이 '은밀한 검열'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직자와 공적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없는 언론의 자유는 무의미하며, 그렇게 될 경우 자유로운 민주사회도 이룰 수 없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정부기관과 공직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에 큰 비중을 부여하고, 명예훼손소송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임을 인정하여 공직자의 명예훼손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잘못된 보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중재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에 대한 분쟁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화해와 절충의 장(場)을 마련하는 한편,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법원보다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중재사건은 매해 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지방의 경우, 다른 지방과 달리 중재사건이 많지 않은 편이다. 올해는 10월 말 현재 3건이 접수 처리됐으나 2001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긍정적 요인으로는 ①기자들의 '자기검열'로 기사를 작성하는 데 매우 조심스러워졌다는 점 ②문제가 발생했을 시 언론사 스스로 이해 관계자들의 반론을 과감히 수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며, 부정적 요인으로는 ①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②지역이 좁아 새로운 갈등이 두려워 그냥 참아버리는 점 등이다.

언론보도에 의한 갈등이 당사자끼리 해결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간혹 법적 문제로 비화된다. 그러나 언론사는 언론보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심해야 하며, 보도 후 사실의 오류를 발견할 때는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

우선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항상 주의해야 한다. 한 줄의 기사에도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기사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상이한 견해와 이해관계를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 물론 언론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사'와 '정보'를 판단하는 데 다양한 가치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전문적일 수도 없다. 그러나 객관성 공정성 등은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접근 방법이기도 하지만, 기자의 직업적 실천의 형식으로 터 잡아야 한다. "주장과 반론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데

여기서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또한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독자가 잘못된 보도의 정정을 요구할 때는 과감하게 잘못을 고치고,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할 때는 반론 및 의견개진의 기회를 줘야 한다(신문윤리강령). ‘틀린 보도’를 하는 것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지만 ‘틀린 보도’를 바로잡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하고, 그 배상 인용액도 고액화 현상을 보이는 등 언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언론사에서는 편집국에 ‘고문 변호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독자위원회’를 두는 언론사도 있다. 심지어 명예훼손 소송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언론사도 있다.

언론매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리 언론에 대해 냉소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좋은 싫든 그것이 전달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어쩔 수 없이 현대인은 언론사가 생산하는 정보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마치 현실과 같은 대리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따라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접근은 먼저, 그 영향력이 커진 데 비해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의식이 상대적으로 진전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는, 언론 내부의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사는 어찌 보면 기자와 취재원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은 기자와 취재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사회 문화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재하는 쪽과 취재당하는 쪽 쌍방 간에는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언론이 취재 대상자를 단순히 기

사작성을 위한 도구로 보거나, 전략적 대상으로 이해하는 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아무리 기사의 가치가 어쩔 수 없이 세계를 바라보는 기자들의 방식에 좌우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성 또는 공정성 등의 개념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것은 현실을 표현하는 방식 그 자체이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공정성’은 ‘책임의 감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책임의 감정은 단순히 충동으로만 존재하기를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 행위의 의지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동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론인은 진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가”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이유도 바로 ‘자유언론’의 주장만큼 ‘책임언론’이 도덕적 의사형성의 감정적 요소로서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책임감의 고양과 함께, 언론에 대한 독자의 접근을 쉽게 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자격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권리는 결코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말하고 싶어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은 “과연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적하고 싶다.

이제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언론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두려워 그만 참아 버리는 것도 ‘바른 언론’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억울한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억울한 감정을 치유하는 ‘신문사에 대한 응징 내지 타격’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바로 ‘바른 언론’을 약속하는 길이다. □

토론

사회한림화

제주대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사회자 : 자유언론과 명예훼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강정홍 위원께 감사 드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적극적인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김진호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최

근 대중매체에 의한 인격권 침해 현상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신문, 방송 외에 뉴미디어에 의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에 의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창훈 (제주KBS 방송총국 편집부장) : 우리 방송사는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개인의 신상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불법 골재채취업자가 경찰에 입건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관련 피의자의 신상을 모욕에 사는 이모 씨라는 정도로 공개

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읍에 이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입건사건과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골재채취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본 보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언론사로서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위외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중재신청을 할 경우 중재대상에 해당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현순화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사무국장) : 오는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선거법상 언론중재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중 언론의 왜곡 편파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가 반론보도를 신청하는 경우 방송보도는 방송위원회에 설치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신문보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불

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거보도와 관련된 반론보도청구사건은 신문, 방송 구별 없이 언론중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범죄보도 자체의 공익성은 피해자에 대한 보도의 공익성과는 별개

발표자 : 인터넷 매체에 의한 인격권 침해문제에 대해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 직장의 전산망에 동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등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PC통신 등 매체의 종류나 침해방식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새로운 매체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단일법령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입법이 처리되면 피해구제가 한층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태섭 (중재부장, 제주지법 부장판사) : 보도과정에서 신상공개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기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이니셜처리를 한다든지 성과 나이만을 기재하는 정도가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법원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범죄사실 자체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익의 목적을 인정하고 있지만 범죄인 자체에 대한 보도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례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도 하나의 구제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 현행 선거법상 선거관련 보도의 심의와 구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이원화되어있는 있는데, 입법론적으로는 통합된 기관

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선진화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심의기준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선거관련 기사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기준의 주된 요지는 선거보도가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에 어긋나느냐의 여부이고, 이 기준을 위반한 기사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조치를 통해 각 언론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운길 (제주사회계발원 원장) : 제주지역은 협소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이제 국제자유도시로서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토론회 등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주지역민들, 각계 기관대표, 언론사 대표, 기자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함께 모여서 제주지역의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실 의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꼭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길 언론중재위원회에 부탁드립니다.

오승주 (제주대학교 학생) : 명예라는 개념은 최근 상당히 발전해 오고 있는 반면 언론의 책임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언론보도가 잘못되어 정정보도가 나가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찾아보지 않는 한 정정보도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언론사는 정정보도나 후속보도를 일주일 중 정해진 시간대에 특정면에 고정해서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발표자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통해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되면 보도일자, 보도내용, 보도지면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까지 확실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언론사는 새로운 해명보도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사가 열린 마음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좀 더 과감하게 수용하여 이를 보도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중재부에서 중재를 해 본 경험에 비추어보면 다행히도 제주지역의 언론사는 신청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고 이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흥철 (제민일보 편집국장) : 익명보도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현직 일선기자로서 익명보도의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면 익명보도의 보호이익은 불특정 다수나 불확실한 피해의 대상이 아니고 피의사실과 관련된 피의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형사문제와 관련되는 보도인 경우 법적으로 피의자를 공표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익명보도를 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나 불확실한 피해보다는 특정된 특정인, 특정사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명보도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우리 신문사에 직접 피해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알린함을 통해서 정정보도나 해명보도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교 (전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 언론과 명예훼손은 상존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매체는 흥미성이 없다면 상품가치성이 없게 되므로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명예훼손이 발생될 개연성이 항상 있게 됩니다. 제주지역 중재신청건수를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제주지역 언론은 대중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사를 접해 보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보도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명예훼손문제에 대해 제주지역에서 표본조사 등을 통한 실증적 사례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조사,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의 현실적인 언론과 명예훼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김정자 (제주지역사회협의회 부회장) : 제주지역의 중재신청사건이 적은 이유로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본인은 그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턱이 너무 높은 이유 때문이 아닌 가라는 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역민들에게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홍보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지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에 지역적 정서 때문에 그냥 참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 장시간동안 주제발표를 해주신 발표자와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해주신 내용 중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반적인 중재대상 사건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뿐만 아니라 방송을 포함해서 처리되고 있으면서 유독 선거관련 보도에 대해서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 분리되어 처리되고 있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표본조사를 통한 실증사례조사, 홍보문제 등은 예산과 인력상의 제한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는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언론계 내부에서부터 반성하는 자세로 언론 스스로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고, 일반 독자들의 언론접근가능성을 쉽게 한다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각계 각층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사회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해외 시찰기

- 스페인 · 포르투갈 · 프랑스 -

강 현 석
총무팀 차장

I. 들어가는 말

일반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언론 역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주변 여건에 따라 국가별, 지역별 법규와 관행이 다르다. 이번에 방문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의 경우도 이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지역적으로 가까운 남부 유럽에 위치해 오래전부터 상호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오늘에 이르렀으면서도 세 나라의 언론 환경 및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제도 및 관행은 차츰 너머의 풍경 차이만큼 서로 달랐다. 특히, 세 나라가 경험한 상이한 근·현대사의 영향이 큰 것 같았다.

이번에 방문한 세 국가 가운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동안 우리 나라 언론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자료와 3일간씩의 짧은 체험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글을 엮어나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부득이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각국의 정치 및 언론환경 등을 간단히 소개하고 방문 기관의 활동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밖에 꾸밀 수밖에 없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

II. 스페인 언론현황 및 언론피해 구제기구

20세기 들어 스페인은 쿠데타와 분리주의 운동 등으로 정치적 혼란에 빠진다. 특히,

1936년부터 1939년까지 극우파인 프랑코 등이 주도한 민족전선과 공화파간의 내전으로 스페인 경제는 파탄되었고, 내전의 승리로 집권한 프랑코는 사망한 1975년까지 학교에서 바스크어, 카탈란어를 못쓰게 하는 등 모든 지역주의 문화를 탄압하였으며, 언론에 대해서도 검열을 실시하는 등 독재 정치를 펼쳤다.

프랑코 사후, 다소의 위기는 있었으나 정치적 민주화가 자리 잡았고, 검열제도 폐지와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언론 역시 과거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변했다.

현재, 스페인은 정치체제는 1978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입헌군주제이며, 역사적 배경에 따라 구성된 17개의 자치주는 중앙 정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다.

1. 언론 환경

스페인 언론은 크게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으로 나뉜다. 언론인들은 신중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민영 TV가 시청률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경향을 띠며 따라 거의 전 언론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방송 매체와 인쇄 매체간의 경쟁은 치열하다 못해 거의 전쟁 수준이다.



1) 신문

87개의 일간지가 있으며, 구독률은 인구 1,000명당 107부다. 이 수치는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은 것이다.

신문은 전국지와 지역지로 나뉘는데 주요 전국지로는 중도 좌파 경향의 진보지인 El Pais, 중도 우파지로 비판적이며 공격적인 El Mundo, 보수적인 ABC, 자유적인 논조의 Diario 16이 있으며, 모두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발행된다.

주요 지역 신문으로는 바르셀로나에서 발행되는 La Vanguardia, 빌바오에서 발행되는 El Correo, 갈리시아에서 발행되는 La Voz de Galicia 등이 있으며, 이들 신문은 지역 내에서는 판매 부수가 전국지를 능가한다.

광고 수입이 신문사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이며 신문사 자체의 재정 상황은 지극히 어려운 형편이다.

2) TV

TV는 가장 인기 있는 매체다. 국민의 95% 이상이 매일 TV를 시청하며, 1인당 평균 시청시간은 약 3시간이다. TV 채널 수는 5개이며, 방송국 수는 228개다.

채널 중 2개는 국가나 주 정부 소유의 공영 채널이며, 3개는 민영 채널이다. 공영이나 민영 채널 모두 광고 수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민영 채널은 복합 미디어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광고에 대한 방송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관계로 방송시간 시청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으며, 프로그램 역시 시청자의 시선을 붙잡을 내용으로 꾸며지며, 주 시청 시간대에는 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방송을 규제하는 정부 기관으로는 우리나라의 방송위원회와 같은 RTVE라는 기구가 있다.

3) 기타

라디오 채널 수는 15개이며 TV 다음으로 인기 있는 매체다. 전 국민의 55% 정도가 매일 라디오를 청취하며, 1일 평균 청취 시간은 약 1.5시간이다. 통신사는 5개가 있다.

또한, 케이블 TV는 1998년에 운영을 시작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 수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2. 카탈루냐 언론평의회

(Consell de la Informacio de Catalunya)

1992년 카탈루냐주 언론인들의 정례 회의에서 스페인 최초로 기자 윤리강령이 제정되었다. 언론인 스스로 자율규정을 제정한 배경은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 호주 등의 사례를 모범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강령이 잘 준수되는 지를 감시하기 위해 사법적 권위와는 다른 도덕적 권위를 가진 기구의 설립을 카탈루냐 언론협회가 결정하여, 1996년 12월에 카탈루냐 언론평의회를 설립하였다. 평의회는 독립적인 결정을 위해 변호사, 사회학자, 윤리학 교수, 시민·언론단체 인사 등 다양한 직종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그 후 2년간의 운영을 거친 후, 1999년 9월 언론협회는 평의회에 실제적인 평결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카탈루냐주 법에 의해 민간 재단으로 평의회를 등록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Francesc Gonzalez Ledesma 회장은 면담을 통해, 언론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카탈루냐 언론평의회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구가 아니며, 신청인들은 주로 인종차별기구 등과 같은 단체가 대부분으로, 언론협회가 정한 윤리강령에 근거해 신청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

린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평의회의 평결을 언론사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실제 반론보도 등을 게재하라는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를 따르는 언론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보도내용을 바꾸라는 판결에도 이를 따르는 언론사는 거의 없으며, 법원 판결을 이행하게 하기 위한 배상 소송 역시 기간이 2년에서 3년까지 걸리는 등 실효성이 없어 오히려 윤리적으로 언론사의 보도가 잘못 됐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는 평의회가 피해자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1년에 한 번씩 보고서(Memorandum)를 만들어 각 기관에 배포한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접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윤리 강령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언론사가 소송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3. 총 평

전체적으로 스페인에서의 언론피해구제제도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비록, 프랑코 정권 시절의 혹독한 탄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언론계 내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높으나,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려는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스페인 내에는 전국적인 수준의 자율규제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약하나마 카탈루냐 언론평의회 같은 지역 자율규제기구 역시 거의 없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최소 2년에서 3년 가까이 걸리는 지루한 절차 역시 언론인들의 책임 의식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III. 포르투갈 언론현황 및 언론피해 구제기구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에 위치한 포르투갈은 15세기의 영광을 뒤로 하고, 현재는 유럽의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932년 집권한 살라자르는 식민지 정책을 포기하라는 서구의 압력에 맞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정책으로 포르투갈 민생을 파탄시킨다. 이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이 실시되는 등 살라자르의 독재 강화는 포르투갈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1974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카네이션 혁명이라 불리는 군사혁명이 발생하고, 비로소 포르투갈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포기하고 유럽의 일원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다.

1. 언론 환경

1) 신문

포르투갈의 신문 구독률은 1999년 통계로 1,000명 당 73.5명으로 유럽 최하위이다. 이는 높은 문맹률(10% 이상), 낮은 교육 수준(국민의 20% 이상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고등 교육을 받은 인구는 약 8% 정도임), 적은 인구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주요 일간 신문으로는 Journal de Noticias, Correio da Manhã, Diário de Noticias 등이 있는데 이 신문들의 발행 부수는 10만부 내외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 영향력을 가진 매체들 대부분이 대규모의 언론자본에 통합되었는데, 주요 이유로는 언론사 내부적 요인으로는 생산비를 감당하지 못해서이고, 외부적으로는 1974년 이후 국유화되었던 신문들이 EC 가입과 더불어 다시 사영화되었으며, 정부 정책 역시 자본의 집중을 선호했기 때문



이다. 이들 언론 자본은 공공영역과 카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매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의 언론, 시청각 산업을 흡수했다.

지역 신문으로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주로 카톨릭 교회가 발행하는 소규모의 신문사들이 있다.

2)TV

1980년대까지는 공영채널인 RTP1과 RTP2 뿐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 상업채널인 SIC(1992)와 TV1(1993)이 생겼다. TV1은 카톨릭 교회가 설립했으나, 그 후 언론기업인 Media Capital에 매각됐으며, 현재 공영채널은 시청률에 있어 모두 민영 채널에 뒤지고 있다.

민영채널 등장 이후 TV의 선정성이 강화되고, 다른 매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TV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3)언론정책

1974년의 군사 혁명으로 50년에 걸친 사전검열제도가 폐지되고, 언론의 자유가 회복되었다. 포르투갈은 헌법과 일부 법률에 의거, 언론의 정보를 제공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규제하며, 오직 법원만이 언론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가장 언론 영역에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TV의 선정성 등에 따른 자율규제와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2. 포르투갈 언론최고위원회(AACS)

AACS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의거해 설립된 언론규제기관이다. 포르투갈공화국 헌법 제 39조에 따르면, AACS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치·경제적인 영향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고, 방송시간 편성, 반론권 등에

대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AACS는 1990년 6월 30일 설립되었으며, 그 주요 역할은, 언론의 독립성을 감독하고, 라디오와 TV가 법률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며, 공기기업이나 사기업에 방송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 문제 등에 대한 여론 조사를 규제한다.

Armando Torres Paulo AACS 위원장은 면담을 통해, AACS는 최고판사위원회, 국회, 언론단체 등에서 임명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 4년이 전적으로 보장되는 등 완전히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언론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이 불만을 신청하는 경우와, 위원회 자체적으로 법을 위반한 보도에 대해 정정을 결정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밝히며, AACS의 결정을 언론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이 불만을 신청하는 건수는 월 30여 건 정도이고, 직권으로 정정을 권고하는 건수는 월 10여 건 정도이며, 작년의 경우 전반적인 결정 건수가 1800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AACS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언론사가 법원에 청원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AACS의 결정 내용은 일단 게재하여야 하며, 추후 법원이 보도내용이 타당하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보도에 소요된 비용을 신청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포르투갈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1년에 10건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고, 배상액 또한 상징적 액수에 그친다고 밝혔다.

3. 총 평

포르투갈의 경우, 오랜 기간 외부와의 단절, 낮

은 교육수준, 작은 시장 규모 등으로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의식이 낮은 것 같았다. 언론규제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의 부재, AACSG가 직권으로 언론사에 정정을 명령할 수 있는 점 등이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업방송 사이의 치열한 시청률 경쟁에 따른 선정적 프로그램의 증가와 다른 매체의 선정화 경향에 따라 시청자 및 독자의 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보였다.

IV. 프랑스 언론 현황 및 반론권

1789년 프랑스 대혁명 후 만들어진 인권선언 11조는 "자유로운 사상과 인권의 전파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하고 "모든 시민은 자유의 남용이 아닌 범위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쓰며, 인쇄할 수 있다"고 언론의 자유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정기간행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그 폐해가 심각했다.

그 후, 19세기 말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론을 도입하여 독자의 반론권 등을 법률로 보장하는 등 언론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는 언론이 국가로부터 가혹한 탄압을 받았기보다는 너무나 자유로워서 그 자유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1. 언론 환경

1) 신문

프랑스의 신문의 성격은 뚜렷하다. 정론지와 대중지의 노선을 정확히 설정하고 정론지의 경우 이념적 색채를 명백히 밝힌다. 정론지의 노선을 정할 경우 독자의 수가 적어지더라도 대중의 관심사에 당장 연연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중지의 노선을 정할 경우 자신이

언론의 정도를 향해 걸으며 여론을 주도한다는 생각은 버려야하지만 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

프랑스에서 정론지는 '르몽드'와 '르 피가로', 그리고 '리베라시옹' 등이며 이번에 방문한 르몽드는 중도적이면서 좌파성향의 개혁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으며, 드골 장군의 지원을 얻어 1944년 창간됐다.

프랑스의 중앙 일간지는 한국보다 적다. 또한 어느 신문도 발행부수가 100만부를 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누구나 각 신문사의 발행부수나 신문을 읽는 독자 수, 신문사의 경영에 관한 내용들을 쉽게 알 수 있다.

2) 방송

프랑스에서는 TV는 TV, 라디오는 라디오라는 인식이 자리잡혀있다. TV방송사와 라디오방송사는 완전히 별개의 소유 체제다. TV가 라디오를 소유하지 않는다. 프랑스 라디오 산업은 번창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영인 '라디오 프랑스'와 다수의 민영 라디오 방송사들이 라디오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공영 라디오인 라디오 프랑스는 53개의 라디오 채널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6개의 중요 전국 방송과 35개의 지방 방송을 포함한다.

프랑스의 민영 라디오는 복합 기업인 독일계 베텔스만 그룹의 RTL(프랑스 정부가 주식의 20%)과 라가르데르 그룹의 Europel(프랑스 정부가 주식의 50%), 그리고 RCM(Radio Monte-Carlo, 프랑스 정부가 주식의 84%)가 있다.

프랑스 TV 방송의 채널은 공영이 4개 채널, 민영이 3개 채널이다.

프랑스 방송 중 공영방송은 시청료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된다.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시청률을 높여야 할 필요가 없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할 이유도 없다. TV



의 사회적인 책임을 우선시 하는 공영 체제의 표본이다.

3) 반론권 제도

프랑스 반론권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론권의 대상이 신문이나 방송의 사실적 주장에 한정되지 않고 논평이나 의견, 학술, 예술작품, 서평 등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둘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도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단체와 사단을 비롯하여 死者에게까지 인정된다.

셋째, 반론문의 내용과 형식이 전적으로 반론권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넷째, 반론권 행사의 除斥사유가 대단히 한정적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반론권자의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다섯째, 반론권 제기기간이 1년으로 상당히 길게 인정된다.

여섯째, 언론매체의 반론문 게재의무가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게재를 거부한 발행인에게는 민사상의 제재는 물론, 형사제재까지 가능하다.

2. 르몽드와 언론피해구제제도

르몽드는 옴부즈맨과 반론권 담당자를 사내에 두어 독자의 의견 및 불만을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이들은 회사로부터 어떠한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않는다.

Robert Sole 옴부즈맨은, 독자들이 언론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①반론권 담당자에게 청구하는 방안 ②독자 우편을 이용하는 방안 ③옴부즈맨에게 청구하는 방안 세 가지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독자편지나 우편 등의 수단을 통해 접수되는 독자의 의견이 월 1,500~2,000건 정도 되며, 이들 우편에 대해

옴부즈맨이 직접 관여한다고 말했다.

또한, 독자우편을 신문에 게재하는 횟수는 주 5회 정도이며, 옴부즈맨 칼럼을 사실면에 주 1회 게재하고, 칼럼 내용에 대해서는 편집부에서 단 한 글자라도 고쳐서는 안 된다고 소개하며, 독자들은 르몽드의 이러한 시스템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Beatrice Malaussena 반론권 담당자는 연간 200건 정도의 반론보도 신청건수가 접수되며, 이 중 120~150건 정도가 보도된다고 밝히고, 반론권과 관련해 소송으로 이해되는 건 수는 연간 2건 정도이며 반론 거부시에도 상세히 거부 이유를 밝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 르몽드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연간 25~40건 정도이고, 손해배상 액수는 대략 15,000 유로 정도라고 밝혔다.

3. 총 평

르몽드는 세계적 권위지답게 독자 불만 처리도 체계적이고 세련된 것 같았다. 옴부즈맨이 독립적으로 독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처리하고, 반론권 담당자는 반론을 거부할 때에도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독자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것 등은 단순히 법적 제재를 피한다는 차원을 넘어 언론의 위상을 제고하고 고객 관리 차원에서라도 본받을 만한 것 같았다.

특히, 외부의 강제 없이 신문사 자체의 판단에 따라 설치하고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여 독자의 입장에서 신문의 잘못을 비판하고 공개하는 옴부즈맨 제도의 경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 홍보용으로 밖에 기능하지 못하는 국내 언론에서 많이 참고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

그림자가 작게 똑바로 서기

김 광 옥

경기중재위원·수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지난 달, 경기도 언론중재위원과 경기도 내 주요 신문, 방송사 사장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몇 가지 화제가 펼쳐졌다.

먼저 언론중재가 누구를 위한 제도이냐였다. 언론사측에서 보면 반론이며 정정보도를 중재하는 위원회가 언론의 특성을 이해 못하는 기관으로 보일 수 있다. 신청인 당사자가 보면 반론보도를 내더라도 이미 잃은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는 미미한 것으로 보여 섭섭하기 짝이 없을 수 있다.

사회가 바뀌면 시민의 권리도 상대적으로 증진되기 마련이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의한 개인적인 억울함을 그대로 참지만은 않고 어디엔가 호소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다. 재판으로 가는 일을 금기시 하던 인습도 깨어지고 있다. 하다 못해 어떤 사람은 월급쟁이로 살면서 재판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말로 해도 될 일을(사실 귀찮고 한 두 번 이야기해서 될 것 같지도 않아) 공부 삼아 편하게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법정 구경을 했다는 이야기도 한다.

일전에는 강력계 경찰이 중재를 신청해 오기도 했다. 경찰이 조폭을 잡는데 단속이 지나쳐 애매한 시민도 잡아들였다는 보도에, 그 사건은 폭력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었다는 반론이 있었다. 언론이 경찰을 너무 비판하면 조폭을 단속하는 공권력이 취약해져 사회가 점점 더 혼란에 빠질 것이고 반대로 사회가 언론의 기를 꺾어 놓으면 사회감시가 약화되는 부작용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은 취재 보도관행도 바뀌는 시대에 있다. 검찰의 조서를 기자가 그대로 받아 썼다 하더라도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면 명예훼손으로 걸려 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의 조서며 검찰의 논고며 심지어 판사의 판결문조차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점차 기자들의 취재 범위가 좁아지고 기사 쓰기가 어려워지는 때를 맞고 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언론중재는 당장 언론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금전적인 손실을 막아 주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 위원은 앞으로는 변호사 숫자가 늘게 되어 자칫 작은 반론 정도의 사실도 법정으로 갈 일이 생겨날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중재위원은 시민의 권리와 언론의 사회적 기능의 중간적 입장에 바로 서야

고발을 당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한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게 하고 있다. 관행으로 하던 일이 언론에 공개되고 고발당하고 비판받음으로써 자기가 하던 일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맞고 있다. 한 예로 구의회 운영에 소홀하다는 보도사실에 의원 당사자는 억울한 면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구의회에서 계파간의 싸움으로 빚어지는 갈등이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한 사실이 중재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노출케 되어 의회운영에 반성과 개선의 계기를 갖게 해주는 기회가 된 바 있다.

지금은 과거의 좋지 않은 관행을 하나씩 고쳐갈 시기에 있다. 검찰의 고문수사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언론에서의 취재나 편집관행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사실 확인에 좀더 투철해야 하고 반대측의 의견에도 더 귀기울여야 한다.

많은 경우 기자들이 고발 기사를 썼는데 편집자가 이를 조금 더 자극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 본문에 없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생긴다. 폭력을 썼다고 하면 '조폭'으로, 가깝게 지내면 '내연'의 관계로, 한 두 번 있으면 '다반사'가 된다.

언론도 상품이니 독자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포장이나 분장이 필요하다. 기자는 사실대로 썼는데 분장이 잘못되어 탐장이 나와 중재를 받는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저널리즘의 제작 특성상 벌어지는 예이다. 기자의 사회 감시정신을 위축시키기 위해 칼 대신 부지깥이를 들라고 할 수도 없고 포장을 하는 편집자의 손에 발린 매니큐어가 보기 싫으니 지우라 할 수도 없다.

기사나 프로그램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보니 내 손을 떠난 기사와 프로그램은 변질되어 나오기도 한다. 오늘날은 한 사실도 반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책임은 언론사가 총체적으로 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제도적 틈새들 사이에 중재위원회가 존재하고 중재위원은 시민의 권리와 언론의 사회적 기능의 중간 입장에 똑바로 서 있어야 한다. 언론중재제도는 정보복지 실현 차원에서 우리 나라 언론이 공익성과 공정성을 지켜나가는 가를 살펴보고 있다. 똑바로 서서 그림자를 적게 드리우는 정오의 사상, 그것이 언론중재가 서 있어야 할 자세인 것이다. □

필리핀 국회, 피의자의 사진촬영 및 보도 관행 개선을 위한 규제 법안 준비

최근 필리핀에서는 사건 용의자를 수감채운 모습으로 기자회견에 출석시켜, 그 모습을 텔레비전 및 신문에 보도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즉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피의자가 계속 증가하자 필리핀 국회가 이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규제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체포가 간단하게 이루어져 “의심스럽다”고 보여지면 즉각 체포하여 조사하는 일이 일반적인데 체포된 사람의 기소율은 60% 이하로 알려져 있다.

국가경찰이나 군은 피의자 체포를 수사의 성과로 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통령 스스로가 국가경찰본부에서 마약사건이나 강도사건의 피의자와 나란히 기자회견을 갖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일반 대중의 면전에서 범인취급을 받은 끝에, 범인이 아니었다는 사람으로부터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의 빌야라마 하원의원은 최근 “헌법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나쁜 습관”이라면서 피의자의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규제조항을 삽입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군이나 국가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사진 촬영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이름도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新聞協會報』, 2002년 9월 3일자) □

파키스탄, 보도평의회 설립

2002년 9월 1일자 파키스탄 신문들에 의하면, 파키스탄 정부는 8월 31일의 각의에서 명예훼손 기사와 관련, 명예훼손법의 제정과 보도평의회 설립을 승인했다.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경우 최저 5만 파키스탄 루피(약 100만원)의 벌금 또는 3개월의 금고에 처해진다.

보도평의회는 편집인 등으로 구성되며 보도에 의한 피해자로부터의 신청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주어진다.

(『新聞協會報』, 2002년 9월 10일자) □

미국통신사 블룸버그, 싱가폴 수상 등에 대해 4억원의 배상금 지불키로

미국통신사 블룸버그는 최근 동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가 싱가포르 정부의 수상 등 3명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 59만5천 싱가포르 달러(약 4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싱가포르정부가 2002년 8월 29일 밝혔다.

블룸버그사는 8월 4일 동사의 홈페이지에 이광요 전 수상의 아들(부수상)의 처 호칭씨가 국영기업의 지주회사 임원으로 취임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수상이 이광요 일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인사에 관여했으며, 전 수상과 부수상도 이 인사에 관여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가 항의했으며 블룸버그는 기사내용에 근거가 없음을 인정. 싱가포르 정부의 세 수뇌에게 사죄와 함께 배상금액의 제시를 약속했다고 한다.

블룸버그의 배상금 지불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아침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新聞協會報』, 2002년 9월 10일자) □

이탈리아정부, 신문과 방송매체 동시 소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미디어법 개정안 추진

AP통신 등의 보도에 의하면, 이탈리아정부는 2002년 9월 6일 신문과 방송의 동시소유의 해금(解禁), 이탈리아방송협회(RAI)의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벨르스코니 수상의 이익과 관련된 개정안"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벨르스코니 수상은 이탈리아 최대의 민간 텔레비전 회사인 미디어세트와 출판회사 몬다도리 등을 소속사로 하는 지주회사 휘닝베스트의 대주주이다.

미디어세트사는 3대 지상 텔레비전국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수상은 국영의 RAI를 포함한 이탈리아의 방송미디어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RAI 민영화 후에도 동일 인물이 2%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정부의 영향력이 RAI에 계속 미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인정되면 벨르스코니 수상의 형제가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라노의 신문 일조루나레도 수상이 소유할 수 있다.

이 밖에 현행법에서는, 미디어세트사는 산하의 지상 텔레비전 방송국 3국 가운데 1국을 위성방송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데 동사는 이에 저항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新聞協會報』, 2002년 9월 24일자) □

영국법원, 취재원을 금품 매수하는 취재방법에 대해 PCC에 규제강화요구

영국의 어바인 대법관은 재판 전에 형사사건의 증인에게 금품을 주고 증언을 얻어내는 언론사의 취재방법에 대해 법적 규제를 보류하는 대신 PCC에 자율규제의 강화를 요구했다. 대법관은 영국의 사법제도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다.

금품으로 매수하는 취재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법규제 논의가 가끔 있어왔다.

1995년에는 영국 남서부 그로스터 로즈마리·웨이스트 피고의 자택에서 다수의 여성 시체가 발견되는 "공포의 관(館)사건"이 발생했다.

영국의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한 지대한 국민의 관심을 배경으로 맹렬하게 취재경쟁을 전개했는데, 재판에 출정한 증인 가운데 19명이 언론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바인 대법관은 그동안 법규제를 언급해 왔으나 이번에 다시 한 번 의향을 표명한 것이다. 금품을 건네고 얻은 증인의 증언을 보

도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언론사측에게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해 왔다.

대법관은 PCC와 협의한 결과, 법규제를 보류한 대신 보다 엄격한 자율규제를 포함하는 보도실천강령안을 2002년 말까지 마련하도록 PCC에 요구하면서 “법규제 도입의 검토가 부활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PCC 보도실천강령위원회의 레스 힌튼 위원장은 “보도실천강령은 엄격한 규칙을 갖고 있으며 위반에 대해서도 엄하게 대처하고 있다. 강령이 제정된 지 11년이 되지만 위반은 1건뿐이다. 법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문제해결에 적합하다는데 이해를 표시해 준 대법관의 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新聞協會報』, 2002년 9월 24일자) □

일본 언론계, 집단적 과열취재를 막기 위해 전국 행정구역에 대응기관을 설치

일본 언론계는 보도에 의한 인권침해를 특별규제의 대상으로 한 인권옹호법안에 반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집단적 과열취재(Media scrum)”를 피하기 위한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언론각사의 협의에 의해 집단적 과열취재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기관이 전국의 도, 도, 부, 현(都, 道, 府, 縣)에 설치되었으며 각지의 보도책임자회와 지국장회가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31개 행정구역의 대응기관과 접수창구가 공표되었다.

신문협회 편집위원회는 2001년 12월 집단적

과열취재에 관해 기자클럽 등 취재현장에서 해결방법을 찾고, 조정되지 않을 경우 신문협회 내에 설치하는 각사가 연결하는 횡적 조직에서 협의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미디어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2002년 5월에는 집단적 과열취재 대책소위원회가 재정(裁定)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 발족, 각 도, 도, 부, 현의 보도책임자회와 현경(縣警) 기자클럽 등에 대해 현장에 협의기관을 설치하여 일반시민에게 주지시키도록 독려해왔다.

민간방송연맹은 2001년 12월 집단적 과열취재에 관한 유의점과 대응책을 마련했다.

일본잡지협회는 2002년 5월 9일 범죄·사고 보도에서의 피해자 취급을 충분히 배려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잡지편집윤리강령”의 철저한 준수를 회원사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新聞協會報』, 2002년 10월 15일자) □

일본 시사통신사, 오보책임 물어 사장 감봉, 편집국장 경질 등 이례적인 강한 징계

일본 언론계는 오보가 발생할 경우, 간단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로 끝내버리는 한국 언론계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달리 집필기자, 차장, 부장, 편집국장 등이 줄줄이 인책, 경질되고 때로는 담당임원, 사장까지도 물러난 일이 있었다. 그만큼 책임추궁이 강하다.

다음과 같은 사례도, 한국 언론사 같으면 정정보도로 매듭을 짓든가 집필기자나 담당데스크가 징계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 같은

사안으로 여겨지는데 일본 언론사에서는 편집국장까지 경질하고 사장까지도 감봉처분을 받는 엄격함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역자주)

일본 時事통신사는 2002년 10월 2일 小泉수상이 9월 17일에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의 오보와 관련한 처분을 발표했다.

처분내용은 편집국장과 정치부장을 경질, 총무부로 발령하고 감봉조치, 편집책임자인 대표의 보수 삭감, 편집국 차장(한국의 편집부국장에 해당함) 견책, 사회부장 감봉 등으로 되어있다.

時事통신사는 일본과 북한의 영수회담 전인 9월 17일 오전,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던 有本惠子씨 등 3인에 대해 “일시귀국이 허용될 전망”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오후 5시 넘어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3인은 사망했다는 북한의 조사결과가 밝혀졌다.

時事통신사는 이날 오후 7시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3인의 일시귀국을 보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오보여서 관계자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점 사죄합니다”라는 기사를 타전했다.

(『新聞協會報』, 2002년 10월 8일자) □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여 실제인물을 특정하고 있는 소설에 대해 출판 금지 판결 내려

- 일본 최고재판소 -

작가 유미리 씨의 소설 “石に泳ぐ魚”(돌에 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모델이 된 여성이 질병에 의한 신체적 특징, 부친의 체포전력 등이 소설의 소재로 묘사되어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고 유씨와 신조사(新潮社)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소설의 출판금지를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2002년 9월 23일 “모델이 된 여성의 정신적 고통이 증가되어 평온한 일상생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출판금지와 130만엔(약 1,300만원)의 배상을 명한 도쿄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지지, 유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인격권 침해에 근거한 소설의 출판금지를 최고재판소가 인정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유미리 씨의 소설은 잡지 新潮 1994년 9월호에 게재된 것으로 유씨와 교우관계에 있던 여성이 선천적으로 얼굴에 종양(腫瘍)이 있는 친구로 등장한다.

재판부는 “인격적 가치를 침해받은 자는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금지가 인정되느냐는 판단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인물의 사회적 지위나 침해행위의 성질에 유의하면서 피해자측과 금지에 의해 발생할 침해자측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해야만 한다”고 지적한 다음 “피해 여성은 공적 인물이 아니고 내용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소설이 출판되면 정신적 고통이 배가되어 평온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므로 출판 등에 의한 공표를 금지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1심인 도쿄지방법재판소는 1999년 6월 “소설은 모델인 여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공표금지와 130만엔의 배상을 명했다. 또한 2심인 도쿄고등재판소 역시 2001년 2월 “소설은 프라이버시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지지했다.

(『新聞協會報』, 2002년 10월 1일자) □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무단 강제철거한 신청인 소유의 주택을 노후되어 갑자기 무너진 집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217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박 용 희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2. 9. 1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2년 8월 21일
21:00)

내 용 : ▷앵커 : 서울 도심 곳곳에 붕괴 직전의 소형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아찔한 건물들은 비단 서울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서울의 소형 건물들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주택가 2층 상가건물이 갑자기 무

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지 30년이 넘었지만 보수는커녕 안전진단조차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건물 내에 있던 주민 11명이 매몰되는 변을 당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주택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축대 위에 이 주택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아랫집의 문이 크게 부서지고 지붕에는 구멍이 뚫렸습니다.(중략)

▷기자 : 무너진 집의 재난관리 판정등급은 2급. 서울 시내에만 이런 건물은 200군데가 넘습니다. 이 연립주택도 2년 전 E급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장 철거돼야 할 이 건물이 계속 방치된 채 기울어지면서 지금은 옆의 건물과 거의 붙어버렸습니다. 패트병이 빠른 속도로 굴러갈 정도로 기울어진 이 건물에는 지난 해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측정해 본 결과 5도에서 7도 이상 기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두준(인덕대학 건설정보시스템과 교수) :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철거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한쪽 벽은 무너져 속이 들여다보이고 반대쪽은 철근 하나로 지탱되고 있는 이 건물은 벌써 1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D급 판정을 받은 이 건물도 비닐과 시

멘트로 응급조치를 한 게 전부입니다. 이 같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건물의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소유주에게 있어 강제로 거주자를 대피시키거나 보수시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수를 권고하는게 고작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강제로) 주민을 대피시키지는 못합니다. (경고를) 주민이 안들을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자 : 서울 시내에만 이렇게 붕괴 직전의 상태로 위험하게 방치되고 있는 건물은 무려 745동에 이릅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KBS-1TV 2002년 8월 21일 「뉴스9」프로그램 중 ‘붕괴직전 소형건물 그대로 방치’ 보도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갑자기 무너져 내린 주택이 2층 상가건물을 보여주며 지은지 30년이 넘었지만 보수는커녕 안전진단조차 한번 받은 적이 없으며 그 결과 건물은 붕괴되었고 건물 내에 있던 주민 11명이 매몰되는 변을 당한 현장이라며 참혹한 장면을 소개한 뒤 곧바로 신청인이 소유한 토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351) 쪽으로 이동하여 ‘며칠 전만 해도 주택이 서있던 자리입니다. 축대 위에 이 주택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아랫집의 문이 크게 부서지고 지붕에는 구멍이 뚫렸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주택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2002. 7. 19. 석축일부가 무너진 것이며 주택부분은 구청에서 ‘신문로2가 1번지 축대 붕괴에 따른 행정대집행 통보(건축58550-4793)’에 기인해 종로구청에서 무단 강제 철거하여 신청인이 종로구청에 진정하고 있으며

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신청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건이다.

신청인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이번 사건을 한달이 지난 8월 21일 KBS 9시 뉴스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내용을 이상한 구성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영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종로구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웃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되어 정상적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 방송이 지난 2002년 8월 21일 「뉴스9」프로그램 ‘붕괴직전 소형건물 그대로 방치’ 보도에서 “며칠 전만 해도 주택이 서있던 자리입니다. 축대 위에 이 주택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아랫집의 문이 크게 부서지고 지붕에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웃 10여 가구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351번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종로구청에서 신문로2가 1-351번지 지상의 건물을 무단강제 철거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서울 도심 곳곳에 붕괴 직전의 소형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위험하다는 지난 8월 21일 KBS 「뉴스9」의 보도 중 붕괴 주택의 사례로 방영된 종로구 신문로 2가 1-351번지 주택은 건물노후화로 자연 붕괴된 것

이 아니라 구청에 의해 강제철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KBS 홈페이지 「뉴스게시판」에 2002년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게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 홈페이지 : 「뉴스게시판」란 (2002년 10월 1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부산대병원이 고가 의료장비를 도입하면서 외국의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부산중재10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양웅석)

피신청인 : 부산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2. 9. 1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부산일보 : 『평가결과 무시 특정사 선정 부산대병원 '장비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02년 9월 12일자 31면)

내 용 : 부산대병원이 고가 의료장비를 도입하면서 외국 특정업체를 선정, 국내 경쟁업체는 물론 병원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다.

12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하

반기로부터 2년여에 걸쳐 의학영상 저장·전송 시스템(PACS) 도입을 위해 지난 2000년 의사와 담당 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PACS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제1차 PACS위원회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5개의 참여업체를 상대로 두차례에 걸쳐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내 업체인 H사와 M사가 1,2위를 차지했고 또 다른 M사가 3위, 미국 업체인 G사가 4위, 국내업체인 또 다른 M사가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지난 7월 국내업체의 재정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PACS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담당 부서의 실무자 등 제1차 PACS위원회 위원 5명을 교체하고, 병원 진료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차 PACS위원회를 전격 구성했다. 2차 PACS위원회는 업체별 프리젠테이션에서 1차 PACS위원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H사 등 국내업체를 제외시켰다. 대신 2위를 차지한 국내 M사와 4위를 차지한 미국계 G사만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프리젠테이션을 가진 뒤 미국계 G사를 최종 선택해 경쟁업체의 반발은 물론 특혜의혹마저 사고 있다.

통상 경쟁입찰의 경우 몇차례의 평가 점수를 종합해 최종업체를 선정하는데 반해 병원측은 2차례에 걸친 평가에서 4위를 차지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대해 국내 업체들은 "병원측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1차 PACS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2차 PACS위원회를 구성해 특정 외국업체를 선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특히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의 재정력을 문제삼아 탈락시킨 것은 공립병원으로 할 일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병원 내부 관련부서에서도 "사용하기 까다롭고 국내업체보다 가격도 훨씬 비싼 외국업

체를 선택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병원측이 최종선택한 G사는 1차 평가 당시 7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 50억원대를 제시한 국내업체에 비해 가격 면에서도 월등히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 4월 양모(62) 병원장이 G사 시스템이 설치된 병원에만 따로 시설견학을 갔고 지난 7월 G, M사로부터 프리젠테이션을 받을 때도 당초 G사만 단독으로 실시했다가 경쟁업체의 반발을 사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부산대학교병원으로서, 부산일보가 2002. 9. 12.자 31면(사회)에 『평가결과 무시 특정사 선정, 부산대병원 ‘장비특혜’ 의혹』이란 제하의 보도기사에서 부산대병원이 PACS(의료영상 저장·전달 시스템)장비 도입 전 사전심의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는 편협된 입장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로 인해 부산대학교병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병원장의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부산일보는 2002년 9월 12일자 31면에 게재된 『평가결과 무시 특정사 선정, 부산대병원 ‘장비특혜’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평가결과 무시 특정사 선정, 장비특혜 의혹”, “PACS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무시하고...”, “병원측은 2차례에 걸친 평가에서 4위를 차지한 업체를 최종선택했다”, “...가격 면에서도 월

등히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이 G사 시스템이 설치된 병원에만 따로 시설견학을 갔고”, “...당초 G사만 단독으로 실시했다가 경쟁업체의 반발을 사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여왔다고...”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단순히 제보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한 기사이며, 사실과는 다릅니다.

국민을 위한 공익병원인 부산대병원은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PACS) 도입을 위해 지금까지 4차례의 단계를 거쳐 평가하였습니다(1차 PACS CQI팀, 2차 PACS도입소위원회, 3차 PACS도입추진위원회, 4차 관리회의). 2000년도에 의사와 담당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1차 PACS CQI팀에서는 기술 및 운용적 관점에서 평가성적을 보고하였으며, 2001년 7월 구성된 2차 PACS도입소위원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심의 평가후 2개사를 추천하였으나, 검토과정에서 M사(메디슨)의 부도 파동 등으로 상기 2개사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M사 및 G사를 추천되었으며, 2002년 7월 병원간부를 위원장으로 구성한 3차 PACS도입추진위원회에서 M사 및 G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G사의 선택을 병원당국에 권고하였으며, 4차적으로 관리회의에서 G사 추천에 대한 최종검토를 실시하고, 2002년 9월 현재 PACS도입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절차를 취하는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최종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결정을 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특정사 선정 ‘장비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수준을 넘어 사실 자체를 크게 왜곡한 것입니다.

특히, PACS CQI팀은 병원의 공식기구가 아닌 병원장이 어떠한 추진과제가 있을 때 긴급히 팀을 구성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 및 실시하는 자문역으로, 현재

본원 내에는 몇 개의 유사한 CQI팀을 활용하고 있는데, 보도기사에서는 병원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공식기구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병원에서 정식발령을 받은 「PACS도입추진위원회」는 PACS 도입결정 심의를 위한 단계로 병원 핵심 간부진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회의체입니다. 동 보도기사의 가장 큰 오류는 제1차 PACS위원회(정확한 명칭은 PACS CQI팀)가 마치 병원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공식기구인 것처럼 판단한 누군가의 잘못된 제보에 의해(탈락위기의 M사에서), 그 회사 위주로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시킨 점입니다.

“평가결과를 무시하고 특정업체를 최종선정” 하였다고 했는데, 기술적인 평가는 ‘PACS 평가기준표’에 의해 2차례 실시되었으며, 평가기준인 안전성, 병원에의 적합성, 지속성 등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PACS CQI팀의 등급 순위는 여러 분야에 걸친 상대점수이므로 참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PACS 장비의 성격상 어느 분야는 A사가, 다른 분야는 B사가 우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결정은 어디까지나 최종 종합평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일보사는 자문역인 CQI팀의 평가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관적인 결정을 앞세워 대형 의료기기 선정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부산대병원에서 마치 특정업체를 근거없이 선정한 것으로 특혜의혹이 있다고 과장 보도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부산대병원에서는 PACS 도입관련 CQI팀의 검토내용과 병원 경영진의 정보수집을 토대로 진행된 회의결과가 병원장에게 제출된 상태이지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50억원대를 제시한 국내업체의 기기를 선

택하지 않고 70억원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한 G사를 최종 선택”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병원에 최종제출된 건적가는 양사 모두 50억원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부사정을 모르면서 ‘특혜’니, ‘의혹’이 있니 운운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산일보사의 잘못된 보도기사는 국민여론을 올바르게 선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언론이 정확한 정보수집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보자의 잘못된 제공자료에만 의해 보도하여 병원계의 특혜의혹이라고 꼬집은 언론의 정도를 크게 벗어난 처사라 하겠습니다.

반론보도 신청인 부산대학교병원장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부산대병원 장비 특혜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부산대병원측은 아래와 같은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부산일보는 독자들의 반론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게재합니다.

부산일보는 2002년 9월 12일자 31면에 게재된 『평가결과 무시 특정사 선정, 부산대병원 ‘장비특혜’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부산대병원이 PACS(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 도입추진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을 위한 공익병원인 부산대병원은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PACS)도입을 위해 지금까지 3차례의 단계를 거쳐 평가하였으며, 1차 PACS CQI팀, 2차 PACS 도입소위원회, 3차 PACS 도입추진위원회, 마지막으로 4차 병원의 주요정책의결기구인 ‘관리회의’에서, PACS 도입추진

위원회에서 상정된 의견을 받아들이는 절차를 취하는 중에 있으므로, 『특정사 선정 '장비특혜 의혹'』이라고 보도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특히, PACS CQI팀은 병원의 공식기구가 아니며 병원장이 어떠한 추진과제가 있을 때 긴급히 팀을 구성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 및 실시하는 자문역으로, 현재 본원 내에는 몇 개의 유사한 CQI팀을 활용하고 있는데, 부산일보 기사에서는 병원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공식기구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병원에서 정식발령을 받은 'PACS 도입추진위원회'는 PACS 도입결정 심의를 위한 단계로 병원 핵심 간부진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회의체입니다. 동 보도기사의 가장 큰 오류는 제1차 PACS위원회(정확한 명칭은 PACS CQI팀)가 마치 병원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공식기구인 것처럼 판단한 점입니다.

부산대병원은 Full PACS 도입을 위해, 기술적인 평가는 'PACS 평가기준표'에 의해 PACS CQI팀에서 2차례 실시되었으며, 평가기준인 안전성, 병원에의 적합성, 지속성 등에 대해 평가하였으나, CQI팀의 평가 순위는 여러 분야에 걸친 상대 점수이므로 참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PACS 장비의 성격상 어느 분야는 A사가, 다른 분야는 B사가 우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결정은 어디까지나 최종 종합평가에 의존하는 것인데, 보도기사에서는 PACS 장비 도입결정을 자문역인 CQI팀의 평가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부산대병원에서 마치 특정업체를 근거없이 선정한 것으로 특혜의혹이 있다고 과장 보도하였습니다.

부산일보는 "50억원대를 제시한 국내업체의 기기를 선택하지 않고 70억원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한 G사를 최종선택"했다고 보도했는데, 정확하게 병원에 최종제출된 견적가는 양

사 모두 50억원대를 제시하였습니다.

전후 사정이 위와 같은데도 부산일보가 '특혜', '의혹' 운운의 보도를 한 것은 사실을 곡해한 것입니다.

반론보도 신청인 부산대학교병원장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2002년 10월 3일 이전에 부산일보 우측 오피니언란(9면) 우측상단에 가로 11.3cm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 활자크기는 위 신문 2002년 9월 12일자 9면 우측상단의 기고문 기사의 제목(몽생미설 사원서의 즉흥강의) 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본지 "부산대병원 장비 특혜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을 곡해한 것입니다.) 활자크기는 같은 기사 본문활자크기로 하며, 신청인 표시(반론보도 신청인 부산대학교 병원장) 부분 활자크기는 같은 기사 기고자 표시(허만)부분 활자크기의 고딕체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부산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10월 1일자 9면)

내 용 : 본지 '부산대병원 장비특혜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부산대병원측은 아래와 같은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부산일보는 독자들의 반론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전문 게재합니다.

부산일보는 2002년 9월 12일자 31면에 게재된 『평가결과 무시 특정사 선정, 부산대병원 '장비특혜'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부산대병원이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도입추진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을 위한 공익병원인 부산대병원은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PACS도입을 위해, 병원장

의 자문역인 실무팀에서 국내 병원계의 PACS 도입 운용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 조사, 분석 및 시설견학을 실시한 후에 제안회사의 PACS 기술 및 운용적 관점에서 1단계의 기술적인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후 1000 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PACS 설치 운용시 시스템의 안정성과 적합성,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 능력과 업그레이드시 유용성, 설치회사의 재정적 유지 능력을 포함한 2단계 평가를 실시한 후, 병원의 공식 회의체에서 모든 종합평가기준에 충족되는 PACS업체가 최종 검토 후에 추천되었으며, 2002년 9월 현재 병원의 주요 정책의결기구에서 상정된 의견을 받아들이는 절차를 취하는 중에 있는데, 부산일보는 2년여 간에 걸친 평가과정과 안정성있는 업체가 추천되기까지의 세부과정을 오인한 가운데 마치 특정업체를 근거없이 선정한 것으로 특혜의혹이 있다고 과장 보도하였습니다.

또, 부산일보는 최종 경쟁 2개사에서 최종 제출된 견적가격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과장비교 보도함으로 인해, 독자들이 공익병원인 부산대병원을 불신하도록 하여 위상을 실추시켰고, 병원장의 명예가 훼손당하는 곤경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전후사정이 위와 같은데도 부산일보가 '장비특혜', '의혹' 운운한 것은 사실을 곡해한 것입니다.

반론보도 신청인 : 부산대학교병원장 □

신청인 방송이 수해관련 지역뉴스를 SBS에 제공하지 않아 양 방송사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청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218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부산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조)
피신청인 : 전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2. 9.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자신문 : 『SBS 개정 네트워크 협약안 '마찰'』
제하의 기사 (2002년 9월 16일자 41면)
내 용 : 그동안 밀월관계를 지속해왔던 SBS와 지역 민영방송사가 2년마다 갱신되는 새로운 네트워크협약 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SBS가 네트워크협약 개정안을 내놓자, 지역민영방송사의 노동조합대표자 일동은 최근 SBS가 새로이 제시한 네트워크협약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갈등은 SBS와 지역 민영방송사간 프로그램 공급계약과 위성방송을 통한 SBS 역외재송신 문제도 잠재돼있어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새 네트워크협약 개정안=지역 민영방송사 노조대표의 반발은 SBS가 이번 새 네트워크협약 개정안에 제재조항을 신설하면서 야기됐다.

그동안 SBS와 각 지역 민영방송사간 네트워크협약에는 한쪽이 약정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상대 방송사가 각각 취할 수 있는 제재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SBS는 새 네트워크협약 개정안에 제재조항을 신설하게 됐다. 문제의 핵심은 SBS가 지역 민영방송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급중단' 과 관련된 제재조항이다. SBS는 한편으로 지역 민영방송사가 SBS에 대해 취할 수

있도록 '권역내 SBS 방송송출중단' 조항도 제시했다.

◇SBS의 입장=SBS 측은 제재조항 신설이 지난 경남 김해지역 수해와 관련, 부산방송으로부터 뉴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지 못해 뉴스제작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부산방송은 김해지역 수해 뉴스가 지역 뉴스이기 때문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반면, SBS는 김해지역 수해 뉴스가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받아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를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BS는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재조항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부산방송은 전자신문 9월 16일자 41면에 "SBS측은 제재조항 신설이 지난 경남 김해지역 수해와 관련, 부산방송으로부터 뉴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지 못해 뉴스제작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고 책임없이 기사화했고 더 나아가 "부산방송은 김해지역 수해뉴스가 지역뉴스이기 때문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반면"이라고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산방송에 한마디 확인취재 없이 기사화함으로써 결정적으로 본 방송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신청인 방송은 SBS에 김해지역 수해가 지역뉴스라는 말을 어느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다.

현재 SBS와 지역민방간의 네트워크협약 수정안을 놓고 가장 민감한 상황에서 마치 네트워크의 규제조항 삽입 책임을 신청인방송에 돌림으로써 지역민방사이에 불화야기는 물론 신청인 방송이 불평등한 네트워크협약

안 체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오해의 단서를 제공했다.

신청인 방송은 피신청인의 기사가 사실관계 확인없이 게재돼 본 방송의 명예를 실추시켰기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는 지난 9월 16일자 41면에 『SBS 개정 네트워크 협약안 마찰』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SBS측은 제재조항 신설이 지난 경남 김해지역 수해와 관련 부산방송으로부터 뉴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지못해 뉴스제작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부산방송은 김해지역 수해 뉴스가 지역뉴스기 때문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반면, SBS는 김해지역 수해 뉴스가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받아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를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부산방송은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경남지역 수해가 발생했을 때 보도국의 역량을 총동원해 8월 9일부터 18일까지 SBS 8시뉴스와 아침종합뉴스, SBS뉴스와 생활경제에 모두 24건의 중계차 및 리포트 참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참여 리포트 건수 가운데 80%가 김해수해와 관련된 리포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본지 기사 가운데 "김해지역 수해뉴스가 지역뉴스이기 때문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부산방송 관계자의 말은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9월 16일자 41면에 보도된 『SBS 개정 네트워크 협약안 마찰』이라는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부산방송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16일자 41면 『SBS 개성 네트워크 협약안 '마찰'』 기사에서 SBS측의 제재조항 신설은 지난 경남김해지역 수해 당시 부산방송으로부터 뉴스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해 뉴스제작에 차질을 빚은 것이 계기가 됐으며 이에 대해 부산방송은 수해관련 뉴스가 지역뉴스이기 때문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부산방송이 '김해 지역 수해 뉴스가 지역뉴스이기 때문에 SBS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부산방송은 수해뉴스를 정상적으로 SBS에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자신문' 문화산업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2002년 10월 5일 이전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자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10월 2일자 2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국선변호인의 선임과정과 순용실태를 잘못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21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재승)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02. 9. 19.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매일경제 : 『이름만 그럴듯한 국선변호』 제하의 기사 (2002년 8월 22일자 39면)

내 용 : ■ 국선변호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국선변호를 맡는 변호사들의 상당 부분은 국선변호를 일종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정도로 여기고 자신의 주된 업무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선변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임모 변호사(35)는 "특별히 들어오는 사건도 없고 변협에서 국선변호 의무규정 등을 두고 있어 가끔 한다"며 "유무죄 여부가 명백한 형사사건이 많아 변론을 위해 공 들이는 경우가 적다"고 말했다.

■ 경험쌓기 전략한 국선변호인

국선변호를 '실전대비 경험쌓기' 정도로 여기는 새내기 법조인들의 태도도 문제다.

실제로 사법시험에 합격만 하면 자동으로 국선변호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조 경험이 일천한 사법연수생들이나 공익법무관들이 국선변호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말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는 사법연수원생 김모 씨(30)는 "솔직히 그때 너무 떨려 어떻게 변호를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지금이라면 좀더 변론을 잘해 감형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도 든다"며 "좋은 경험을 쌓긴 했지만 피고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 사람잡는 불성실 변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변호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 때로는 변호인의 성의 없는 변론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경우도 생긴다.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중형을 선고받은 박모 씨(43)의 아내 이모 씨(38)는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소송인데 변호인의 성의없는 변론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고 말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선고일 재판장에서 처음 만난 변호사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랍니다’는 얘기만 하고 이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무실까지 찾아가 항의해 봤지만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만 들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변호사를 샀을 텐데...”라며 억울해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64조에 따라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신청인은 기사를 게재하면서 부정확한 취재와 국선변호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말미암아 국선변호의 실상을 왜곡보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국선변호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특히 이 기사는 사실상 신청인의 회원을 상대로 취재하여 기사화한 것으로 신청인 소속 변호사와 신청인에 대하여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는 2002년 8월 22일자 39면에 『이름만 그럴듯한 국선변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선변호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는 소제목을 달고 “임모 변호사(35)는 국선변호에

대하여 ‘특별히 들어오는 사건도 없고 변협에서 국선변호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가끔 한다’라고 말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결과 현재 국선변호인은 변호사회에서 모든 변호사에게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아가 본지는 위 지면에서 『경험쌓기 전략한 국선변호인』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국선변호를 ‘실전대비 경험쌓기’ 정도로 여기는 새내기 법조인들의 태도도 문제이다. 실제로 사법시험에 합격만 하면 자동으로 국선변호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조경험이 일천한 사법연수생들이나 공익법무관들이 국선변호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결과 현재 국선변호인들은 기본적으로 일정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변호사회를 통하여 선발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으며, 사법연수생들이나 공익 법무관들의 국선변호 또한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실전대비 경험쌓기 수준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지는 위 지면에서 『사람잡는 불성실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중형을 선고받은 박모 씨(43)의 아내 이모 씨(38)는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소송인데 변호인의 성의없는 변론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고 말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선고일 재판장에서 처음 만난 변호사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랍니다’는 얘기만 하고 이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무실까지 찾아가 항의해 봤지만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만 들었다며 ‘이럴 줄 알았다면 변호사를 샀을 텐데...’하며 억울해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선고일에 당사자가 국선

변호인을 만났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위의 내용은 당사자측의 주장만을 소개한 것으로 담당 국선변호인의 주장은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정정보도문
- 내용 : 본지 8월 22일자 39면에 게재된 『이름만 그럴듯한 국선변호인』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고쳐 바로잡습니다.
기사내용 중 『국선변호사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는 소제목 아래 “특별히 들어오는 사건도 없고 변협에서 국선번호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가끔 한다”고 언급했으나, 사실을 확인해 보니 국선변호인은 변호사회에서 각 변호사의 지원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생이나 공익법무관도 법원의 지정에 의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잡는 불성실 변론』이라는 소제목 아래 인용된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은 박모 씨(43)의 아내 이모 씨(38)의 사례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소송인데 변호인의 성의없는 변론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럴줄 알았다면 변호사를 샀을텐데”하며 억울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결과 선고일에 당사자가 국선변호인을 처음 만났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그 밖의 부분은 내용자체가 당사자측 주장만을 소개한 것이므로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경제』 38면(사회 2면) 사이드 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일을 지정하여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2년 10월 1일자 3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임시회의 개최시간에 공금을 이용해 단체회식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경기중재22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용 의 외 4인
피신청인 : 계양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2. 9.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계양신문 : 『본분망각 저질행태 여전』 제하의 기사 (2002년 9월 11일자 2면)
내 용 : 계양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본분을 망각한 저질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의회업무보고 도중 개인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임시회 참석을 거부한 채 공금을 이용해 단체회식을 즐기고, 공식석상에서 여성비하발언을 하는 등 의원자질의 의심케하는 행동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와 함께 지난달 2일엔 재·삼선의원 5명이 의정활동을 중단하고 구의회공금을 이용 용유도 을왕리횃집에 몰려가 단체 회식을 즐기고 오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구청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중단한 채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동안 의회공금을 이용, 여흥을 즐기고 온 것이다.

그런가 하면 3선의원인 김용익 의원(작전서운동)은 지난 2일 정례회 특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어 비난을 사고 있다.

김의원은 이날 김진웅 의장 등 초선의원들을 향해 “초상집에 동행한 여성들이 누구냐”며 “왜 ‘갈치’ 두 명을 의전용차량에 동승시켰냐”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김의원의 이같은 저질발언에 대해 지역여성계는 물론 주민들까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으로서 2002년 9월 11일자 계양신문의 2면에 보도된 『본분망각 저질행태 여전』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첫째, 임시회 참석을 거부한 채 공금을 이용해 단체회식을 즐겼다 둘째, 지난 2일 정례회 특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김진웅 의장 등 초선의원들을 향해 “초상집에 동행한 여성들이 누구냐”며 왜 ‘갈치’ 두 명을 의전용차량에 동승시켰냐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첫 번째 임시회를 거부한 채 여흥을 즐겼다 라고 하였으나, 제7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2002. 8. 26 ~ 2002. 8. 31 6일간)은 계양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는 중요한 의사일정으로서 위 기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실·과, 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며 질의와 답변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하는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음에도 임시회를 거부하였다고 운운하는 것은 우리구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정례회 특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여성들이 누구냐며 왜 ‘갈치’ 두 명을 의전용차량에 동승시켰냐고 한 부분은, 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기 전 구의회 의장으로서의 권위와 체신을 지켜 달라는 일심에서 의장 개인에게 전한 말을 와전시켜 여성을 비하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였다.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문제 기사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는 지난 9월 11일자 제2면에 『본분망각 저질행태 여전』제하의 기사에서 재선·삼선의원들이 임시회 참석을 거부한 채 공금을 이용해 단체회식을 즐겼다고 하였고 정례회 특별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김진웅 의장 등 초선의원들을 향해 “초상집에 동행한 여성들이 누구냐”며 왜 ‘갈치’ 두 명을 의전용차량에 동승시켰냐고 말했다는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임시회 참석거부에 관하여는 회의 참석일수가 6일로써 임시회 참석거부는 잘못되었으며, 정례회 특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여성을 비하한 발언은 의장 개인의 권위와 체신을 지켜달라고 하는 개인적인 말일 뿐 이를 와전시켜 모독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11일자 2면 『본분 망각 저질행태 여전』 제하의 기사에서 재선·삼선의원들이 임시회 참석을 중단한 채 공금을 이용해 단체회식을 즐겼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선 의원들은 8월 29일 임시회 참석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업무추진 비로 중식을 한 후 오후 회의가 끝난 후에 도착한 것 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계양신문 2002년 10월 9일 2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개인사업관련 민원성 발언...)과 같은 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계양신문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2002년 10월 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결혼을 연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R 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22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박 신 양

피신청인 : 스포츠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2. 9. 2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스포츠투데이 : 『결혼연기 박신양』 제하의 기사
(2002년 9월 10일자 1면)

내 용 : 영화배우 박신양-백혜진 예비커플이 다음달 13일로 잡힌 결혼을 돌연 연기했다.

지난달 28일 13살 연하인 백혜진 양과의 결혼을 공식 발표한 직후 백양의 과거와 관련된 '사이버 루머'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곤욕을 치렀던 박신양이 지난 4일 "10월 13일 예정대로 결혼식을 치를 것"이며 "(백)혜진 씨에 대한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터라 이번 결혼연기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은 지난 주말부터 박신양과 그의 예비신부 백혜진 양 등의 측근들을 통해 퍼지고 있다. 두 사람의 한 측근은 9일 "얼마전 양측이 결혼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현재 연기는 결정됐지만 언제 결혼 날짜를 다시 잡을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또 결혼식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혹시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미묘한 심경의 변화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박신양과 백양사이의 애정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박신양의 결혼 연기는 여러 곳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의 결혼 진행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곳의 대형 연회장 한 곳을 10월 13일자로 '가계약'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주 박신양측인지, 백양측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10월 13일자

로 해 둔 가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얏트호텔 측은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박신양은 연예인이며 신청외 백혜진과 결혼할 사이로서 2002년 9월 10일자 스포츠투데이 1면에 『결혼연기 박신양 '예정대로 강행' 발표 6일만에 돌연 번복 양측 이미 합의 예식장 예약도 전격취소』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신청인 박신양은 2002. 8. 28. 오전 11시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청외 백혜진과 2002. 10. 13. 결혼식을 올리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결혼식 발표이후 예비신부 백혜진과 관련하여 인터넷의 각종 게시판에 위 백혜진의 과거에 대한 갖은 비방과 악성루머 등이 난무하면서 일반인들은 과연 신청인이 악성루머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정신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인터뷰나 사실확인 없이 2002년 9월 10일자 중재대상 기사에서 “영화배우 박신양-백혜진 예비커플이 다음달 13일로 잡힌 결혼을 돌연 연기했다.” “두 사람의 한 측근은 9일 ‘얼마 전 양측이 결혼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현재 연기는 결정됐지만 언제 결혼 날짜를 다시 잡을 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라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중재대상 기사와는 달리 예비신부인 신청외 백혜진과 2002년 10월

13일로 잡힌 결혼식을 연기한 사실이 전혀 없음은 물론 피신청인에게 “결혼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중재대상과 같은 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신청외 백혜진과 관련된 사이버상의 음해성 루머를 사실로 인식하여 신청인과 위 백혜진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결혼을 연기하는 것으로 오인케 하여 신청인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처럼 진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앞으로 계속 연예활동을 영위해 나갈 신청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피해를 입히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는 2002. 9. 10.자 1면에 『결혼연기 박신양 '예정대로 강행' 발표 6일만에 돌연번복 양측 이미 합의 예식장 예약도 전격취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기사 본문에 신청인 박신양이 예비커플 백혜진 양과의 예정된 결혼을 돌연 연기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박신양 씨는 결혼을 연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실은 예정대로 2002. 10. 13.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2년 9월 10일자 1면 『결혼연기 박신양 '예정대로 강행' 발표 6일만에 돌연번복 양측 이미 합의 예식장 예약도 전격 취소』제하의 기사에서 기사 본문에 신청인 박신양이 예비커플 백혜진 양과의 예정된 결혼을

돌연 연기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박신양 씨는 결혼을 연기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예정대로 2002년 10월 13일에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스포츠투데이 연예 첫면에 2002. 10. 9. 이전에 1회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 활자 크기는 스포츠투데이 2002. 9. 26.자 16면 기사 제목 크기(약혼녀 집근처 입원...)과 같게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스포츠투데이 : 『마침내 스위트 홈!』 제하의 기사 (2002년 10월 12일자 15면)

내용 : '영화도 결혼도 만사패조' 영화 배우 박신양(34)에게 올 가을은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풍성한 인생을 수확하는 시기가 될 것 같다.

우선 영화계의 대표적인 노총각 스타 중 한 명이던 그가 올 가을 드디어 평생의 반려자를 맞게 됐다. 박신양은 13일 오후 1시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13살 연하인 백혜진 양(21)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또한 '달마야 놀자' 이후 장고를 거둬들였던 차기 출연작도 영화 '사인용 식탁'(감독 이수연·제작 영화사 봄/싸이더스 HQ)으로 결정했다. 상대는 99년 영화 '화이트 발렌타인'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신세대 스타 전지현. 일이나 인생설계 모두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흡족한 그는 요즘 표정관리에 적잖게 신경을 쓰고 있다.

박신양의 결혼은 화려하고 요란스런 행사보다 차분하고 소박한 자리를 원하는 그의 바람

때문에 웨딩사진이나 함들이 없이 조용하게 준비됐다. 하얏트 호텔에서의 결혼식도 결혼의 경건한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영화 '약속'과 '달마야 놀자'에 박신양과 함께 출연하며 우정을 쌓아온 선배 연기자 정진영이 사회를 자청했다. 주례는 동국대 연극영화과 재학 시절 은사인 안민수 서울예대 교수가 맡는다. 하지만 결혼식 음악만은 어느 스타의 결혼식 못지않게 화려하게 준비됐다. 40인조 오케스트라가 이날 결혼식 연주를 맡는다. 얼핏 소박한 결혼식을 바라는 박신양의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오케스트라 연주는 그와 각별하게 친분이 있는 독일인 영화음악 작곡가 미하엘 스타우다커가 마련한 선물이다. 미하엘 스타우다커는 박신양이 주연을 맡은 '인디안 썸머'의 음악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다. 그는 박신양의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결혼식 음악을 자청하고 나서 영화 음악 작업을 함께 했던 오케스트라와 이날 결혼식장에 선다. 박신양도 스타우다커의 우정어린 선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신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허니문 여행은 당분간 뒤로 미루기로 했다. 박신양의 신작 영화 '사인용 식탁'의 촬영이 15일부터 시작되는데다 요즘 한창 대본 연습 중이라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첫날 밤은 박신양이 결혼 후 살려고 일산에 마련해 둔 새 아파트에서 맛을 계획이다. 둘만의 달콤한 신혼여행은 오는 12월 중순이나 내년 1월 중순께 끝나는 '사인용 식탁' 촬영 후로 미뤘다.

박신양의 신작 영화 '사인용 식탁'은 그로서는 처음 출연하는 장르인 심령 스릴러다. 결혼을 앞둔 남자가 어느날 갑자기 혼령을 보게 되면서 겪는 일상의 변화를 담고 있다. 박

신양은 이 영화에서 결혼을 앞두고 우연히 지하철에 버려진 아이들의 혼령을 보게 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원역을 맡았다. 그는 연기 생활 중 처음으로 도전하는 장르여서 요즘 대본 연습부터 이 작품에 온갖 정성을 쏟고 있다.

박신양은 영화 때문에 신혼 초부터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다. 그래도 영화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촬영될 예정이어서 일산의 신혼집에서 내조에 힘쓸 '어린' 아내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을 생각이다. 노총각 스타에서 새 신랑으로 변신한 박신양의 연기는 내년 봄 스크린에서 접할 수 있다. □

신청인들이 연인관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225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1. 김 승 우
2. 김 하 늘

피신청인 : 스포츠서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2. 9. 2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스포츠서울 : 『김승우 '하늘사랑'』 제하의 기사
(2002년 9월 20일자 1면)

내 용 : 톱스타 김승우(33)와 김하늘(24)이 열애 중이다.

국내 영화계의 간판 배우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승우와 텔런트 겸 영화배우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하늘이 1년 넘게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한때 튜브엔터테인먼트에 함께 몸담은 바 있는 두 사람이 선후배 연기자 이상의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소문은 지난해 초부터 나돌았다. 김하늘의 단골 미용실에 김승우가 나타나 자신의 승용차에 김하늘을 태우고 가는 등 다정한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면서 열애설은 공공연하게 퍼졌다.

그러나 두 사람은 줄곧 열애 사실을 부인해왔다. 친한 선후배 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해온 이들이 연인 사이로 본격 발전한 것은 김승우가 이혼의 아픔을 겪은 뒤부터다.

김승우는 2000년 11월 이미연과 이혼했다. 그후 사람을 기피할 정도로 마음의 아픔을 겪던 그는 후배이자 여동생 같은 김하늘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또한 그는 헤어지고나서도 친구처럼 지내던 이미연으로부터 “얼른 좋은 사람 만나라”는 진지한 조언을 받던 차에 김하늘에게서 ‘여인의 향기’를 느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기와 맞물려 김승우가 튜브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싸이더스로 소속사를 옮겼고 김하늘은 이 회사에 잔류했다. 이렇게 소속사를 바꾼 게 오히려 두 사람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한 회사의 간판스타 두 사람이 사귀다는 것은 소속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교체할 수 없다가 소속사가 바뀐에 따라 당당하게 손을 잡고 다닐 수 있게 됐다.

두 사람의 데이트 장소는 주로 김승우의 집이 있는 방배동의 카페골목이었다. 김승우의 소속사가 청담동, 김하늘은 압구정동이었기 때문에 되도록 그곳을 피하다 보니 방배동에서 만나게 된 것. 지난해 김승우가 미국

여행을 다녀왔을 때는 김하늘에게 L사의 명품 핸드백을 선물했고, 김하늘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김승우에게 V사의 넥타이를 선물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결혼에까지 이르지 않는 아직 미지수다. 김승우가 한 번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김하늘에게도 자신이 이혼남이란 사실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측근은 “둘 사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며 자주 연락하고 시간이 나면 만나서 식사를 같이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들의 사랑을 확인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들은 영화배우 겸 탤런트로 최근 활발한 활동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들로서 지난 2002. 9. 20. 자 스포츠서울 1면 『김승우 ‘하늘사랑’ 1년 넘게 진지한 만남』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중재대상 기사와는 달리 서울 방배동에서 소속사를 피해 데이트를 한 적이 없고, 신청인 김하늘에게 명품 핸드백을 선물한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신청인 김하늘로부터 넥타이를 받지도 않음은 물론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이인데 반해 피신청인이 중재대상의 기사와 같이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신청인 김승우가 신청외 이미연과 이혼할 당시 떠돌던 근거 없는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인식시켜 신청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예전의 정신적 고통을 딛고 연기생활에 전념하고자 하는 신청인들에게 또 다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여 연기생

활에 지장을 줌은 물론 마치 신청인들이 결혼할 사이로 인식케 하여 신청인들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처럼 진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 신청인들과 신청외 이미연간에 삼각관계로 인하여 신청인 김승우가 신청외 이미연과 이혼을 하게 된 것으로 비취지게 함은 물론 단순히 선후배 사이인 신청인들을 사랑하는 사이로 보도함으로써 앞으로 계속 연예활동을 영위해 나갈 신청인들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피해를 입히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이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는 2002년 9월 20일자 1면에 『김승우 ‘하늘사랑’ 1년 넘게 진지한 만남』 제하의 기사에서 기사 본문에 신청인들이 1년 넘게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소속사를 피해 김승우의 집이 있는 방배동에서 만난다. 둘 사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며 자주 연락하고 시간이 나면 만나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들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신청인들은 소속사를 피해 만남을 가진 적이 없으며, 서로 선물을 주고 받지도 않았고, 두 사람의 측근의 말을 인용한 “둘 사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며 자주 연락하고 시간이 나면 만나서 식사를 같이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들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2년 9월 20일자 1면 『김승우 '하늘사랑' 1년 넘게 진지한 만남』 제하의 기사에서 기사 본문에 영화배우 김승우와 김하늘이 1년 넘게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두 사람이 소속사를 피해 김승우의 집이 있는 방배동에서 만나고 있고, 둘 사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며 자주 연락하고 시간이 나면 만나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들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우, 김하늘은 소속사를 피해 만남을 가진 적이 없으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도 않았으며, 두 사람의 측근이 '둘 사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며 자주 연락하고 시간이 나면 만나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들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스포츠서울 32면 우측 최하단에 2002. 10. 11.까지 1회 게재하되, 보도문의 폭은 스포츠 서울 2002년 9월 20일자 「연예뉴스 in뉴스」란 게재 기사의 폭과 같이 하고, 제목(반론보도문) 활자 크기는 위 「연예뉴스 in뉴스」란에 게재된 기사 제목 크기와 같이 하되, 활자체는 진한 고딕으로 하고, 내용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스포츠서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10월 7일자 3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신문사가 '검단지역 김포시 환원 범시민추진위원회'의 예산통장을 부당하게 가압류해 추진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경기중재29
 청구명 :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주) 미래신문
 (대표이사 김진수)

피신청인 : 김포뉴스
 접수일 : 2002. 9.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김포뉴스 : 『“환원운동 발목잡는 행위 그만두라”』제하의 기사 (2002년 9월 16일자 6면)

내 용 : “신문대금, 기자월급, 시반환금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부당하다. 미래신문은 범시민적 여망에서 비롯된 검단 환원운동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그만두라.”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가 전 사무국장인 미래신문 김진수 대표의 환급금 지급 요구중단과 예산통장 가압류 해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추위는 11일 <미래신문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검추위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미래신문사 대표가 환급을 요구한 인건비와 신문대금, 시반환금 등 2,870여 만원은 검추위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이같은 행위는 환원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검추위는 전 집행부의 문제점, 특히 환원운동 절차상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과 앞으로 현 집행부의 예산집행, 추진운동상황을 투명

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집 위원장은 “한때 사무국장의 자리에 있었고 언론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처럼 환원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유감이다. 정식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주식회사 미래신문(대표이사 김진수)은 (주)김포뉴스가 2002년 9월 12일자 자사 인터넷 김포뉴스(www.kimpo.com)와 동 회사가 발행하는 김포뉴스(오프라인) 2002년 9월 16일자 제54호 6면에 『‘환원운동 발목잡는 행위 그만두라’ - 검추위 성명서 발표』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 회사와 신청인 회사 대표이사의 명예가 걸린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없이 검추위의 성명서를 통해 신청인 회사와 신청인 회사 대표이사를 파렴치한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9월 12일자 김포뉴스(www.kimpo.com)와 9월 16일자 김포뉴스 제54호 6면에 『‘환원운동 발목잡는 행위 그만 두라’ - 검추위 성명서 발표(부제)』 제하의 기사에서 ‘신문대금, 기자월급, 시반환금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부당하다’, ‘미래신문은 범시민적 여망에서 비롯된 검단 환원 운동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그만 두라’, ‘이같은 행위는 환원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작태’, ‘한때 사무국장의 자리에 있었고 언론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처럼 환원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유감이다’ 등등의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미래신문사의 검추위

에 대한 신문대금, 기자인건비, 시반환금 청구는 부당한 사실이 아니며 또한 미래신문이 검추위 환원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사실은 미래신문사가 검추위에 청구한 신문대금, 기자인건비, 시반환금 청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된 것이며 또한 미래신문사 대표가 환원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보도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가 지난 9월 12일자 김포뉴스(www.kimpo.com)와 9월 16일자 김포뉴스 제54호 6면에 『환원운동 발목 잡는 행위 그만두라 - 검추위 성명서 발표(부제)』 제하의 기사에서 ‘신문대금, 기자월급, 시반환금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부당하다’, ‘미래신문은 범시민적 여망에서 비롯된 검단 환원운동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그만 두라’, ‘이같은 행위는 환원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작태’, ‘한때 사무국장의 자리에 있었고 언론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처럼 환원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유감이다’ 등등의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래신문은 “미래신문사의 검추위에 대한 신문대금, 기자인건비, 시반환금에 대하여는 현재 민사소송 계류 중이고,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가압류한 것이지 환원운동에 차질을 빚게 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김포뉴스 2002년 10월 14일 6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검단환원범시민추진위...)과 같은 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미래신문과 김추위에 대한 민사소송이 확정되면 재판결과에 따라 정정보도하기로 약정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김포뉴스 : 『김추위 성명보도에 대한 미래신문 반론』 제하의 기사 (2002년 10월 14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자들을 뒤쫓는 파파라치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227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우 종 대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2. 10. 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교통위반 잡는 파파라치들 쓰레기 무단투기도 찍는다』 제하의 기사 (2002년 9월 26일자 A25면)

내 용 : '파파라치는 쓰레기도 노린다'

유명인의 스캔들 추적이나 교통신호 위반 장면을 찍는 대신 쓰레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사람들을 뒤쫓아 수업을 올리는 파파라치

들도 꽤 많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 7월말까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10개 구·군이 나눠 준 포상금은 모두 3555건에 9705만원. (중략)

포상금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를 전문적으로 찾아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략)

또 우모 씨도 지난해 부평구에서만 1772만 5000원을 타는 등 2년 동안 2208만5000원을 타내 포상금 순위 2위에 들었다.

이들 두 사람 외에도 전문 신고자가 여럿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환경을 살려야 인간이 살 수 있다는 사명감에 1990년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왔다. 환경을 도외시하여서는 대기권이 악화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며 예기치 못하는 생명과 재산에 재앙을 당하는 현실을 우려하여 정부에서도 1995년부터 종량제 실시 계몽과 단속을 하여 왔지만 이로는 부족하여 2000년 3월 1일부터 포상제를 실시하였다.

피신청인의 '파파라치', "초상금을 노린다" 등의 기사내용은 정책에 위반이 되고 시민을 우롱하는 보도로서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조선일보 2002년 9월 26일자 25면 『교통위반 잡는 파파라치들 쓰레기 무단투기도 찍는다』 제목의 기사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사람 중에 부평구에 사는 우모 씨도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문적으로 찾아 신고하는 사람으로 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모 씨는 포상금이 시행되기 전인 1995년부터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관련 제보와 신고를 하여 왔으며 포상금을 받고자 신고한 경우와 다릅니다.

우모 씨는 전문신고꾼이 아닙니다.

반론보도신청인 우 종 대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조선일보는 2002년 9월 26일자 25면에서 '교통위반 잡는 파파라치들 쓰레기 무단 투기도 찍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평구에 사는 우모 씨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반론보도청구인인 우종대 씨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부평구에 사는 우모 씨는 포상금이 시행되기 전인 1995년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관련 제보와 신고를 해온 사람이고 포상금을 받고자 신고한 경우와는 다르다. 우모 씨는 전문신고꾼이 아니다.

반론보도청구인 우 종 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Metro 인천·부천면(A25면)에 10월 9일까지 위 반론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 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98년 이후 인천 10개 구·군서 포상금만 9705만원...)과 같게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10월 8일자 A2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현직 파출소장인 매형의 공장설립을 돕기 위해 이를 반대라는 주민들을 위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2경기중재3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종 완

피신청인 : 중부일보

접 수 일 : 2002. 10. 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중부일보 : 『경관처남이 주민 위협』 제하의 기사 (2002년 10월 5일자 19면)

내 용 : 현직 파출소장이 공장설립에 따른 사업승인을 신청했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자 처남을 시켜 '마을주민들을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파출소장의 처남은 진정서를 낸 주민들을 상대로 "매형이 곧 파출소장으로 부임한다"며 주민들을 협박해 온 가운데 최근 경찰서 인사에서 처남의 주장대로 파출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4일 화성시 봉담읍 주민들에 따르면 봉담파출소 K소장은 지난해 10월께 자신 소유의 봉담읍 덕리 152-4에 공장 신축을 위한 사업승인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주민들은 주거지역에 대한 생활권 침해 및 도로 협소 등을 내세워 20여 명이 진정서를 화성시와 읍사무소에 제출했고 K소장은 접수한 사업신청서를 자진 취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시 M파출소장이었던 K소장 처남 K씨는 진정서를 낸 주민들을 상

대로 “매형이 파출소장이다”, “매형이 곧 봉담파출소장으로 부임한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위협해 왔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K씨는 봉담읍 덕리 산1-12번지 자신 소유 임야에 대해 불법으로 1천여 평을 훼손하고도 “매형이 파출소장이라 고발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K씨 등 마을 주민들은 “당시 K씨가 파출소장인 매형의 존재를 부각시키며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 온 것은 물론 매형이 봉담파출소장으로 부임하면 불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 최근 문제의 소장이 부임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2002년 10월 5일자 중부일보에 『경관 처남이 주민위협』 제하의 기사 내용 중 경관 처남으로 지칭된 사람이다.

피신청인은 중부일보 2002년 10월 5일자 19면 『경관 처남이 주민위협』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 제 목 : “경관 처남 주민위협” 제보, 허위로 밝혀져
- 소재목 : “매형이 봉담소장 부임 땀 불이익 압력”도 허위
- 내 용 : 본지가 지난 10월 5일자 19면에 대제목 『경관 처남이 주민 위협』 소재목 『파출소장이 공장설립하다 취하』, 『매형이 봉담

소장 부임땀 불이익 압력』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현직 K파출소장이 지난해 10월께 자신 소유의 봉담읍 덕리 152의 4에 공장설립에 따른 사업승인을 신청했다가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자 처남을 시켜 마을주민들을 협박했다. 특히 이 파출소장 처남은 진정서를 낸 주민들에게 “매형이 파출소장이다” “매형이 곧 봉담파출소장으로 부임한다”며 주민들을 협박해 온 가운데 최근 처남의 주장대로 파출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처남 K씨는 덕리 1-12번지 자신소유 임야를 1000여 평 훼손하고도 “매형이 파출소장이라 고발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처남 K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파출소장은 K씨의 매형이 아니고 매제일 뿐만 아니라, 파출소장은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제조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고, K씨는 주민들을 위협한 사실도 없고, 매형이 봉담소장 부임땀 불이익을 준다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더욱이 봉담소장은 덕리 1-2번지에서 10년여 간 살고 있어 그가 파출소장이라는 것은 덕리 주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어 자기 마을 주민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여지도 없고 봉담소장은 최근이 아닌 2002. 7. 2.에 정기인사 이동시에 타 파출소를 1차 지원했다가 2차 지원 파출소인 봉담파출소로 발령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임야를 훼손하고도 매형이 파출소장이라고 고발같은 것은 없을 것이란 것도 K씨는 그 임야에 사슴목장, 우사 등을 건축한 사실 등으로 2000년도에 이미 고발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파출소장 때문에 고발을 못한다고 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등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가 지난 10월 5일자 19면 『경관 처남이 주민위협』 제하의 기사에서 현직 파출소장이 공장설립에 따른 사업승인을 신청했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자 처남을 시켜 마을 주민들을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처남 K씨는 주민들을 위협한 사실도 없고 매제인 파출소장이 부임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일보 2002년 10월 23일 19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파출소장이 공장설립 추진하다 취하...)과 같은 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일보 : 『'경관 처남 주민위협'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02년 10월 23일자 1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주)쌍용의 금융부정사건과 관련해 외부감사인 신청인 회계법인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233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서 태 식)

피신청인 : The Korea Times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2. 10.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The Korea Times : 『Samil Accounting Blamed for Lax Auditing at Ssangyong』 제하의 기사 (2002년 9월 11일자 8면)

내 용 : Financial experts are criticizing Samil Accounting Corp., local member firm of PriceWaterhouseCoopers and auditor of Ssangyong Corporation, for failing to discover alleged instances of fraud at Ssangyong.

A top-ranking official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yesterday condemned Samil's auditing of Ssangyong. The official said investors rely on auditors to ensure that financial statements reflect reality.

Ssangyong's stock price dropped by the daily limit of 15percent to 2,975 won on Monday after news that its employees illegally received loans from six commercial banks.

Said the official: "If examiners' investigation uncovers that employees at Samil were accountable for the financial scam, the FSS will certainly penalize those accountants for their misbehavior."

A commercial bank official also said that a company's audit partner is supposed to check transaction records between the company and creditor banks.

For the past three years, a growing number

of small investors say domestic and foreign accounting groups here have not been doing enough to provide reliable accounting data to investors.

The FSS official said that many are concerned that there is further instances of inappropriate accounting in the market. "Investors seem to be waiting eagerly for the lunch of an accounting oversight board pushed by the FSS's task force."

Meanwhile, the FSS announced yesterday that Korea Development Bank(KDB) had discounted Ssangyong's trade bills, totaling 25 billion won, since 1998.

"It is unreasonable that a state-run discount of trade bills of a general trading company, because KDB is allowed to offer that service only to manufacturing firms," according to the FFS.

So the FSS has stepped up to determine if the state-run KDB as well as six banks—Chohung, Woori, Korea First, Daegu, Kookmin and Industrial Bank of Korea—supported Ssangyong illegally.

Interestingly, Lee Keun-Young, chairma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 was governor of KDB during that period.

Ssangyong said it plans to sell assets valued at 60 billion won to raise funds to compensate for the losses that the banks incurred since 1999. The corporation also aims to negotiate with other domestic banks to pay for the remaining losses.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피신청인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신청인 회사는 (주)쌍용에 대해 2001 회계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금융감독원의 지정에 의거 수입하였다. (주)쌍용에서 발생한 금융 부정사건은 허위로 작성된 수출 관련 서류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이는 회사의 통상적인 회계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외감법에 의한 통상적인 회계감사는 회사의 정상적인 회계시스템 내에서 발생하고 처리되는 거래들을 그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청인 회사는 2001년도 (주)쌍용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우 철저하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범위 밖에서 저질러진 상기 부정 사건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본 부정 사건이 1989년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자행되어 오면서도 회사의 경영진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2000년도 이전까지 10여 년간 계속해서 (주)쌍용의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삼정회계법인(구 산동회계법인)도 동 부정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아도 본 부정 사건을 발견하지 못한데 대해 신청인 회사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회계감사의 이러한 속성을 제대로 모르고 쓴 기사이다.

회계감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몇 해전부터 (주)쌍용 내부자도 모르게 교묘히 위조되어 결국 내부 제보자에 의해 밖으로 알려질 만큼 숨겨진 서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회계감사준칙'에서도 "외부감사인은 부정과 오류의 방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책임을 질 수도 없다."라고 외부감사의 한계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이 상기 기사에는 전혀 반영되

어 있지 않다.

또한 신청인은 (주)쌍용의 금융부정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어떠한 조사도 받은 적이 없고, 동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회사가 감사를 잘못하였다는 어떠한 질책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1989년부터 (주)쌍용 부산지점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하고 있는 바, 2000회계연도까지 감사한 타 회계법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오직 삼일만 언급한 것은 공평한 보도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2002년 9월 8일 보도자료에도 (주)쌍용의 부산지점이 거래은행과 공모하여 사건이 발생했고, 위법·부당행위관련 직원의 문책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감사인의 잘못을 언급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

특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정비리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회사의 실책이나 문제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을 빌어 근거 없는 사실을 토대로 당사의 입장이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은 채 취재하고 기사화한 행위는 사실에 입각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사에서 담당기자가 금융감독원의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당사가 상기 금융부정 사건에 연관된 양 예단을 하고, 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술한 내용은 당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사실을 아무 것도 적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근거 없는 보도이다.

더욱이 동 건과 관련하여 당시 어떠한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동 사건과 당사를 연계하여 보도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주)쌍용의 부산지점에서 1989년부터 6개나 되는 거래은행들과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가리켜 2001회계연도에 처음으로 (주)쌍용의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된 삼일만을 연관시켜, 마치 당사자의 부실감사로 인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식의 무리한 기사 전개를 통해 당사의 명예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청인 회사는 기사로 인해 국제적으로 심각한 명예손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손해도 막대한 상황이다. 이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 제 목 : Samil Accounting not accountable for fraud at Ssangyong

· 내 용 : In the September 11 issue of the Korea Times, in the article "Samil Accounting blamed for lax auditing at Ssangyong", we erroneously made some inaccuracies as to the statement reading that a top-ranking official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riticized Samil Accounting Crop., local member firm of PricewaterhouseCoopers and Ssangyong's auditor, for failing to discover the alleged instances of fraud at Ssangyong in the due course of auditing, and the FSS might penalize Samil against the failure.

However, the contents of this report were incorrectly characterized through an insufficient verification of some facts. In fact, a fraudulent activity by an employee of Busan office of Ssangyong had been initiated in 1989, while it was found Samil's performing auditing was limited to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fiscal year 2001. The employee's fraudulent activity

has been ingeniously conspired and committed so as that even the company's insider failed to identify it. It is held that this kind of fraud makes it very hard for auditors to detect during the course of their performance due to inherent limitation of an external audit. Such limitation is clearly addressed in the Working Rules of Auditing Standards of the Korea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hich have been formulated as per the Auditing Standard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The Standards state that an independent auditor does not, and shall not take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fraud and errors.

Within this report the FSS press release on the Ssangyong scandal was incorrectly identified. In actuality, the FSS press release did not mention about Samil at all. Accordingly, the report that a high-ranking FSS official criticized Samil for auditing of Ssangyong was an incorrect statement. According to FSS officials, FSS has never undertaken any official measure to investigate Samil, nor made any disciplinary comment concerning Samil's auditing of Ssangyong.

As indicated above, the article "Samil Accounting blamed for lax auditing at Ssangyong" in the september 11 issue of the Korea Times was an incorrect statement and it should have been verified more accurately by the editors. We are very sorry about this incident and grateful to Samil for pointing it out to us.

합의사항

- 제 목 : Counterargument
- 내 용 : The recent Korea Times Article (11, September, 2002) under the title of "Samil Accounting blamed for lax auditing at Ssangyong" reported that Samil Accounting Corp. was criticized by a top-ranking official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for falling to discovery the alleged instances of fraud at Ssangyong in the due course of auditing, and the FSS might penalize Samil against the failure.

However, Samil Accounting Corp. said "the contents of this report were incorrectly characterized through an insufficient verification of some facts. In fact, the FSS did not mention about Samil at all. According to FSS official, FSS has never undertaken any official measure to investigate Samil, nor made any disciplinary comment concerning Samil's auditing of Ssangyong."

And they also said "a fraudulent activity by an employee of Busan office of Ssangyong makes it very hard for auditors to detect during the course of their performance due to inherent limitation of an external audit. So we were not accountable of fraud at Ssangyong"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The Korea Times' Opinion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2002년 10월 31일 이내에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쌍방의 합의를 전제로 보도문안을 수정할 수 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The Korea Times : 『Samil Accounting Denies

KT Report』 제하의 기사
(2002년 10월 26일자 6면)

내 용 : The recent Korea Times article titled "Samil Accounting Blamed for Lax Auditing at Ssangyong" (Sept. 11, 2002), reported that Samil Accounting Corp. (a Korean member firm of PricewaterhouseCoopers) was criticized by a top-ranking official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for failing to discover the alleged instances of fraud at Ssangyong during the due course of auditing. The article also stated that the FSS might penalize Samil for the supposed failure.

However, the stated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incorrect due to an insufficient verification of the report.

In fact, the FSS did not mention Samil at all in their report. According to FSS officials, the FSS has not undertaken any official measure to investigate Samil nor made any disciplinary comment concerning Samil's auditing of Ssangyong.

The FSS also stated that "a fraudulent activity by an employee at the Pusan office of Ssangyong is very hard for auditors to detect during the course of their performance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s of an external audit."

So, Samil is not accountable for the fraud conducted at Ssangyong.

Kim Young-sik,

partner of Samil Accounting Corp. □

신청인 회사가 제작하여 종로3가역에 설치한 시각장애이용 음성안내기의 품질과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23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우인편의시설
(대표이사 김 영 주)

피신청인 : 한 겨 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2. 10. 1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시각 장애인 음성 안내기 헛돈다』 제
하의 기사 (2002년 10월 7일자 15면)

내 용 : 4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종로3가
역 승강장. 계단을 내려가 시각장애인 음성안
내기의 리모컨을 눌렀다.

"3호선 종로3가역입니다. 유도블록을 따라
10여m를 가면 환승통로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
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와야 정상이지만, 아무
리 리모컨을 눌러도 안내기는 묵묵부답이었다.

올해 4월과 9월 서울과 부산 지하철에 각각
도입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기가 도로의 횡단
보도용 리모컨과 호환이 안 되거나 고장이 잦
아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음성안내기는 지하철역 구내 천장 여러 곳
에 달려있다. 시각장애인들이 리모컨을 누르
면 안내기가 현 위치를 알려주게끔 돼 있다.
대당 약 45만원인 음성안내기는 서울의 경우
잠실·고속터미널역 등 7개역에 모두 146개가
설치돼 있다. 이런 음성안내기는 2000년초부

터 도로 횡단보도에 먼저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횡단보도와 지하철역에 각각 설치된 음성안내기가 호환이 안 돼 시각장애인들이 각각의 리모컨을 별도로 갖고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종로3가역의 경우, 역에 설치된 8개의 음성안내기 가운데 4개만 횡단보도용 리모컨의 신호를 인식했다. 그러나 이들 4개 가운데 3개는 리모컨이 향한 곳과 반대 방향의 신호기가 작동하거나 양쪽에서 동시에 울렸고, 정상적으로 신호를 인식한 안내기는 단 1개뿐이었다.

서울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단, 인천지하철공사 등에 확인한 결과, 서울뿐 아니라 인천지하철 22개역 132곳, 부산 지하철 18개역 97곳에 설치된 지하철 음성안내기도 횡단보도용과 호환되지 않고 있다. 또 같은 지하철용 리모컨도 다른 도시와의 호환이 안 되고 있다. 이밖에도 지하철 안내기는 노선과 출입구 위치만 알려줄 뿐, 상하행 방향을 알려주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은 안내방송을 들은 뒤에도 주변 사람에게 지하철 방향에 대해 다시 물어 봐야 하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서울지하철공사쪽은 지하철 음성안내기와 관련해 “반응이 좋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장애인인권 활동가 박종태(45) 씨는 “안내기 호환은 주파수 조정 등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가능한데 당국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지하철 5~8호선에는 4개역에 63개의 음성신호기가 올해 초 시범설치됐다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철거됐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주)우인편의시설로서 한

겨레신문 2002년 10월 7일자 15면 『시각장애인 음성안내기 헛돈다』 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주)우인편의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업체로서 오랜 경험과 성실한 기업경영으로 업계에 탄탄한 신뢰를 쌓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사는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신청인은 종로3가역에 설치된 음성안내기 제조회사이며 또한 시범설치 업체이다.

피신청인은 보도에서 종로3가역에 시범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기를 예로 들면서 성능과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피신청인은 지하철공사, 종로3가역, 시각장애인연합회, 신청인 등 관련자에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없이 기사를 보도하였다.

더욱이 보도에서 신청인이 그 모든 비용을 들여 종로3가역에 설치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기는 동종의 제품 중 최첨단 기술제품으로 그동안의 동종제품이 갖고 있던 한계를 보완한 우수 신제품이다.

또한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고 사용자의 요구를 조사 반영하는 시범설치의 특성을 무시하여 제품을 사용하는 자가 범할 수 있는 잘못을 제품 자체의 문제로 바꿔 보도하였으며, 하나의 기계적 고장을 크게 부각시켜 전체 제품의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업계 최첨단제품인 당사의 음성안내기에 작동상의 심대한 오류나 품질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제품의 판매가 불가능하며, 제품성능에 대한 의혹제기와 기업 이미지 실추로, 서울지하철공사의 제품 철거요청, 별도의 제품성능 검증요구 등 기업이익에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10월 7일자 15면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기 헛돈다』제하의 기사에서 종로3가역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기가 품질 및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비한 현실을 지적하는 의도였을 뿐으로, 사실 확인결과 위 보도에서 예시한 종로3가역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기는 품질 및 호환성에 문제가 없고, 상하행선 안내 및 양방향 안내가 되고 있으며 횡단보도용(음향신호기) 리모콘과도 호환되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10월 7일자 15면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기 헛돈다』 제하의 기사에서 종로3가역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기가 품질 및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보도에 대하여 반론보도신청인이 종로3가역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기는 품질 및 호환성에 문제가 없고 상하행선 안내 및 양방향 안내가 되고 있으며 횡단보도용 리모콘과도 호환이 된다고 밝혀 왔으므로 이를 독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반론보도신청인 : (주)우인편의시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002년 10월 26일자 여론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 활자크기는 중재대상의 부제목(리모컨 놀러도 먹통....)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 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10월 26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이회창후보를 만나 한나라당 입당을 타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청보도)

사건번호 : 2002/서울중재244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이 태 복

피신청인 : 노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2. 10. 2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노동일보 : (1)『운동권 정치인 '철새'로 전략』 제하의 기사 (2002년 10월 18일자 1면)

내 용 : (전략) 이태복 한나라 접촉

‘정치 철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재야 시민운동 등 소위 민주화투쟁을 주도했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도 권력지향적 ‘철새’의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국민경선을 통해 뽑은 대통령 후보를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도외시하는가 하면, 스스로 비난해오던 정치세력으로 당적을 옮기

는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중략)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복지노동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태복 씨는 한나라당 입당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7일 한나라당이 서울 G호텔에서 주관한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비공개 오찬간담회 직전, 이회창 후보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초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똑같이 방중, 이후보를 비밀리에 만나 한나라당 입당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8·8 재보선 후보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먼저 만남을 요청, 지난 6월 18일 아침 서울 모호텔에서 노후보를 극비리에 만났다(노동일보 7월 14일자 4면 참조). 이씨는 이날 만남에서 ‘8·8 재보선때 서울 모 지역에 출마할 수 있도록 공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노후보가 거절했다.

한편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이 같은 철세 행보와 관련,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오가며 철세 행보를 벌여온 이태복 씨의 행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라며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2) 『이후보 이태복 전 장관 만나』 제하의 기사 (2002년 10월 18일자 4면)

물밑영입설 끊이지 않는 듯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7일 낮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났다.

이 전장관은 복지부장관에서 경질되면서 한나라당 입당을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이후보의 한 측근은 “민주당 의원들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장관도 못 올

것 없지 않느냐”며 “오히려 우리 당에 오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영입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시사했다.

(3) 『제도권 철세, 운동권 철세』 제하의 기사 (2002년 10월 18일자 2면)

자연 조류계에 있어 실제 철새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철새는 신의와 지조도 없는 오로지 양지만 쫓는 인간의 부류로 분리된다. 최근 한나라당으로 자진 이동한 일부 정치인들은 제도권 생리가 그러하니 욕을 하기도 입이 아까울 정도다. 그러나 한때 운동권에 몸을 담아 바로 그 제도권 정치의 썩은 모습에 질타를 가했던 인사들이 그들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운동권 전력을 인정받은 일부 인사들은 제도권에 발을 담을 때 운동의 순수를 지키기보다 권력을 지향한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들은 교묘한 대의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행보를 정당화하고 운동권을 싸잡아 욕 먹인다. 그런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당의 정책과 색깔,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정치적 행보를 구가하고 있다. 운동하고 고리를 끊은 ‘이미 버린몸’을 체념하고 있는 까닭일게다. 운동권 철세가 된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하면 장기표, 김근태, 김민석, 이태복, 김문수, 이재오 등등 많을 것이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전 보건복지부장관 이태복으로서 노동일보 10월 18일자 1면 『운동권 정치인 ‘철세’로 전략』, 4면 『이후보, 이태복 전 장관 만나』 및 사설 『제도권 철세, 운동권 철세』 등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1면 『운동권 정치인 ‘철새’로 전락』의 보도에서 소제목 “이태복 한나라당 접촉” 부분과 기사 내용 중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복지노동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태복 씨는 한나라당 입당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7일 한나라당이 서울 G호텔에서 주관한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비공개 오찬간담회 직전, 이회창 후보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초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똑같이 방중. 이 후보를 비밀리에 만나 한나라당 입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8·8 재보선 후보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먼저 만남을 요청. 지난 6월 18일 아침 서울 모호텔에서 노후보를 극비리에 만났다(노동일보 7월 14일자 4면 참조). 이씨는 이날 만남에서 ‘8·8 재보선 때 서울 모 지역에 출마할 수 있도록 공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노후보가 거절했다”고 보도했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같은 날 4면의 『이후보, 이태복 전 장관 만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물밑 영입설 끊이지 않는 듯”이라는 소제목과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7일 낮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났다. 이 전 장관은 복지부장관에서 경질되면서 한나라당 입당을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신청인은 한나라당 입당을 타진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이 G호텔에서 이회창 후보를 의도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17일 정오께 대한노인회 간부와 오찬 약속한 홀리데이인서울 호텔 중식당에 들어갔는데, 이 후보가 마침 그때 지나가서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었을 뿐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시민단체와 오찬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실도 신청인은 한나라당 출입기자로부터 그때 들어 알았다.

그런데도 피신청인은 기사에서 신청인이 한나라당 입당을 위해 이회창 후보를 만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중국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중국 방문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만나 입당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으며, 8·8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천요청을 한 사실은 없다.

피신청인은 또 사실에서 “운동권 철새가 된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 하면 장기표, 김근태, 김민석, 이태복, 이재오 등등 많을 것이다.”라고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실에서 언급한 정치인처럼 특정 정당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으며, 또 특정 정당의 가입을 위해 활동한 사실도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특정 정당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철새 정치인으로 표현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같은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해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는 10월 21일자 1면 『김민석의 탈당과 김근태의 ‘침묵’, 갈갈이 찢겨진 이름 ‘재야 정치인’』 제하의 답 기사에서 “설상가상이다. 노동전문 일간지인 <노동일보>는 지난 18일자 기사를 통해, 현정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직을 지낸 한 재야출신 인사가 한나라당 입당을 타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재야출신 정치인들의 도덕적 파산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는 기사로 인용되는 등 신청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기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노동일보는 지난 10월 18일자 1면, 4면 및 사실에서 『운동권 정치인 ‘철새’로 전락』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만나 입당을 타진하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만나 공천을 타진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한 결과 이태복 씨는 한나라당 입당을 타진한 사실과 중국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민주당 공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태복 씨는 특정 정당에 입당했거나, 옮겨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철새 정치인’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본지의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기사로 인해 이태복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이태복 씨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2002년 10월 18일자 1면과 4면 및 사실에서 『운동권 정치인 ‘철새’로 전락』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만나 입당을 타진하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만나 공천을 타진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한 결과 이태복 전 장관은 한나라당 입당을 타진하거나 중국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민주당 공천을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노동일보 4면에 10월 31일까지 위 정정보도문을 상자기사로 우측상단에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 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김민석, 정몽준 신당 ‘국민통합21’ 동참...)과 같게 하고 본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노동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2년 10월 31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이 사건 내용은 원고가 세계 최초로 '인터랙티브'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일 뿐 원고가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인터랙티브' 영화감독이 아니라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2. 8. 14.자 판결(2001나65160)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2002년 8월 14일 인터랙티브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모 씨와 네오타이밍 주식회사가 씨네21 편집장을 포함한 3명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조모 씨의 청구에 대해 "이 사건 칼럼은 원고 조모 씨가 세계 최초로 '인터랙티브'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일 뿐, 원고 조모 씨가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인터랙티브' 영화감독이 아니라거나, 한국통신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 조모 씨를 모델로 기용한 것이라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대하는 독자들 또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받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므

로, 이 사건 칼럼이 원고 조모 씨의 주장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 네오타이밍 주식회사의 청구에 대해 "이 사건 칼럼이 원고 회사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칼럼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상영되는 영화가 상영 중간에 화면이 자주 끊기고, 그 화질이 조악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영화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현재의 인터넷 영화 전체의 수준에 대한 평가로서 인터넷 영화 일반에 대한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원고 회사를 직접 거론하거나 그 내용이 원고 회사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 원고 회사의 신용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사는 영화전문지 씨네21 257호(2000. 6. 20.~2000. 6. 27.)에 『인터넷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뭐지?』라는 제하로 "모 광고에

나오는 모델이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또한 인터랙티브 영화는 상업성이 없으며, 인터넷으로 영화를 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1나6516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1. 조 승 희
2. 네오타이밍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승 희
원고들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1-14
삼성당빌딩 7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진 흥

피고, 피항소인 : 1. 김 봉 석
2. 이 우 일
3. 안 정 숙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진 옥

제1심 판 결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9. 28. 선고 2002가합7754 판결

변 론 종 결 : 2002. 7. 11.

판 결 선 고 : 2002. 8. 14.

주 문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비용으로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씨네21”잡지에 원고들의 이 사건 문제기사에 대한 별지 (3)기재 반론을 게재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

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반론 보도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비용으로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씨네21”잡지에 피고가 패소한 이 사건 민사손해배상판결문을 게재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비용으로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씨네21”잡지에 피고가 패소한 이 사건 민사손해배상판결문을 게재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의 3, 을 1호증의 1 내지 을 3호증, 을 4호증의 4~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7호증의 2~4, 갑 8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조승희는 영화감독으로서 인터랙

티브(interactive) 영화인 '영호프의 첫째날' (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을 제작하였고, 이 사건 영화는 1999. 6. 26. 인터넷 사이트 (주소 : www.neotiming.com)를 통하여 처음으로 상영되었다.

(2) 원고 네오타이밍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영화 등 동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수입, 복사배급, 판매 및 대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1999. 12.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3) 피고 안정숙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영화전문 주간지인 '씨네21'의 편집장이고, 피고 김봉석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의 문화부기자로서 '씨네21'의 편집장이고, 피고 김봉석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의 문화부기자로서 '씨네21' 257호(2002. 6. 20. ~ 2002. 6. 27)에 "인터넷영화를 보는 이유가 뭐지?"라는 별지(1) 칼럼(이하 '이 사건 칼럼'이라 한다)을 썼으며, 피고 이우일은 위 잡지 같은 호에 별지(2) 만화(이하 '이 사건 만화'라고 한다)를 그렸다.

나. 인터랙티브 영화의 개념 및 그 실험과정

(1) '인터랙티브 영화'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나, 영화의 이야기가 관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관객은 이를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기존의 영화와는 달리, 영화 속의 주인공이 일정한 결단을 내려야 할 몇 가지 상황에서 관객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영화를 말한다.

(2) 한편, 원고 조승희가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기 이전인 1993.경 미국의 인터필름이라는 영화회사가 '인터랙티브' 영화를 세계 최초로 제작하여 42개 극장에서 상영하였고, 원고 조승희는 인터랙티브 영화인 이 사건 영화를

세계 최초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상영하였는바,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인터랙티브 영화'라는 표현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상영된 인터랙티브 영화를 의미한다.

다. 원고 조승희와 관련된 광고 및 다른 언론의 보도내용

(1) 한국통신은 원고 조승희를 모델로 한 코넷(KORNET : 한국통신에서 운영하는 고속통신망 서비스) 광고를 제작하여 2000. 4. 1. 부터 2000. 6. 20.까지 약 2,600회 정도 공중파 TV 및 지역방송 TV를 통하여 방송하였는바, 위 광고에서는 "코넷에 가입하라", "인터넷 카리스마 코넷"이라는 광고문구와 함께 원고 조승희를 인터넷 아이디어가 "육미리(Yukmiri, 6mm)"이고,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인터넷 영화감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2) 원고 조승희가 이 사건 영화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상영하기 시작한 이후인 1999. 8.경부터 2000. 5.경까지 언론을 통하여 수 차례에 걸쳐 원고 조승희와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일부 기사는 원고 조승희가 인터랙티브 영화를 세계 최초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상영하였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①2002. 4. 4.자 경향신문은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인터랙티브 영화인 '영호프의 하루'를 제작해 30만명의 네티즌을 끌어 모았던 인터넷 영화감독"으로, ②1999. 11.호 비디오 무비(VIDEO MOVIE)는 "인터넷 인터랙티브 영화의 창시자"로, ③ 2000. 4. 27.자 매일경제신문은 "세계 처음으로 인터랙티브 영화 '영호프의 하루'를 제작해 무려 30만명의 네티즌이 접속하는 기록을 세운 주역"으로, ④1999. 10. 15.자 중앙일보는 "인터랙티브 무비, 풀이하자면 '쌍방향 영화'가 될 것이다. ...중략... 이

신개념(인터랙티브 영화)의 ‘영화혁명’이 한 여성의 힘으로 막 이 땅에서 개화하기 시작했다. 영상벤처업체 ‘네오무비’의 영화제작자 조영호 씨가 그 주인공. 조씨는 지난 6월 영화감독 지망생이던 자신의 꿈을 ‘영호프의 하루’라는 16mm 디지털 영화에 담아 인터넷 상에 띄워 개봉 15일만에 30만명의 네티즌이 접속케 하는 등 인터랙티브 영화의 개척자로서 이미 자리를 굳혔다. 이 같은 용어를 처음 만들었을 뿐더러...”라는 내용으로 원고 조승희를 소개하고 인터뷰내용을 실은 기사를 게재하는 등 원고 조승희가 세계 최초로 인터랙티브 영화를 제작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이 사건 칼럼 및 만화의 내용

(1) ‘씨네21’ 제257호(2000. 6. 20. ~ 2000. 6. 27) 제102면의 오른쪽 절반 부분에 위치한 ‘썬트’이란 칼럼란에 게재된 이 사건 칼럼은, 모 광고에 나오는 모델이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또한 인터랙티브 영화는 상업성이 없으며, 인터넷으로 영화를 볼 이유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이 사건 칼럼과 같은 란에 게재된, 총 다섯 컷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만화는, 한 사람이 누워서 TV를 보다가 TV 광고에서 머리가 긴 여자 모델이 나오고 그 광고에서 “X넷에 가입하라!”(제2컷), “세계 최초 인터랙티브 영화감독 X넷에 가입했다”(제3컷), “너크기 6mm”(제4컷), “인터넷 앞가르마 X넷”(제5컷)이라는 광고 문구가 나오자 하품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마. 이 사건 칼럼 및 만화는 편집회의를 거친 후 게재되었다.

2. 원고 조승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칼럼 부분

(1) 기초사실

이 사건 칼럼이 “요즘 모 광고에서,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영화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오는 모델이 있다. 그 광고를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웃기는군.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자꾸 보다보니 짜증이 났다. 광고회사에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나 알고 모델을 기용한 것일까? 자칭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해자의 특정

이 사건 칼럼이 원고 조승희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참조)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봉석이 이 사건 칼럼에서 비록 원고 조승희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요즘 모 광고에서,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영화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오는 모델이 있다.”라고만 표현하였으나, 당시 원고 조승희를 모델로 한 코넷 광고가 TV 등을 통하여 방송되고 있었고, 위 광고가 원고 조승희를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인터넷 영화감독”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칼럼을 읽어본 사람 중 코넷 광고를 보았던 적어도 원고

조승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칼럼에서 말하는 '모델'이 원고 조승희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칼럼은 원고 조승희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명예훼손 부분

(가) 원고 조승희는, 원고 조승희가 세계 최초로 '인터넷 인터랙티브' 영화를 만들었음에도, 피고 안정숙, 김봉석이 이 사건 칼럼을 통하여 ①원고 조승희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인터랙티브' 영화감독이 아니고, ② 한국통신도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 조승희를 모델로 기용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조승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2002.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참조)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칼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칼럼은 원고 조승희가 세계 최초로 '인터넷 인터랙티브'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일 뿐, ①원고 조승희가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인터랙티브' 영화감독이 아니라거나, ②한국통신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 조승희를 모델로 기용한 것이라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대하는 독자들 또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받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칼럼이 원고 조승희의 주

장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조승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모욕 부분

(가) 원고 조승희는, 피고 안정숙, 김봉석이 이 사건 칼럼을 통하여 원고 조승희를 모델로 한 코넬 광고에 대하여 "그 광고를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웃기는군.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자꾸 보다보니 짜증이 났다."라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조승희를 모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웃기는군', '짜증이 났다'라는 표현은, 원고 조승희가 광고에서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인터랙티브 영화감독'으로 잘못 소개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와 같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광고에 대하여 피고 김봉석의 주관적인 평가를 표현한 의견에 해당하는 바, 위 의견 표현이 다소 직설적이고 감정적이기는 하나 주로 잘못된 광고내용을 접함으로써 받은 느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내용이나 정보에 비추어 이러한 정도의 표현을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또한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요하는 일반 정치, 경제, 사회면에 보도내용과는 달리 잡지면에 실린 문화칼럼의 도입부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조승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만화 부분

(1) 기초사실

이 사건 만화의 제4컷 그림이, TV 광고에 머리가 긴 여자 모델이 나오고 그 광고에서 "뇌크기 6mm"라는 광고 문구가 나오는 장면을 담고 있고, 제5컷 그림이, 같은 TV 광고에서

“인터넷 앞가르마 X넷”라는 광고 문구가 나오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원고 조승희를 모델로 한 코넷 광고가 “인터넷 카리스마 코넷”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해자의 특징

이 사건 만화가 원고 조승희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우일이 이 사건 만화에서 비록 원고 조승희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머리가 긴 여자가 TV 광고 모델로 나오는 장면과 “세계 최초 인터랙티브 영화감독”, “뇌크기 6mm”라는 광고 문구만으로 광고 모델을 표현하고 있으나, 당시 원고 조승희를 모델로 한 코넷 광고가 TV 등을 통하여 방영되고 있었고, 위 광고가 원고 조승희를 인터넷 아이다가 “육미리(Yukmiri, 6mm)”이고,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인터넷 영화감독”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만화를 본 사람 중 코넷 광고를 보았거나 적어도 원고 조승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만화에 등장하는 여자 모델이 원고 조승희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만화는 원고 조승희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명예훼손 부분

(가) 원고 조승희는, 피고 안정숙, 이우일이 이 사건 만화를 통하여 원고 조승희의 인터넷 “아이다 육미리(Yukmiri, 6mm)”를 “뇌크기 6mm”라고 표현하여 원고 조승희의 지능이 낮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조승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사실을 직접 표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한 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희화적(戲畵的)으로 묘사하거나 풍자(諷刺)하는 만평(漫評) 또는 풍자만화(Cartoon)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外皮)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隱喩的)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事象)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만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뇌크기 6mm”라는 표현은 그 자체가 표현의 목적 또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원고 조승희가 광고에서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영화감독으로 잘못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원고 조승희의 뇌크기가 6mm에 불과하다거나 지능이 낮다라는 사

.....

실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하는 독자들 또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받았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만화가 원고 조승희의 지능이 낮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조승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모욕 부분

(가) 원고 조승희는, 피고 안정숙, 이우일이 이 사건 만화를 통하여 여성인 원고 조승희를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단어인 “앞가르마”라고 칭하여 원고 조승희를 모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터넷 앞가르마 X넷”이라는 표현은 “인터넷 카리스마 코넷”이라는 광고문구를 희화한 표현으로서, 우리말의 보통 표현방법에 따라 해석해 볼 때, “인터넷 앞가르마”와 “인터넷 카리스마”는 각 “X넷”과 “코넷”을 칭한 것이라고 해석될 뿐이므로, “인터넷 앞가르마 X넷”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 조승희를 “앞가르마”라고 칭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가르마”라 함은 “앞머리 한가운데로 반듯하게 탄 가르마”라는 뜻의 단어일 뿐, 여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속어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조승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회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조승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

(1) 원고 회사는, 피고 안정숙, 김봉석이 이 사건 칼럼을 통하여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영화

의 감독인 원고 조승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어떤 단체에 관계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그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 안정숙, 김봉석이 이 사건 칼럼을 통하여 원고 조승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인터넷 영화에 대한 부분

(1) 원고 회사는, 피고 안정숙, 김봉석이 이 사건 칼럼을 통하여 인터넷 인터랙티브영화 전체를 비하하며 인터넷으로 영화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원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칼럼이 “인터넷으로 상영하면 다 ‘인터넷 영화’다? 그런 멍청한 소리가 또 어디 있을까...톡톡 끊기는 영상에 조악한 화질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영화를 봐야 할 이유가 뭐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먼저, 이 사건 칼럼이 원고 회사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칼럼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상영되는 영화가 상영 중간에 화면이 자주 끊기고, 그 화질이 조악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영화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현재의 인터넷 영화 전체의 수준에 대한 평가로서 인터넷 영화 일반에 대한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원고 회사를 직접 거론하거나 그 내용이 원고 회사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 원고 회사의 신용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

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

재 판 장 판 사 이 종 찬
판 사 박 희 승
판 사 정 효 채



판결 2

언론사가 공범위한 상호비판은 올바른 여론 형성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한 이를 비판하여 견제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비판은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0. 11.자 판결 (2001가합14741)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2002년 10월 11일 한국방송공사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한국방송공사는 문화방송 대체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비평'이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사례 등을 다루면서 그 한 예로서 KBS 보도내용을 언급하자 KBS가 이를 문제삼아 MBC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KBS-2TV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제작진은 모조 명품(짜통)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문제된 보도를 기획, 모조 명

품을 애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짜통동호회를 섭외, 이색 동호회를 소개하고자 한다며 인터뷰를 하였다. 그런데 이 인터뷰 내용은 모조 명품 불법제조 현장을 급습하는 뉴스에 보도되었고, 인터뷰에 응한 동호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인터뷰가 잘못 실려 초상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중재신청을 문의했다.

MBC '미디어비평' 제작진은 이 사실을 접하고 언론피해를 입은 일반인의 사례를 취재하고자 동호회 회원들을 섭외, 인터뷰과정과 보도 후 정황을 먼저 확인하였다. 그리고 KBS측에게 정식의견과 반론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KBS측이 응하지 않다가 미디어비평 방송 당일 편집 완료 후에야 뉴스투데이 방영 테이프와 답변서를 보내와 이를 편집 보

도하였다.

재판부는 동호회 회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 “인터뷰의 내용이 짝퉁동호회를 소개하는데 쓰일 것처럼 알리고 취재한 인터뷰를 승낙의 범위를 벗어나 승낙 당시의 예상과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방영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MBC측이 명백히 사실과 달리 오보를 한 사례와 이 건 보도를 똑같은 오보의 사례로 예시하여 사실과 달리 오보하였다고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뉴스투데이라는 표제를 상대적으로 크게 화면에 나오게 하는 등 악의를 가지고 보도한 공익성이 없는 내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MBC 보도내용의 공익성 존부에 대해 보도의 기획취지와 취재과정, 보도내용을 고려하여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초상권을 침해당한 일반 국민이 중재위를 찾아가 상담하는 과정인 이 사건 사례를 도입부로 방영한 뒤, 언론피해의 유형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본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진이나 방송을 내보내서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또는 사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은 경우 등이 있다고 말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례가 방영되도록 하였는 바 ... 시청자들이 이 사건 사례는 초상권이 침해된 사례이고, 다음 사례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례임을 구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공익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언론사간 비평의 한계에 대해 “언론사간 광범위한 상호비판은 언론의 부패를 막는 내재적인 안전반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태도나 입장이 자신과 다를 때 올바른 여론 형성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한 이를 비판하여 견제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또 이러한 비판은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판 결 문

사 건 : 2001가합14741 손해배상(기)

원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박 권 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Ⅲ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김 중 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 택 수

변론종결 : 2002. 9. 27.

판결선고 : 2002. 10. 11.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0.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와,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피고가 방송하는 MBC-TV 화면에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미디어 비평의 프로그램 첫머리에서 별지 정정보도문을 시청자가 읽을 수 있는 활자 크기 및 속도로 내용을 제시하고 음성으로 낭독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을 제4

호증의 영상에 증인 송진호, 안중섭, 김진용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송진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이 법원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와 증인 송진호의 증언(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이를 모두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와의 관계

원, 피고는 각 텔레비전 등의 방송매체를 운영하여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01. 8. 30. KBS 2TV를 통하여 '뉴스투데이'라는 프로그램(이하 뉴스투데이라고 한다)에서 약 3분 45초에 걸쳐 '가짜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1보도 기재의 보도(이하 제1보도라고 한다)를, 피고는 같은 해 10. 6. MBC TV를 통하여 '미디어 비평'이라는 프로그램(이하 미디어 비평이라고 한다)에서 약 11분 30초에 걸쳐 '언론보도 피해 복구 안된다'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2보도의 기재의 보도(이하 제2보도라고 한다)를 각 방영하였다.

나. 원고의 제1보도 제작 및 방송 경위

(1) 원고공사의 직원인 소외 송진호(뉴스투데이 기자)는 모조 명품 이른바 짝퉁의 범람이 우리 나라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판단 하에, 최근 모조 명품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제1보도를 기획하고, 모조 명품의 범람은 수요층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모조 명품을 애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짝퉁 동호회를 섭외하였다.

(2) 섭외를 직접 담당하게 된 원고공사의 직원인 소외 박혜림(뉴스투데이의 작가)은

2001. 8. 27. '명품=짝퉁=야매'라는 인터넷 동호회(이하 짝퉁동호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소외 김진용에게 전화로 '인터넷에서 동호회를 검색하다가 특이한 동호회를 발견하여 소개하고 싶은데, 회원들이 정기모임을 하면서 서로 의견과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모습을 흥미 위주로 찍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부탁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고, 원고공사의 직원인 소외 전명진(뉴스투데이 전속 VL)이 같은 달 29. 위 짝퉁동호회의 회원 소외 최덕순, 김진용 등의 인터뷰를 포함하여 약 2시간 정도 촬영하였다.

(3) 소외 송진호는 2001. 8. 30. 경찰이 모조 명품을 불법제조하는 현장을 급습하는 현장을 촬영하여 이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 현장을 설명한 뒤, 피의자를 인터뷰하고, 다시 모조 명품을 판매하는 장소에서 모조 명품의 제품과 가격 등을 알아보는 인터뷰를 방영한 뒤, 모조 명품이 범람하는 이유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나서, 소외 최덕순이 "질의 차이는 얼마 안나는데 가격의 차이는 수십배 씩 나면 솔직히 짝퉁을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라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방영(얼굴, 음성 및 이름을 실제로 방영)하고, 이어서 모조품의 제조와 판매는 불법행위이고, 모조 명품의 증가로 우리 나라는 모조 명품의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없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언급으로 보도를 마쳤다.

다. 피고의 제2보도 기획, 제작 및 방송 경위

(1) 피고회사의 직원으로서 미디어 비평의 프로듀서인 소외 안중섭은 기획회의를 통해 당시 언론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피해를 입은 일반인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피해가 어느 정도 구제되는지를 알리고, 언론도 이제는 취재원의 권리를 존중

.....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하고, 자료조사에 착수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라고 한다)의 중재를 거친 여러 언론관련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그 중 아래 2의 라의 (2)항의 제1, 2사례를 취재하고, 또한 중재위 게시판에 중재문의를 요청한 최신의 사례를 수집하던 중, 뉴스투데이에 소외 김진용이 자신들의 인터뷰가 잘못 실려 초상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중재문의를 해온 사례(이하 이 사건 사례라고 한다)를 알게 되었다.

(2) 이에 소외 안중섭은 2001. 9. 20.경 소외 김진용으로부터 소외 박혜림이 짝통동호회를 소개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요청함에 따라 짝통동교회 회원들이 인터뷰에 응하였는데, 원고공사는 동호회를 소개하지 않고, 모조 명품을 제조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보도에 자신들의 인터뷰를 편집하여 보도하는 바람에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을 듣고, 같은 달 22. 제작진으로 하여금 소외 김진용, 최덕순을 인터뷰하고, 이들이 중재위를 찾아가 상담하는 과정을 촬영하게 한 뒤, 같은 달 20. 소외 송진호에게 제1보도 경위에 있어서 짝통동교회 회원들의 섭외 및 인터뷰 과정과 제1보도 후의 정황 등을 확인하였다.

(3) 소외 안중섭은 제2보도를 방영하기 전에 원고공사측에게 정식의견 및 반론의 인터뷰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공사측이 위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미디어 비평 방송 당일 편집완료 후에서야 KBS로고를 삭제한 뉴스투데이 방영 테이프와 "MBC <미디어 비평> 반론 요청과 관련한 <뉴스투데이>의 답변"이라는 제목의 문서만을 보내므로, KBS 뉴스투데이라는 프로그램의 제목은 남겨두고 KBS로고를 삭제한 상태에서의 뉴스투데이 방영 장면과, 위 문서를 바탕으로 위 문서 중 위 제목 및 "이번 인터뷰가 취재원의 인격을 모독했다거

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취재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라는 부분을 컴퓨터 그래픽 타이틀로 돌출시켜 편집 보도하였다.

라. 제2보도의 내용 및 전체적 구조

(1) 소외 안중섭은 제2보도의 도입부에 언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재위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과정과 중재위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최신의 사례로서 촬영 당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이 사건 사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먼저 방영하였다.

(가) 소외 김현주 기자는 '요즘은 일반인들도 언론피해를 보고 있는 바,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언론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봤다'는 내용의 말을 한 후, '한 방송사의 보도 내용 중 일부인데 음성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조 명품의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다'는 내용으로 뉴스투데이를 소개하면서, 소외 김진수(뉴스투데이의 진행자)가 "가짜 명품의 제조 판매는 우리 나라를 가짜 천국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소외 송진호가 "이렇게 가짜 상품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찾는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소외 최덕순이 "질의 차이는 얼마 안나는데 가격의 차이는 수십배씩 나면 솔직히 짝통을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순차적으로 방영하였다.

(나) 그 후 소외 김현주는 '이 프로그램에 인터뷰했던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이들은 짝통동호회의 회원들이다.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동호회를 소개한다고 인터뷰를 하고 막상 방송에는 당초 취지와 전혀 다르게 인터뷰만 편집하여 방송하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소외 최덕순이 '제가 짝퉁을 찬양하는 것처럼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뭘 잘못해서 뉴스에 나온 것처럼 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과, 소외 김진용이 '얼굴과 실명이 그대로 나가서 피해를 봤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방영하였다.

(다) 그 후 소외 김현주는 위 1의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안중섭이 소외 송진호에게 전화확인하는 과정에서 녹취한 부분 중 소외 안중섭이 '초상권을 침해하게 되리라는 판단을 못했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내용으로 말하는 부분을 음성변조하여 방영하였다.

(라) 그 이후의 도입부는 소외 최덕순, 김진용이 중재위를 찾아가 상담하는 과정과 중재위에 접수되는 사례의 현황과 중재위의 역할 및 활동 등을 방영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재위에 접수되는 사례의 현황과 관련하여 소외 김현주는 '중재위에 접수되는 사례들을 보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본인의 허락없이 합부로 사진이나 방송을 내보내서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또는 사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은 경우 등 언론의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마) 소외 안중섭은 도입부의 첫 머리에 진행자와 소외 김현주 사이에 주고 받는 말을 약 20초 정도, 이 사건 사례 부분을 약 2분 30초 정도, 중재위의 역할, 접수 현황, 활동 등에 대하여 약 2분 40초 정도를 방영하였다.

(2) 소외 안중섭은 위 도입부 이후에 아래와 같이 실제 중재위 결정에 따라 정정보도를 받은 두 경우의 사례를 방영하는 것으로 미디어 비평을 구성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제1사례 부분을 약 2분 15초 정도, 제2사례 부분을 약 2분 35초 정도, 진행자와 소외 김현주 사이

에 정리하는 말을 약 1분 10초 정도 방영하였다.

(가) 공무원인 소외 김국태가 예금을 찾기 위하여 어느 증권회사 객석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곤하여 눈을 만지고 있는 상황에서 찍힌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면서 그 하단에 "날아간 내돈 망연자실, 객장마다 오 주여"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김국태가 증권투자를 하였다가 주가폭락으로 실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사례(이를 제1사례라고 한다)

(나) 언론들이 냉동창고로 보관업을 하던 소외 박수원이 보험금을 노려 방화하였다는 혐의로 검거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위 박수원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이를 제2사례라고 한다)

2.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여부

가. 명예훼손의 성부

(1)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존재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영상 매체의 방영내용은 진행자를 비롯한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 이외에도 일반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프로그램의 제목, 배경 화면과 자막, 내용의 전체 흐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 그밖에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을 종합하여, 그 프로그램이 시

.....

청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가 방영한 제2보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별지 제2보도를 방영하면서 원고가 방영한 제1보도와 관련하여 대체로 아래와 같은 사실 적시와 논평을 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가) 어느 방송사가 뉴스투데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성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조 명품의 실태를 고발하는 보도를 하였다.

(나) 뉴스투데이 보도 과정에서 진행자는 “가짜 명품의 제조판매는 우리 나라를 가짜 천국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담당 프로듀서는 “이렇게 가짜 상품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찾는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였으며, 소외 최덕순이 “질의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가격의 차이는 수십배씩 나면 솔직히 짝퉁을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였고, 다시 위 담당 프로듀서는 “하지만 모조품의 제조와 판매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다) 뉴스투데이의 제작진이 짝퉁동호회 회원들에게 동호회를 소개한다고 인터뷰를 하고 막상 방송에는 당초 취지와 전혀 다르게 인터뷰만 편집하여 방송하는 바람에, 이 프로그램에 인터뷰했던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위에서 상담을 받았다.

(라) 단 한줄의 기사 또는 한 장의 작은 사진이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한 사람은 순식간에 불행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상으로도 원상회복이 안된다. 이 프로그램은 소외 최덕순의 얼굴과 이름을 그대로 방영하여 피해를 보게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제2보도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여러 사실 적시{위 2의 가의 (2)항의 (가), (나), (다)항

와 논평(위 2의 가의 (2)항의 (라)항)을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또한, 논평 또는 의견표명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의견 또는 논평자체가 진실인가 혹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와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위법성이 없다.

(1) 공익성

(가)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언론사들이 이를 통하여 국가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 비판적 기능, 경고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범위도 그 만큼 넓어져야 할 것인 바, 언론사간의 광범위한 상호비판은 언론의 부패를 막는 내재적인 안전반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태도나 입장이 자신과 다를 때 올바른 여론형성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 한 이를 비판하여 견제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또 이러한 비판은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

오늘날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의 상대방으로서의 일반 국민의 권익이 중시되는 시점에서 어느 언론사가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일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그러한 언론의 황포나 잘못된 보도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서 다른 언론사가 이를 비판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1의 나의 (2), (3)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송진호는 제1보도에서 모조 명품이 범람하는 이유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소외 최덕순이 "... 짝퉁을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라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방영한 뒤, 모조품의 제조와 판매는 불법행위이고, 모조 명품의 증가로 우리 나라는 모조 명품의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는 바, 위 송진호는 제1보도를 통하여 소외 최덕순과 같이 모조품제조 판매의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외 최덕순에게 인터뷰의 내용이 위와 같은 내용에 쓰일 것임을 알리지 않고 짝퉁동호회를 소개하는데 쓰일 것처럼 알리고 취제한 인터뷰를 위 최덕순의 승낙의 범위를 벗어나 승낙 당시의 예상과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방영함으로써, 위 최덕순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위 1의 나의 (1)항 및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2보도 중 원고의 제1보도에 관한 중요 방영 내용은 원고측이 짝퉁동호회 회원들인 소외 최덕순, 김진용에게 동호회를 소개하겠다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를 편집하여 모조 명품의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보

도에 이용함으로써 소외 최덕순의 초상권을 침해한 점을 지적하고 있고, 제2보도의 기획 의도는 제1, 2사례와 함께 언론피해를 입은 일반인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피해가 어느 정도 구제되는지를 알리고, 언론에게 이 제는 취재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이 사건 제2보도의 기획 의도와 방영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제2보도를 제작, 방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보도가 그 제작 과정에서 소외 최덕순에게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를 사전에 정확히 전달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을 뿐이고 기초사실이 모두 진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 최덕순, 김진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다른 언론사들이 명백히 사실과 달리 오보를 한 제1, 2사례와 이 사건 사례를 똑같은 오보의 사례로 예시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례를 사실과 달리 오보하였다고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뉴스투데이라는 표제를 상대적으로 크게 화면에 나오게 하는 등 의도된 악의로 제2보도를 하였으므로, 제2보도는 공익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1의 나의 (2), (3)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안중섭은 소외 최덕순, 김진용과 인터뷰하여 원고가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당초의 취지와 달리 편집하여 보도한 사실을 확인한 뒤 제2보도를 기획, 제작, 방영한 사실, 위 안중섭은 제2보도를 구성함에 있어 초상권을 침해당한 일반 국민이 중재위를 찾아가 상담하는 과정인 이 사건 사례를 도입부로 방영한 뒤, 언론피해의 유형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본

인의 허락없이 함부로 사진이나 방송을 내보내서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또는 사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은 경우 등이 있다고 말하고, 곧이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한 제1, 2사례가 방영되도록 하였는 바, 위와 같은 구성으로 볼 때 시청자들이, 이 사건 사례는 초상권이 침해된 사례이고, 제1, 2사례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례임을 구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뉴스투데이라는 표제를 상대적으로 크게 화면에 나오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2보도 전체의 공익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진실성

(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위 2의 가의 (2)항의 (가), (나), (다)항의 사실적시는 위 1의 나항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모두 그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 앞서 본 논평 위 2의 가의 (2)항의 (라)항은 위와 같이 진실인 사실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이 부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나아가 원고는 제1보도가 기초사실이 모두 진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 최덕순, 김진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다른 언론사들이 명백히 사실과 달리 오보를 한 제1, 2사례와 이 사건 사례를 똑같은 오보의 사례로 예시함으로써 세 개의 사례를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허위과장하여 방영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1의 다의 (2), (3)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안중섭은 제1보도가 인터뷰의 승낙자인 소외 최덕순의 승낙범위를 벗어나 그 인터뷰를 악용하여 위 최덕순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도하

였을 뿐이고, 제1보도가 사실과 달리 오보를 하였다고 보도한 것이 아니며, 제2보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초상권을 침해당한 일반 국민이 중재위를 찾아가 상담하는 과정인 이 사건 사례를 도입부로 방영한 뒤 언론피해의 유형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본인의 허락없이 함부로 사진이나 방송을 내보내서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또는 사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은 경우 등이 있다고 말하고, 곧이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한 제1, 2사례가 방영되도록 하였는 바, 위와 같은 구성으로 볼 때 시청자들이, 이 사건 사례는 초상권이 침해된 사례이고, 제1, 2사례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례임을 구별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2보도는 공익적인 목적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고,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공정한 논평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는 언론자유와 보호범위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아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 현
판사 정재우
판사 이정권 □

판결 3

개인간의 이권에 관한 다툼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러한 이권다툼에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 관할관청에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입했는지 의혹이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의 영역 하에 있는 공적인 사항이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년 11월 7일자 판결(2001가합14932)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2002년 11월 7일 국회의원 김일윤 씨와 보좌관 장병화 씨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개인간의 이권에 관한 다툼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러한 이권 다툼에 국가기관인 국회의원 또는 그 보좌관이 관할관청에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입했는지 의혹이 있다는 사실은 국민 전체의 알 권리의 영역 하에 있는 공적인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취재팀의 취재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는 보도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진술을 믿을 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취재를 하

였고, 이 사건 원고들을 직접 만나 보도내용을 확인하였거나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등,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보여지며, 그 진실성에 대한 믿음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문화방송은 2001년 8월 26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기막힌 청탁’이라는 제하로 원고들이 지방 국도변 휴게소 사이의 이권다툼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압력성 청탁을 하였다 는 취지의 방송을 하자 원고들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신청인들은 2001년 9월 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2001서울중재303)을 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내려졌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판결문

사 건 : 2001가합14932 손해배상(기)

원 고 : 1. 김 일 윤

2. 장 병 화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찬 진, 정 은 숙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김 중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성 하, 오 동 석

변론종결 : 2002. 10. 17.

판결선고 : 2002. 11. 7.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1)원고들에게 각 금 2억원 및 이에 대한 2001. 8.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이 사건 판결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엠비씨 텔레비전(MBC-TV)의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9시 정각)에서 화면 상단에는 두 줄로 "김일윤 의원, 장병화 보좌관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글자는 통상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그 아래 화면에는 별지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자막과 같은 크기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하며, (3)만약 위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원고들에게 각 1일 금 5천만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0,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여홍규의 증언,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김일윤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학교법인 경흥학원,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이사장이며,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제13대,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4선 의원으로 1998년 8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원고 장병화는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82년 교통안전공단 연구부 연구원을 거쳐 1985년부터 국회 입법보좌관으로 활동하여 왔는데, 현재는 김일윤 의원의 입법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는 방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엠비씨 텔레비전(MBC-TV)'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취재의 경과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992. 5. 14.부터 1993. 1. 8.까지 사이에 일죽과 장호원간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를 하여, 1993. 9. 21.부터 1998. 12. 31.까지 이를 시공하였는데, 위와 같은 국도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시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459-1 투투휴게소 앞 부분 국도에 마을 차량 및 농기계 등이 무

질서하게 진·출입하는 것을 억제함과 동시에 인근 주민의 농로로 제공하고자 국도 본선도로와 단차가 있는 부체도로(측도)를 설치하고, 본선도로와 부체도로 사이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였다(이하, 위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을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이라 한다).

(2) 한편, 소외 최중호, 장성환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1996. 2. 13.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459-1에서 투투휴게소(단, 그 명칭과 달리 일반음식점 및 매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음) 및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같은 리 466-4외 2필지에 관하여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진·출입(진입은 부체도로로, 진출은 본선도로로 하도록 함)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3. 13. 그 허가를 받았는데, 도로점용허가의 조건과 달리 위 투투휴게소 등에서 본선도로에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부체도로 설치 예정 부지를 매립하여 사용하여 왔고, 소외 박해천은 위 국도를 따라 위 투투휴게소로부터 약 700m쯤 떨어진 곳에서 일죽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3) 그런데, 인근 송천리 주민 중 일부는 1997. 4.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국도 본선도로에서 마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본선도로와 부체도로의 단차를 없애고 가드레일의 설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1997. 5.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단차를 없애고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국도 본선도로의 교통흐름 및 안전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인근 주민은 신호등이 계획되어 있는 지점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위 투투휴게소의 영업권을 양수받은 소외 권중덕은 1998. 12. 2.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 1998. 8. 1. 도로변휴게소관리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휴게소 허가(점용목적 변경)를 준비 중이므로 이 사건 부체도로 및 가드레일 설치를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1999. 1.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부체도로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4) 위 인근 주민들과 투투휴게소측은 그 외에도 1998. 12.경부터 이 사건 부체도로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가 완공된 후인 2001. 초까지에 걸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안성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부체도로 단차 해소와 가드레일 설치 반대 또는 그 철폐요구 등의 민원을 냈으나, 모두 위와 같은 이유 및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위 일죽휴게소 사장인 소외 박해천은 1998. 8.경 관할관청에 위 인근 주민들과 투투휴게소측의 민원에 대하여 반대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던 중 1998. 12. 12.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투투휴게소 앞 부체도로 상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국도 본선도로에서 위 투투휴게소로의 직접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5) 한편, 위 투투휴게소측은 2001. 8. 14.경 피고 방송사 보도본부 카메라출동팀에 <권력형 비리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라는 제목으로, 위 투투휴게소측과 마을 주민들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안성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이 사건 부체도로 및 가드레일의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원인들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김모 전의원의 보좌관이 수원국

.....

도유지사무소 담당자 및 소장에게 수 차례 이 사건 부체도로 및 가드레일의 철거를 막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

(6) 이에, 피고 소속 기자인 소외 여흥규는 위 제보자로서 투투휴게소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소외 전문경을 만나 그 주장 사실을 듣고, 위 민원제기서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검토한 다음 일응 이를 보도 아이템으로 선정키로 하고, 같은 달 16. 가드레일 설치 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었던 소외 이필원을 만나 위 사건에 관하여 취재를 하였는데, 이 때 위 이필원으로부터 '원래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 설치가 계획된 일이긴 하지만, 투투휴게소측과 마을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고민을 했었다', '1998년 가을경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과 관련하여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원고 김일윤의 보좌관인 원고 장병화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었고, 얼마 뒤 국회에서 위 원고 장병화를 만났다', '원고 장병화는 원래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원래 계획대로 민원을 해결해 달라. 김일윤 의원이 이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자신(이필원)은 그 말에 부담을 느꼈다', '자신(이필원)은 일단 가드레일을 설치하되, 3개월쯤 후면 당사자간(투투휴게소 및 주민측과 일죽휴게소측)에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인사이동이 있는 바람에 가드레일 철거 건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게 되었고, 보좌관인 원고 장병화가 이 사건에 개입되었을지 모른다는 의문을 갖게 되어 이를 본격적으로 취재키로 하였다.

(7) 취재팀은 한편, 마을 주민 신경철, 투투

휴게소의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한영태 등을 만나 민원제기 이유 등을 취재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에 이 사건에 관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협조를 받지 못하였다.

(8) 이에, 취재팀은 원고 장병화를 직접 만나기로 하고, 2001. 8. 22.경 그를 만나 취재를 하였는데, 이 때 위 원고 장병화로부터 '1998. 9.경 일죽휴게소의 박해천 사장이 찾아와 원고 김일윤과 같은 경주중·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원고 장병화)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인 이필원에게 한 두 차례 전화하였고, 국회 김일윤 의원 사무실로 찾아온 위 이필원에게 이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여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9) 그 후, 취재팀은 원고 김일윤을 만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두 차례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 지방에 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기도 하여 만나지 못하고, 방송 1일 전인 2001. 8. 25. 원고 장병화에게 보도 초안 내용을 팩스로 송부하면서 그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장병화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몇 군데 문구를 지적하면서 '투투휴게소와 일죽휴게소 양쪽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과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했을 뿐이고, 원고 김일윤 의원은 이 사건 민원 내용과 일죽휴게소의 박해천 사장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보도 및 그 내용

피고는, 위와 같은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2001. 8. 26. 일요일 오후 9시부터 방영된 엠비씨 텔레비전(MBC-TV)의 「뉴스데스크」프로그램에서 약 4분에 걸쳐 별지 보도내용과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다.

2. 명예훼손 여부

가. 텔레비전 방송 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 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또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도 있으나,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보도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인상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인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보도는 원고들의 이름을 자막으로 내보내거나 기자가 읽는 방법으로 원고들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고, 보도 앞 부분에서 「기막힌 청탁」이라는 자막을 화면 우측 상단에 보여주면서 “여야 정치인들의 압력성 청탁 관행은 인천공항 유희지 개발같은 덩치 큰 사업뿐만 아니라 조그만 이권에까지 뻗어

있습니다”. “어느 지방 국도변 휴게소가 문을 닫게 된 사연을 취재하다가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개입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라고 보도하였는 바, 비록 그 다음에 이어진 주된 보도 내용이 기자가 투투휴게소의 관계자인 한영태, 마을 주민 신경철과 인터뷰하는 내용과 ‘당시 도로 설치에 결정권을 갖고 있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이모 씨는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해 가드레일을 일단 설치하되 3달 뒤에는 철거할 방침이었다고 말했다’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고 김일윤 의원의 보좌관인 원고 장병화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었다고 말하였’으며, ‘가드레일의 덕을 본 B휴게소(일죽휴게소) 사장이 김일윤 의원의 학교 동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원고 장병화의 개입에 관한 의혹 제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 장병화의 반론을 제기하는 인터뷰 내용과 김일윤 의원측의 반론 내용을 함께 보도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의혹제기 수준을 벗어난 단정적인 내용의 보도와 자막을 함께 내보내고, 이어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투투휴게소의 내외부 전경과 성업 중인 일죽휴게소를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이 사건 보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를 시청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원고들이 지방 국도변 휴게소 사이의 이권다툼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압력성 청탁을 하였다는 인상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방송 보도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1) 언론기관의 방송 보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한다.

(2) '국회의원 보좌관의 국도변 휴게소간의 이권에의 개입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개인간의 이권에 관한 다툼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러한 이권 다툼에 국가기관인 국회의원 또는 그 보좌관이 관할관청에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입했는지 의혹이 있다는 사실은 국민 전체의 알 권리의 영역 하에 있는 공적인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재팀의 취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보도가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의무와 확인 절차를 모두 거친 때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방송사의 취재진은 이 사건 방송 전에 약 10일간에 걸쳐 취재를 하였는데, 투투휴게소의 실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제보자 소외 전문경을 만나 그로부터 관련 민원서류 등의 문건을 교부받고 이를 검토한 후, 이 사건 가드레일 설치 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었던 소외 이필원, 마을 주민인 소외 신경철, 투투휴게소측 관계자인 소외 한영태 등을 만나 그 진술을 들었고, 이 사건 보도의 핵심인물인 원고 장병화를 직접 만나 이 사건 보도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는 등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취재를 하였고, 문제의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관할관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취재요청을 하였으나 민원관계서류 일부만을 교부받고 협조를 얻지 못하는 등 나름대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보도가 있기 4일 전에 원고 장병화를 만나 그의 입장을 취재하는 한편, 보도 1일 전에는 보도 초안 내용을 위 원고 장병화에게 팩스로 보내어 그의 반론 또는 의견을 묻는 등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을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취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었던 소외 이필원은 원래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 설치가 계획된 일이긴 하지만, 투투휴게소측과 마을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 계획의 존폐에 관하여 고민을 하던 중, 1998년 가을경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원고 김일윤의 보좌관인 원고 장병화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얼마 뒤 국회에서 위 장병화를 만나

그로부터 원래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원래 계획대로 민원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자신은 그 말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관할관청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양쪽 당사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위 장병화의 영향력이 작용되었을 지 모른다는 의문을 가질만 하다고 보여진다.

(4) 또한,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취재 과정에서 원고 장병화가 1998. 9.경 일죽휴게소의 박해천 사장이 찾아와 원고 김일운과 같은 경주중·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원고 장병화)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인 이필원에게 한 두 차례 전화하였으며, 국회 김일운 의원 사무실로 찾아온 위 이필원에게 이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여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원고 장병화의 진술은 위 이필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5)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재진이 원고 김일운을 만나기 위하여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전화로 만나기를 요청했으나,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 내려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기도 하여 만나지 못하였는 바, 원고 장병화로부터 원고 김일운과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하면서 일죽휴게소의 박해천 사장이 찾아왔었다는 말을 들었던 취재진으로서 원고 김일운이 취재진과 만나는 것을 일부더 회피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보도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진술을 믿을 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취재

를 하였고, 이 사건 원고들을 직접 만나 보도 내용을 확인하였거나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등,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보여지며, 그 진실성에 대한 믿음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의 취재기자인 소외 여흥규가 전문경 등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 각종 민원이나 고충처리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을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였다는 점,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자가 진실의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제보자 등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소외 여흥규는 이필원 등 신원이 명확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 취재를 하는 등으로 진실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취재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과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의 적법성에 관하여 원고 장병화로부터 어느 정도 설명을 들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보도의 초점이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의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민원인들 사이에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에 관한 점이고 보면, 취재 과정에서 이 사건 부체도로와 가드레일의 설치의 적법성에 관한 조사가 다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와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판 사 임 종 윤
판 사 김 도 균
판 사 최 현 중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2001년 8월 26일 '9시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 프로그램에서 “기막힌 청탁” 제하로, 어느 지방 국도변 휴게소가 3년째 문을 닫게 된 원인이 국도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던 '98년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던 김일운 한나라당 의원과 그의 보좌관 장병화 씨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문제의 휴게소 진입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지난 92년 국도 38번 일죽-장호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발주 설계 당시부터 신설 4차로와 부체도로 사이에 높이 차가 있어 부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농기구와 통행인들의 통행안전을 위하여 당초부터 설계되어 그대로 시공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일운 의원이나 장병화 입법보좌관이 관계 당국에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카메라출동' 방송내용을 정정합니다.

문제의 휴게소측은 1996. 3.경 근린생활시설 및 주유소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을 뿐인데, 건축물을 완공한 후에 확장공사 중인 국도의 접속부분을 불법 매립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토록 하여 휴게소 영업을 하다가 1997. 3. 5.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1997. 12. 22. 진입로 설치 및 가드레일의 철거는 불가하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문제의 휴게소 사장은 1998. 3. 30. 가드레일 설치를 포함한 국도확장공사 진행을 1998. 5. 1.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공사를 설계대로 진행하는데 이의를 제기 않고 협조해드릴 것을 각서한다는 각서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앞으로 제출한 바도 있는데도 문제의 휴게소측이 1998. 5. 1. 이후에도 불법 진입로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도로 확장건설이 지연되자, 인근 일죽휴게소는 1998. 9.경 관계 법령의 준수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오므로 장병화 입법보좌관은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법령과 원칙에 따라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 뿐이며, 그 과정에서 압력성 청탁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인근 일죽휴게소 사장과 김일운 의원은 학교 동문이 아니며 김의원은 일죽휴게소 사장을 만나 본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방송은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2001년 12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김일운 의원과 장병화 입법보좌관에게 4억원의 위자료 지급하고 당초의 본 방송내용을 정정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

판결 4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의 반론권을 보장하였는지 여부는
명예훼손 기사 작성당시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2002. 7. 26.자 판결(2001가합65620)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현직 검사인 이귀남 씨가 동아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측 기자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에게 미리 전화연락을 하여 원고관련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측 기자가 원고에 대한 사실확인과정에서 원

고로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원고와 이용호가 실제로 자주 통화하는 등 교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다른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이 사건 기사를 작성, 게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판단기준에 비추어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고, 명예훼손 기사의 보도 이후에 일어난 사정 및 명예훼손 기사와 동시에(또는 그 기사 보도 이후에)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의 반론권을 보장하였는지 여부는 명예훼손 기사 작성당시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피고들의 항변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동아일보는 2001년 9월 18일자 31면 『국정원-대검-청와대간부...여 의원...이씨 권력층과 수시통화』라는 제하로 원고가 거액의 횡령 및 주가조작과 관련된 소위 ‘이용호 게이트’의 당사자인 이용호 씨와 수시로 통화하며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이에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사 건 : 2001가합65620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귀 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4의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우 식
 피 고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김 학 준
 2. 김 승 련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중 훈

변 론 종 결 : 2002. 7. 12.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9. 18.부터 2002.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9.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82. 검사로 임명되어 1999. 5.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3과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라 한다)는 일간지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회사, 피고 김승련은 피고 동아일보사의 기자이다.

나. 기사의 보도

피고 김승련은 거액의 횡령 및 주가조작과 관련된 소위 '이용호 게이트' 사건을 취재하다가 별지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동아일보는 2001. 9. 18.자 동아일보 31면에 별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판단기준

어떠한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로라도 그 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신문 등 언론 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기사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사실 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도 타당한 기준이 된다.

(2)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국정원 - 대검 - 청와대간부...여 의원...이씨 권력층과 수시 통화"라는 것이고, 기사 본문 중간에 삽입된 본문보다 큰 고딕체 활자부분은 "김형운, 이

귀남, 오상범 씨 등 99년 4~6월 전화 메모 남겨"라 하여 원고의 실명을 적시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기사 첫머리에 "600억원대 횡령 및 주가조작으로 구속된 G&G 회장 이용호(李容湖)씨는 99년을 전후로 국가정보원, 검찰, 청와대, 국회의원 등 권력기관 고위 인사들과 폭넓게 '교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적시한 뒤, 그 근거로서 이용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부재 등으로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전화한 사람, 일시, 용건 등을 이용호의 여직원이 기록하여 둔 소위 '전화리스트'를 피고 동아일보사에서 단독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전화리스트에 원고가 1999. 5. 11. 이용호에게 전화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 김형운 당시 국가정보원 경제단장, 오상범 당시 청와대 국장, 조홍규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이 이용호에게 전화한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기사에 언급된 인물들 중 1999. 당시 대검찰청 간부는 원고밖에 없어 이 사건 기사 중의 검찰 간부는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3) 판단

이 사건 기사를 위에서 본 기준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는 이를 접한 독자들에게 원고가 이용호와 수시로 통화하며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다만 기사 첫머리의 "이용호씨는 99년을 전후로 국가정보원, 검찰, 청와대, 국회의원 등 권력기관 고위 인사들과 폭넓게 '교제'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부분은 원고 등이 이용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의견 또는 논평이라 볼 여지도 있으나, '교제'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도 이용호가 원고를 비롯한 고

위 인사들과 자주 전화를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기사에 언급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용호의 비호세력으로서 소위 '이용호 게이트'에도 깊이 개입한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승련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로서, 피고 동아일보는 피고 김승련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공익성

원고는 1999년 및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대검찰청 및 서울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공인이었는 바,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소위 '이용호 게이트'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며 고위층에 대한 로비 의혹을 받던 이용호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점에서 기사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진실성 또는 상당성

가) 진실성

피고들은 원고가 이용호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진실

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용호에게 1회 전화를 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단지 원고가 이용호에게 전화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용호와 원고가 수시로 통화하며 교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당성

피고들은 2001. 9.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가 불거진 직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용호 관련 자료를 교부받았는데, 그 자료 가운데 이 사건 기사상의 소위 '전화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기사는 그 리스트에 적힌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인 바, ①피고들은 2001. 9. 17. 이 사건 기사를 출고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전화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원고에 대한 기사를 포함시켰고, ②또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후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된 김형운, 도승희, 오상범 등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및 2001. 9. 19.자 동아일보를 통하여 원고의 반론을 보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

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①갑 제1호증의 기재, 피고 김승련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승련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에게 미리 전화연락을 하여 원고 관련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나아가 피고 김승련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사실확인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원고와 이용호가 실제로 자주 통화하는 등 교제를 하였던 지에 관하여 다른 사실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이 사건 기사를 작성, 게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판단기준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고, ②명예훼손 기사의 보도 이후에 일어난 사정 및 명예훼손 기사와 동시에(또는 그 기사 보도 이후에)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의 반론권을 보장하였는지 여부는 명예훼손 기사 작성 당시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가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배포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을 금

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및 신문 게재 시점과 신문 게재 부분,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 회사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원고의 검사로서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긴 점, 일반 독자들에게 검사가 범법자인 이용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그릇된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 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더욱 조장한 점 및 한편으로 피고 김승련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 전에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여 원고의 입장을 기사에 포함시킨 점, 이 사건 기사 게재 후 원고의 항의를 받고 2001. 9. 19. 자 동아일보를 통하여 원고의 반론을 보도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실린 신문이 배포된 불법행위일인 2001. 9.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2. 7.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26.

재판장 판사 주 경 진
판사 오 권 철
판사 최 석 규

〈별지 기사 생략〉

□

일본 판결

통신사 송신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상 고 인 : 甲野太郎
피상고인 : 주식회사 데일리 스포츠사, 동사 대표자 山根秀夫
 주식회사 일간스포츠신문사, 동사 대표자 川田貞之
피상고보조참고인 : 사단법인 共同通信社, 동사 대표자 齋田一路
최고재판소 1995 (才) 제1421호, 손해배상청구사건
2002. 1. 29. 제3소법정 판결, 파기환송

판결요지

신문사가 통신사로부터 기사를 받아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그대로 게재한 기사가 사인(私人)의 범죄행위나 스캔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경우에는, 취재를 위한 인적·물적 체제가 정비되어있고, 일반적으로는 그 보도내용에 일정한 신뢰성이 인정된다는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해 신문에 이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주 문

원판결 중 피상고인 등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전항의 부분에 대해 본건을 도쿄고등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대리인 弘中淳一郎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본건은 통신사인 피상고보조참가인이 피상고인 등에게 보내 피상고인 등이 발행하는 각 신문에 게재된 기사가 상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상고인이 피상고인 등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원심이 확정된 사실관계 등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피상고 보조참고인은, 1945년에 설립되어 1993년 9월 현재 지방신문, 일본방송협

회, 스포츠신문 등 전국의 보도기관 62개사를 사원(社員=가맹사)으로 한 사단법인이다.

피상고 보조참고인은 동경에 본사를 두고 삿포로(札幌)시, 센다이(仙台)시, 나고야(名古屋)시, 오사카(大阪)시 및 후쿠오카(福岡)시에 지사를, 각부현청(府縣廳) 소재지 등 48개도시와 해외 38개 도시에 지국을 설치, 국내외 뉴스를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를 가맹사 및 기사송신계약을 체결한 신문사와 민간방송국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사이다.

도쿄본사에는 정치, 경제, 사회, 외신, 문화, 사진 등의 부서가 있으며 국회, 중앙관청, 재판소, 경제단체 등에 설치되어있는 기자클럽을 거점으로 취재활동을 하고 있다.

(2) 피상고인 주식회사 데일리스포츠사는 일간지 '데일리스포츠'를, 동주식회사 일간스포츠신문사는 일간지 '일간스포츠'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신문사이다.

피상고인 등은 피상고 보조참고인과 피상고 보조참고인이 작성한 기사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동 계약에는 피상고인 등은 피상고 보조참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뉴스를 신문에 게재하는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신문에 게재함에 있어서도 뉴스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고의적으로 주관을 삽입하여 편집하는 일을 일체 하지 않는다. 피상고인 등은 원칙적으로 뉴스마다 피상고 보조참고인의 송신기사임을 명기한다는 규정이 있다.

피상고인 등은 모두 경시청 기자클럽에 소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시청당국의 정보에 대해서는 동 클럽에 소속되어있는 피상고 보조참고인으로부터 송신된 기사를 그대로 신문에 게재, 보도하고 있다.

피상고인 등이 피상고 보조참고인으로부터 송신된 기사에 대해 확인취재 없이 그대로 신문에 게재하는 이유로는, 동 송신기사 자체를 신뢰하고 있다는 점, 피상고인 등이 확인취재를 할 수 있을 만큼 인적능력이 취약하다는 점, 동 송신기사의 취재원에 송신을 받은 각사의 확인취재가 왜도한다면 취재원에게 괴로움을 주게되어 결과적으로 송신을 받은 각사와 피상고 보조참고인간 및 피상고 보조참고인과 취재원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된다는 점등이 지적될 수 있다.

(3) 상고인의 처 花子는 1981년 8월 미국 LA시에서 구타당해 부상한 후(이하, '구타사건'이라 한다) 동년 11월에 동시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이하, 구타사건과 총격사건을 합쳐서 '로스의혹'이라 한다).

피상고 보조참고인은 주간문춘지(週刊文春誌)가 '의혹의 총탄'이라는 제목의 '로스의혹'에 관한 특집기사 연재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1984년 1월경부터 '로스의혹'과 상고인에 관한 그 밖의 사건에 대해 취재를 개시했다.

상고인은 1985년 9월 11일 구타사건과 관련, 살인미수사건의 피의자로 경시청에 체포되어 그 후 구류되어 있었다.

(4) 피상고 보조참고인은 1985년 9월 17일 피상고인 등에 대해 "甲野, 대마초를 자택에 숨기다. 전처가 목격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이하, '본건 송신기사'라 한다)를 송신했다.

본건 송신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다.

① 구타사건으로 체포된 상고인과 공범인 乙山春子は 대마파티로 결합한 사실이 명확해졌으나 경시청 특별수사본부는 상고인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성과 사귀기 시작할 때

대마를 사용해왔고, 자택에 대마를 몰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밝혀냈다.

②상고인의 난잡한 생활태도를 알 수 있는 단서로서 특별수사본부가 이러한 증언을 중시하고 있다.

③상고인의 대마소지에 관해 증언한 것은 구타사건의 4년 전인 1977년 당시 상고인과 생활하고 있던 두 번째 처 A씨 등이며, 상고인과 A씨가 1978년 2월경 별거상태로 들어가 직전, A씨가 주방의 냉장고를 열고 청색의 비닐봉지 속에 두 손으로 가득하게 움켜질 정도의 갈색의 대마초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 이를 상고인에게 추궁하자 상고인이 대마초임을 시인하면서 “이건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야. 만일 경찰에 들킬 염려가 있으면 변기에 넣어 몰과 함께 흘려버리면 돼”라고 지시했다.

④특별수사본부는 상고인이 1976년경부터 매년 7회~11회 하와이, LA에 다녀온 사실을 파악하고 상고인이 미국에서 입수한 대마초를 일본으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⑤상고인이 자택에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던 1977년은 LA에서 변시체로 발견된 丙田夏子が 전 남편과 별거하고 상고인과 절친하게 지내던 시기이다.

⑥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서 乙山은 상고인과 알게된 것은 1981년 5월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은밀하게 있었던 대마파티에서였다는 것을 자백했으며 LA에 있을 때부터 상고인의 주변에 있었던 관계자들도 상고인이 대마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5) 피상고인 데일리스포츠사는 1985년 9월 18일자 데일리스포츠지에 “甲野 자택에

대마초 숨기다”, “두 번째 처 목격증언” 등의 제목으로 본건 송신 기사를 그대로 게재했다.

피상고인 일간스포츠신문사는 1985년 9월 18일자 일간스포츠지에 “자택의 냉장고에 숨겨놓고 있었다”, “두 번째 처가 증언” 등의 제목으로 본건 송신 기사 중 상기 이외의 부분을 순서와 표현을 약간씩 변경하여 게재했다.

또한 피상고인 등은 상기 각 기사(이하, ‘본건 각 기사’로 한다)를 게재하면서 피상고 보조참고인으로부터 받은 기사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6) 본건 송신 기사 및 본건 각 기사는 상고인이 1977년말부터 1978년초에 걸쳐 자택의 냉장고속에 사용이 금지되고있는 다량의 대마초를 숨겨서 갖고 있었다는 범죄사실을 지적하고 그 후에도 상고인이 대마의 소지, 사용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범죄자적 악성을 갖고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독자에게 심어주는 내용으로 상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그 명예를 훼손한다.

(7) 본건 송신 기사 및 본건 각 기사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련이 있고 그 송신 및 기사게재는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이나, 본건 송신 기사에 적시된 상고인의 대마소지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피상고 보조참고인에게는 동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8) 피상고인 등은 피상고 보조참고인이 1984년 1월 이후 로스의혹에 관해 수사당국이나 관계자를 상대로 정력적인 취재활동을 하여 많은 기사를 송신하였기 때문에 본건 송신 기사도 수사당국에서 취제한 결과 얻어

낸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피상고인 등에게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고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상고 보조참고인은 다수의 보도기관이 가맹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사이며 인적 물적으로 취재체제도 정비되어, 그 송신기사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피상고 보조참고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기사의 송신을 받는 보도기관은 확인취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하에 보도체제가 짜여져 있다.

이러한 보도체제에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일반적으로는 피상고 보조참고인으로부터의 송신기사에 대해서는 피상고인 등이 진실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피상고 보조참고인은 로스의혹에 관해 정력적인 취재활동을 하여 많은 기사를 송신했으며, 본건 송신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상고인과 대마와의 관계에 대해 수많은 보도가 나와 경찰도 관심을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어, 본건 송신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상고인들이 본건 송신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피상고인 등이 발행하는 각 신문에 게재된 본건 송신기사에 근거한 본건 각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을 피상고인 등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상고판단은 시인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법상의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련이 있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그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동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또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동행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재판소의 관례이다(최고재판소 1962년(才) 제815호 1966년 6월 23일 제1소법정 판결).

그런데 본건 각기사는 피상고 보조참고인이 송신한 기사를 피상고인 등이 확인취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면에 게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 곧바로 피상고인 등에게 위에서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때, 현재까지의 일본의 현상에 비추어 적어도 본건 송신기사와 같이 사회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사인(私人)의 범죄행위나 스캔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내용으로 한 분야의 보도의 경우, 통신사로부터의 송신기사를 포함하여 보도가 가열화하여 취재에 신중함이 결여된 진실하지 않은 내용의 보도가 간혹 보인다.

그러므로 취재를 위한 인적 물적 체제가 정비되어 일반적으로는 그 보도내용이 일정한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통신사로부터의 송신기사라고 하더라도 일본에 있어서는 당해 송신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해 높은 신뢰성이 확립되어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시점에 있어서는, 신문사가 통신

사로부터 송신을 받아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 기사가 상기와 같은 보도분야의 것이고,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일 경우에는 당해 게재기사가 상기와 같은 통신사로부터 송신된 기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한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는,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가 당해 송신기사에 적시된 사실에 확실한 자료와 근거가 있다고 인식하여 동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무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당해 신문사가 동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가령, 기타 보도분야의 기사에 대해서는 이른바 “통신기사전재의 항변”, 즉 보도기관이 정평있는 통신사로부터 송신된 기사를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고 게재한 경우, 그 게재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송신기사의 문맥상 언뜻 보아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거나 게재 신문 자신이 오보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인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보도분야의 기사에 대해 그러한 법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송신기사의 신뢰성에 관한 정평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통신사로부터 송신을 받은 기사가 사인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보도분야의 것일 경우에도 그 사정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송신기사에 근거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상고 보조참고인의 본건 송신기사에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

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고 또한 피상고인 등의 불법행위를 부정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본건에서는 피상고인 등이 본건 송신기사에 근거하여 본건 각 기사를 게재하여 상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4. 그렇다면 피상고인 등에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된 위법이 있으며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가 있으며, 원판결 중 피상고인 등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피상고인 등의 상고인에 대한 각 손해배상액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상기부분에 대해 본건을 원심에 환송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해설〉

1. 1984년 주간문춘지의 “의혹의 총탄” 기사 연재로 발단된 이른바 “로스의혹(疑惑)” 보도에 대해 통신사로부터의 송신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다수 제기되었다.

본건은 그 가운데 이른바 “통신기사전재의 항변”의 법리가 채용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공동통신사(피상고보조참고인)가 송신한 기사를 게재한 2개 스포츠신문사에 대해 제기된 소송이다.

공동통신사는 1945년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사로 가맹사인 다수의 보도기관들과 기사배신계약을 맺고 있다.

피상고인 등도 공동통신사와 기사송신계약

을 맺고 있는데 계약에는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송신기사의 내용을 왜곡하여 편집해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게재기사마다 '共同'이라는 크레디트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뉴스의 경우 크레디트를 붙이지 않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으로 되어있다.

가맹사와 계약사는 송신기사의 게재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내용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목은 각사가 자유롭게 붙일 수 있다.

상고인은 처에 대한 살인미수사건 피의자로 1985년 9월 11일 체포되었다. 공동통신사는 동월 17일 상고인이 1978년경 자택에 대마(大麻)를 갖고 있었으며 경시청특별수사본부가 이를 찾아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송신했다.

피상고인 등은 송신받은 기사를 18일자 발행의 신문에 '共同'의 크레디트를 붙이지 않은 채 그대로 게재했다.

본건기사의 공공성, 공익목적, 기사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쟁점으로 삼지 않고 있다. 본건에서의 쟁점은 "통신기사전재의 항변"의 성립 여부이다.

2. "통신기사전재의 항변"이란 본판결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보도기관이 정평있는 통신사로부터 송신된 기사를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고 게재한 경우에, 그 게재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송신기사의 문맥상 언뜻 보아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경우나 게재신문사 자신이 오보임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미국에서는 상당수의 주에서 판례법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독일에서도 유사한 재판례가 있다.

본건의 1심판결은 신뢰성이 높은 통신사로부터 기사를 송신받았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기사의 게재, 보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배상 의무를 긍정했다.

이에 대해 원판결(2심)은 송신기사에 근거한 보도체제에는 상당한 합리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동통신사로부터의 송신기사에 대해서는 신문사가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1심과는 반대로 배상 의무를 부인했다.

원판결은 "통신기사전재의 항변"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으나 동항변과 동일한 결과를, 종전의 판례법리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 즉 고의·과실의 유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에 의거해서 처리했다고 볼 수 있다(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1966. 6. 23).

즉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만 있으면 동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행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이다.

본 판결도 이 판례법리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사인의 범죄행위나 스캔들 또는 이와 관련 있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분야에 대한 보도는 취재를 위한 인적 물적 체제가 정비되어 일반적으로는 그 보도내용에 일정한 신뢰성을 갖고있는 통신사로부터의 송신기사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현 상황에서는 보도사

실의 진실성에 대해 높은 신뢰성이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통신사로부터 송신된 기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당해 신문사에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3. 통신사로부터 송신을 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한 신문사의 배상책임의 유무에 대해서는 하급심 재판례나 학설도 이를 긍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쪽으로 갈린다.

긍정설로는, 도쿄고등재판소 판결 1995. 3. 29, 도쿄고등재판소 판결 1995. 12. 25, 田島泰彦 “송신 기사게재와 명예훼손”, “명예훼손판례의 동향-송신기사의 게재책임 등을 둘러싸고”, 前田陽一 “통신사의 송신기사에 의한 명예훼손과 게재한 지방신문사의 책임”, 浜田純一 “통신사 송신기사의 게재책임과 보도의 자유” 등이 있다.

부정설로는, 도쿄지방재판소 판결 1994. 4. 27, 도쿄고등재판소 판결 1995. 11. 27, 도쿄고등재판소 판결 1996. 4. 26, 도쿄고등재판소 판결 1996. 5. 20, 野村好弘·小賀野晶 — “명예훼손배상론의 새로운 문제점”, 紙谷雅子 “명예훼손과 송신서비스의 항변”, 大家重夫 “통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한 지방신문사의 명예훼손책임”, 増森珠美 “통신사의 송신기사와 게재신문사의 책임” 등이 있다.

본 판결은 “통신기사전재의 항변”이라는 법리의 채용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사인의 범죄 보도 등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는 “통신기사전재의 항변”을 채용하는 전제가 되는 통신사의 정평(定評)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동 항변의 채용여부에 대해서는 파고들

지 않았다.

또한 통신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신문사가 이를 자기의 책임조각사유로 원용할 수 있느냐는 관련문제도 있으나 본건에 있어서는 공동통신사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원심에서 이미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본 판결은 문제점이 있다는 시사를 하는데 그치고 판단은 내리지 않고 있다.

본 판결은 종전의 판례법리 적용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으나 통신사로부터 송신을 받은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 하급심 재판례나 학설이 갈라져있는 문제에 대해 최고재판소로서 최초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 공공성, 공익목적의 인정되는 보도에 대해, 다시 그 보도의 대상이 ‘사인’인지 ‘공인’인지, 보도내용이 범죄보도나 스캔들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검토를 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고 하겠다(그러나 본판결은 ‘사인’과 ‘공인’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4. 한편 본 판결이 있을 후, 2002년 3월 8일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공동통신사로부터 송신을 받은 기사를 게재한 지방신문의 기사와 관련, 손해배상의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본판결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동판결의 다수의견은 결론으로 신문사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판결을 파기, 사건을 원심에 환송했으나 “통신기사전재의 항변”과 관련, 전재판관이 개별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판례타임즈』, 1086호 pp.96~101.

번역: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미국 판결

비록 몰래카메라 기법을 활용한 인터뷰 내용을 방영하였으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의견이라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Balderman v. American Broadcasting Cos. Inc.
(뉴욕주 항소법원 2002년 3월 15일 선고)

판결 요지

뉴욕주 항소법원(New York Supreme Court)은 ABC 방송사가 '프라임타임 라이브(Prime Time Live)'라는 프로그램의 심장수술에 관한 보도로 인하여 한 외과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자신의 수술 실적을 거짓으로 말하였고 보도하였던 프로그램의 내용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의견 진술에 해당하고, 정도가 심한 무책임한 행동(gross irresponsibility)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사건 개요

이 명예훼손 소송은 전국적으로 방송된 피고의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인 '프라임타임 라이브'를 둘러싸고 발생하였다. 문제가 된 '수술 성적표(Surgical Scorecards)'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방영분은, 뉴욕주에서의 심장수술에 관하여 뉴욕주 보건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이 발표한 보고서에 관한 것이었다. 심장외과 의사인 원고는 '수술 성적표'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수술 실적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써 피고가 원고를 비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허위라고 주장된 프로그램의 내용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의견 진술에 해당하고, 정도가 심한 무책임한 행동(gross irresponsibility)이 아니었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청구원인을 기각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약식재판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1980년대 후반 뉴욕주 보건국은 심장수술 보고시스템(Cardiac Surgery Reporting System)을 고안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실제적인 수술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뉴욕주 병원들에 있어서 수술 실행의 질적 수준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위 보고시스템이 고안되기 이전에, 보건국은 특정한 병원에서 특정한 의사들에 의하여 시술되는 심장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의 숫자를 반영하여 전체 병원 및 의사들의 수술에 관한 원시 사망률(crude mortality rate)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 원시 사망률은 단순히 사망자의 숫자를 실행된 수술의 숫자로 나눔으로써 계산되었다. 위 보고시스템은 사망자 숫자에 나이나 종전 병력과 같은 다양한 위험 요소에 관한 데이터를 결합시킴으로써 심장

수술에 대한 좀더 복잡하고 자세한 모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위험 요소들에 기초하여, 위 보고시스템은 우선 병원들과 의사들에 대한 기대 사망률을 계산하였다. 그 다음 기대 사망률로부터의 편차를 고려하여 병원들과 의사들에 대한 위험이 고려된 사망률(risk adjusted mortality rates)이 계산되었다. 위험이 고려된 사망률은 심장수술을 받는 환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감안함으로써 원시사망률보다 수술 실적에 대한 좀 더 공평한 비교를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1990년 12월에 보건국은 뉴욕주에서 성인에 대한 심장수술을 시술하는 병원들의 위험이 고려된 사망률을 발표하였다. 원고가 심장수술을 시술하여온 Erie 카운티 의료센터는 위험이 고려된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보건국의 보고서가 조사한 당해 기간 동안의 순위가 최하위이었다. 그 당시 개별 의사들에 대한 위험이 고려된 사망률은 일반 대중에게 공표되지 않았으나, 그 대신 그 의사들이 속한 병원들에게는 제공되었다. 게다가, 그 보고서에 포함된 병원들의 경우와는 달리, 심장외과 의사들은 그들 자신의 위험이 고려된 사망률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순위가 매겨지지 않는 것이었다.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Law)에 따라 개시된 한 소송으로 인하여, 보건국은 원고를 포함하여 뉴욕주 전역의 개별 의사들의 위험이 고려된 사망률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1991년 겨울에 그 수치는 Newsday에 보도되었고, Buffalo 지역 의사들로 제한된 수치가 Buffalo News에 보도되었다. 게다가 보건국은 심장수술을 시행하는 각 병원별, 그리고 의사별로 위험이 고려된 사망률을 담고 있는 작은 책자를 준비하였다. 모

든 공표 내용은 원고의 경우 위험이 고려된 사망률 수치가 주 평균 수치인 3.32%보다 높은 8.48%이라는 것이었다. '성적표(the Scorecard)'라고 흔히 알려진 보건국의 조사 보고서의 내용이 공표됨에 따라, 피고는 환자, 의사 그리고 병원에 의하여 그 성적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 조사의 일환으로서 피고는 몰래 카메라 수법을 이용하여 원고를 몰래 인터뷰하였다. 관상동맥 이식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아들과 딸로 가장한 두 명의 피고 직원들이 인터뷰를 담당하였다. 비밀 인터뷰가 끝난 몇 일 후에, 피고의 기자인 Chris Wallace는 Erie 카운티 의료센터의 의료담당 부원장인 Bradley Truax와 공식 인터뷰를 하였다. 원고와의 비밀 인터뷰 내용을 결합시킨 Truax와의 인터뷰가 이 소송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는 Wallace와 Truax사이에 주고받은 다음 대화 내용을 '수술 성적표'라는 제목 아래 프라임 타임 라이브를 통해 보도하였다.

“Wallace : 그 성적표를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보시나요?

Truax 박사 : 아니오.

Wallace : 환자들에게 그 성적표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하거나, Erie 카운티 의료센터의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그 성적표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하도록 하시겠습니까?

Truax 박사 :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적표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Wallace :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 환자의 가족을 가장하고 들어오게 하여...

Wallace : Erie 카운티 의료센터의 의사들이 실제 환자들에게 그 성적표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rimeTime의 직원들이 의사를 찾고 있는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그 곳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1989년 및 1990년의 의사별 사망률이 주 평균 수치에 비하여 두 배 반 이상 높은 심장외과 의사 Samuel Balderman(원고)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먼저 병원들에 관한 성적표에 대하여 물어 보았습니다.

프라임타임 라이브의 보조 제작자 Michael Cowan (심장 질환자의 아들로 가장하고서) : 그러한 통계수치가 정말로 내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원고 : 그러한 통계 수치는, 우리의 견해로는,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Wallace : 그 다음에, 우리는 Balderman 박사에게 성적표상 그 개인의 실적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112명의 의사들 중 Balderman은 103번째로 랭크되었습니다.

Cowan (심장 질환자의 아들로 가장하고서) : 당신 개인은 어떠한가요?

원고 : 저는 중간쯤이었는데, 저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유형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allace : 그 의사 분은 이 성적표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Truax 박사 : 글썄요. 분명히 우리는 그 성적표를 믿습니다. 의사들 개인적으로는 그 성적표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병원은 그 성적표를 신뢰합니다.

Wallace : Balderman 박사는 자신이 중간쯤의 순위이었다고 말합니다 ... 분명히, 그는 자신이 어디쯤이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Truax 박사 : 맞습니다.

Wallace : 그가 이 환자에 대하여 솔직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Truax 박사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이유

원고는 프라임타임 라이브의 보도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자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첫 번째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속여 몰래 녹음되는 대화를 하게 만들고 또한 자신이 사기적이고, 믿을 수 없으며, 비윤리적이고,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함으로써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소송의 두 번째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사실관계를 허위로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두 번째 청구원인에서는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수술 성적표”라는 제목 하의 프로그램을 방영함에 있어 정도가 심한 무책임한 행동(gross irresponsibility)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증거개시절차가 있는 후 피고는 두 번째 청구원인을 기각하여 달라는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을 신청하였다. 원심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소송을 오래 끌 경우 발생하는 잠재적인 냉각 효과 때문에, 뉴욕주의 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적절한 경우 약식재판의 특별한 효용을 인정하여 왔다(Immuno AG, v. Moor Jankowski, 77 NY2d 235, 256). 두 번째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우리는 약식재판이 특히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명예훼손적이라고 주

장되는 방영 내용, 즉 원고가 수술 성적표상의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 내용과 자신이 성적표상의 중간쯤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솔직하지 않았다고 한 내용이 사실(facts)에 관한 진술인지 아니면 의견(opinion)에 관한 진술인지가 법원이 결정할 법률적인 판단사항이다. 그 쟁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는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 그 논조, 진정한 목적을 고려하여(위 *Immuno AG. v. Moor Jankowski* 참조), 보통 사람이 그 보도내용을 청취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일지를 결정하여야 한다(*Steinhilber v. Alphonse*, 68 NY2d 283, 290).

우리의 판단으로는, Wallace와 Truax 박사 사이의 전체 대화 내용을 들은 보통 사람이라면 명예훼손적이라고 주장되는 보도 내용이 의견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Amodei v. New York State Chiropractic Assn, 160 AD2d 279, 280 [지압사가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동(unprofessional conduct)'이었다고 비난받았던 사안], Park v. Capital Cities Communications, 181 AD2d 192, 195-196['썩은 사과'라고 묘사된 안과 의사의 사례], Hollander v. Cayton 145 AD2d 605, 606 ['부도덕(immoral)'하고 '비윤리적(unethical)'이라고 지칭하고 의사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mismanaged cases)' 하였다고 비난받았던 사안] 참조).

원고가 수술 성적표상의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 내용과 성적표상의 자신의 성적에 관하여 솔직하지 않았다고 한 내용에 앞서 그러한 발언 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먼저 자세히 밝혔고, 따라서 그러한 발언은 순수한 의견(pure opinion)의 표현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위

Steinhilber v. Alphonse 참조). 보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피고는 (1)1989년 및 1990년도에 원고의 위험을 고려한 사망률은 8.48%이었고, (2)위 기간 동안 원고의 위험을 고려한 사망률은 뉴욕주 평균 수치보다 2.5배 이상이었으며, (3)현재 뉴욕주에서 시술 중인 심장외과의사 112인 중 원고의 순위는 103번째이었는데, (4)원고는 자신이 중간쯤이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솔직함이 부족하였다고 한 문제의 보도 내용은 이를 시칭한 보통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개인적인 추측'으로 이해될 것이다(*Gross v. New York Times Co.*, 82 NY2d 146, 155 참조).

원고는 명예훼손적이라고 주장되는 보도 내용이 '심한 왜곡' 또는 '잘못된 사실의 묘사'이고 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혼합된 의견(mixed opinion)'에 해당한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위험을 고려한 사망률이 정확히 기재된 '수술 성적표'에 의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그 수치를 뉴욕주의 평균 수치와 비교하였으며, 그리고 원고의 위험을 고려한 사망률을 다른 의사들의 수치와 비교하여 뉴욕주에서 시술 중인 심장외과의사 중에서의 원고의 순위를 판정하였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통계 자료는 피고의 보도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의사들 사이의 위험을 고려한 사망률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술이 그 성적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보고서에 대한

피고의 보도 내용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다.

나아가 그 성적표에 나타난 위험을 고려한 사망률 수치와 보건국의 데이터로부터 피고가 계산한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 볼 때, 문제된 피고의 보도 내용은, 설사 이를 사실의 주장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명백히 허위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그 성적표에 담긴 통계수치의 신뢰도를 다루는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실적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함에 있어 원고가 솔직하지 못하였다고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정도가 심한 무책임한 행동(gross irresponsibility)을 피고가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통계학적 자료들은 피고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던 만큼 피고의 과실도 입증하지 못하였다.

피고의 보도 내용이 적법한 공공의 관심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통상 합리적인 사람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데에 기울이는 정도의 적절한 고려 없이 극심하게 무책임한 방식으로 행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Chapadeau v. Utica Observer Dispatch, 38 NY2d 196, 199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고안된 확인 방법을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피고는 문제된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수술성적표 상의 원고의 실적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보건국에 의하여 공표된 권위있는 공식 자료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게다가 성적표의 작성에 참여한 보건국의 직원을 포함한 신뢰할 만한 정

보원에게, 그 성적표상의 통계수치에 의하면 원고가 중간쯤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피고가 그 성적표의 신뢰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지지하는 신뢰할 만한 다른 정보원의 자문을 얻었다는 사실이, 환자 가족으로 가장한 피고의 직원에 대한 원고의 답변이 솔직하지 않았다고 규정함에 있어 피고가 극심하게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고 배심원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라고 불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 성적표에 대하여 비판적인 인사들이 제공한 정보들을 생략하거나 경시한 피고의 결정은, 법원이나 배심원이 적절히 기능하기 곤란한 편집자의 판단(editorial judgement)에 해당한다(Rinaldi v. Holt, Rinehart & Winston, 42 NY2d 369, 383).

마찬가지로, '수술 성적표'편 방영내용의 편집 경향에 관한 증거들이 피고의 극심한 무책임성에 관한 사실 인정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피고측의 약식 재판 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방영 내용의 제작자가 환자로 가장하여 인터뷰를 수행하는 방법에 관하여 지시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필기 메모를 제출하였다.

“밀어붙여

좀더 고집스럽게

그들을 자극

위험을 감수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해

더 걸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해

그들을 위협에 빠뜨려”

설사 그 메모가 피고의 직원들의 주관적인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가 극심한 정도로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입증의 기준은 피고측의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다. '수술 성적표'편의 조사, 준비 그리고 방영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피고가 그 보도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합리적인 수단들을 동원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측의 주관적인 의도로 인해 그러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그 프로그램에서 자신으로 하여금 큰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반대로, 원고는 비밀 인터뷰에서 자신의 답변은 전부 사실이고 또한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행동이 극심하게 무책임하지 않았고, 원고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추가적인 이유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청구원인을 약식재판으로 기각하여 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

또한 피고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청구원인을 기각하여 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를 속여서 몰래 카메라 수법의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였고, 편집작업을 통하여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비윤리적이며, 무능력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원인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청구원인과 구별할 수 없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원인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원인의 복제품으로서 기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의 결론은 변경되어야 하고, 피고의 약식재판 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

출처 : Media Law Reporter 30권 pp.1729-1734

번역 : 장상균 (서울고등법원 판사)



프랑스 판결

공개적인 행사에 참여한 모습을 촬영·게재하였더라도 초상의 본질을 왜곡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판례명 : Henry et Couvreur v./ L'Express

판결법원 및 판결일자 : 프랑스 파리지방법원(Tru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2002년 2월 25일

사실관계

청구인들인 안-소피 앙리 부인(Ane-Sophie Henry)과 안 쿠부뤼(Anne Couvreur)

부인은 주간지인 렉스프레스(L'Express)지가 '국제여성의 날' 행사 직후에 열린 종교적 행사에 참가한 자신들의 사진을 '1998년 파리 생-위타쉬 교회에서 조직한 십자가의 길'

이라는 제목 하에 보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초상을 왜곡시키고 초상의 존엄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파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판시사항

민법 제9조(사생활보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자신의 초상의 이용과 공개는 초상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다. 따라서 개인의 초상은 본인이 특별히 명시적으로 초상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한, 타인에 의한 본인의 초상 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개인의 초상권은 언론기관이 공중을 상대로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유럽협약'(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 de l'homme et des libertés fondamentales) 제10조 제1항의 규정과 조화되어야 한다.

공적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특정인의 사진을 언론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서 그에 대한 언론의 논평이 당사자의 초상 내용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언론은 개인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 보건대 청구인들은 '세계청년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종교적 집회에서 '십자가의 길'로 명명된 도로상 시위에 자의적으로 참여한 점이 인정된다.

제소된 문제의 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진에서 다른 사람들은 일부만이 드러나 있지만 청구인들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런데 렉스프레스지에서 보도한 사진 중에는 청구

인들의 사진만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젊은 여성도 다른 쪽에 드러나 있다. 이 여성도 이번 집회에 같이 참여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시위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이 사진촬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진의 게재과정에서 렉스프레스지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이번 경우와 같이 공적인 시위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은 이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지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공적인 사건의 직접적인 보도를 위하여 사진을 게재할 경우에는, 보도된 사건과의 관련성과 정보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주간지인 렉스프레스지는 '국제여성의 날' 행사 직후에 종교적 행사에 따른 '1998년 파리 생-위타슈 교회에서 조직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 하에서 이들 문제의 사진을 게재한 점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집회는 1998년에 개최된 것이 아니라 1997년에 개최되었으므로 렉스프레스지의 기사는 이 점에 관한 한 오류가 인정된다. 또한 이날 집회 및 시위의 출발지도 렉스프레스지의 보도 내용과 상이한 점도 인정된다. 하지만 청구인들이 이 시위에 참여한 점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렉스프레스지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 하에 행해진 시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보도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렉스프레스지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진의 보도는 언론으로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이 렉스프레스지가 청구인들의 사진을 보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초상을 왜곡시키고 초상의 존엄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 기사를 읽는 독자의 감정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이와 같은 종교적 집회에 참여한 것은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청구인들이 이와 같은 공적 집회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보도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바로 이와 같은 보도의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청구인들이 여성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참여한 시위에 관한 사진을 보도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초상권을 왜곡한 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기사의 제1부는 청구인들이 참여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 기사의 제2부에서는 “90%의 전도사가 여성이었다. 이들이 없었다면 카톨릭 신앙이 프랑스에서 자리잡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쓰여져 있는 바, 이 기사는 단지 프랑스에서 카톨릭 전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앙리 여사와 쿠브뤼 여사는 전도사가 아니며 이 점에 관한 이 기사에서는 분명히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보도된 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자신들에 대하여 기사 여러 군데에서 비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인용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모성애라는 것은 불쾌감을 자아내는 길거리 여자나 악마 또는 바보 같기도 하다. ... 여성은 남성보다 불

충분하게 창조되었다. ... 또한 남성이 주인이라면 여성은 노예와 같다. 그것이 바로 신이 원하는 바이다. ... 예수의 생애에서 궁극적으로 부차적인 역할 밖에 하는 것이 없는 마리아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유일하게 겨우 사귄 만한 암컷이 될 것이다. ... 만약 남성이 여성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악마 같은 암컷인 여성에 대한 남성 자신의 과오다. ... 사악한 육신인 암컷의 접촉을 제한하기 위하여, 인간은 이미 17세기에 속옷의 안쪽 적절한 곳에 구멍을 뚫은 ‘기독교인이 착용할 속옷’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것을 만들어 낸 바 있다. ...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기독교계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은 여자를 혹평하기 위하여 빈정대는 일에 정열을 쏟아 부은 바 있다. ... 우리는 구토와 배설물을 접하기 싫어하면서 어떻게 이 배설물통을 우리의 양팔에 안을 수 있겠는가.”

위에서 언급한 기사의 내용들은 기독교계에서 여성의 위치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하고 있다. 기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공격’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이 중에서 많은 ‘역사의 군더더기들’을 치워버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해당기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기사는 기독교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제2차적이며 중요하지도 않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여성해방의 필요성을 적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제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여성의 지위는 이제 더 이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에 관해서 문제된 사진을 게재하면서 행사를 보도한 것이다.

첫 번째 표현과 관련하여 특히 카트린 영여사 같은 이는 '영국국교에 의한 첫 번째 반향'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 견해를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예배장소에서 여성을 배제한다거나, 이슬람교에서 여성의 두건 착용과 같은 내용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프랑스 카톨릭교에 관해서는 두 장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첫 번째 사진은 렉스프레스지 92면에 게재되어 있는 바, '세계 청년의 날' 행사에서 기도하고 있는 두 여인을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는 "교회에 정상적으로 다니는 카톨릭 교인의 75%는 여성인데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 부연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진설명과 사진에 게재된 여인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이 분명하다.

두 번째 사진은 이 사건에서 제소가 되어 있는 문제의 사진이다.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사진설명 그 자체가 청구인들의 초상을 왜곡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앙리 여사와 쿠부뢰 여사는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여성의 열악한 지위와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이와 같은 여성의 열악한 지위로부터의 해방을 논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입증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시위에 참여한 초상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보도한 것에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렉스프레스지가 여성의 열악한 지위에 관해서 기술하면서 청구인들의 시위 장면이 담긴 사진을 동시에 게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요소가 상호 연계되어 청구인들의 초상을 왜곡시킨 점이 인정된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청구인들의 초상을 침해함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주 문

렉스프레스사는 청구인들에게 1500 유로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할 것을 명한다.

신민사소송법 제700조의 규정에 따라 750 유로씩 청구인들에게 배분한다.

그밖에 청구인들이 제소한 아타르-아메다니-아바스 씨와 마킴 포토사 및 프랑스 사진 보도기자협회는 책임이 없다.

해 설

사안은 1997년 여름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청년의 날' 행사에 참가한 두 여성이 기도하는 모습을 렉스프레스지가 게재한 것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이 판례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한 그간의 판례의 흐름과 원칙적으로 부합한다.

언론에서 개인의 초상을 보도하는 것은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유럽협약’ 제10조에 비추어 본다면, 당사자의 사전적 동의가 없는 초상의 보도는 당사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비난받을 수 있다.

이 판례는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첫째, 민법 제9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에 기초한 이른바 초상권은 ‘인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유럽협약’ 제10조에 기초한 정보의 자유보호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전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둘째,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인의 초상을 언론기관에서 보도할 경우에 어떤 특정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사진을 보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련성은 그 초상의 공개가 특정 사건을 곧바로 보도할 경우와, 비록 사건이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언론에서 보도할 경우라도 그것이 언론이 갖는 정보에 대한 권리의 필요성에 따른 경우라야만 한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이른바 ‘따끈따끈한’ 정보와 ‘열기가 식은’ 정보를 동시에 포괄하여 정보에 대한 권리의 필요성에 비추어 초상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판례는 초상 보도에 있어서 사전적 동의라는 원칙에 대하여 다소 탄력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언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점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언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이유는 사전적 동의를 확보하지 않았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초상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증은 논란의 소

지가 있다.

즉 이 판례에서는 종래 프랑스에서 대법원을 비롯하여 각급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초상권침해와 관련하여 정립된 사전적 동의와 인간의 존엄권이라는 논증을 채택하기보다는 초상사용에 있어서 인격의 왜곡이라는 논증에 기초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바로 그 점에서 제소된 사건의 기사에서는 청구인들의 종교적 신념을 왜곡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문제된 것이다.

이 점에서 이 판례는 중요한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즉 초상과 기사의 내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그 기사의 내용이 초상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언론보도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을 통하여 초상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법원이 언론보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언론은 기사내용과 초상 사이의 연관성을 정당화시켜야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언론보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법원의 개입이 자칫 언론기사 일반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질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 : LEGIPRESSE 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통권 192호, 2002년 6월호 (제16호), pp. 109-113.

번역 및 평석 : 성 낙 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독일 판결

**작고한 유명 정치인이 만일 생존해 있었다면
특정 정당을 지지했을 것이라는 표현은 의견발표의 자유에 포함
되는 것으로 사자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법 제1조, 제2조; 민법 제823조, 제1004조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001. 4. 5.자 결정 - 1 BvR 932/94

1. 사자(死者)의 인격권을 보호할 때 헌법상의 심사기준은 헌법 제1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기본법 제2조 제2항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전시킬 권리를 통한 사자의 보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사자의 인격 보호의 문제를 헌법에서도 출할 경우에 나타나는 차이점은, 의견의 발표의 자유가 일반적 인격권과 충돌할 때에는 형량되어지는 반면 인간의 존엄성은 의견의 발표의 자유와 충돌할 때에 형량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충돌하고 있는 자유권이 헌법에서 인정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연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성립요건은 적절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4. 선거전에서 우파 정당이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작고한 유명한 사회민주주의자인 어떤 정치가가 오늘날 이 정당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사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헌법소원 제기자는 1979년에 사망한 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브레멘시의 시장이었던 빌헬름 카이젠의 딸이다. 1991년 9월 브레멘시의 시장선거가 있기 전에 독일민중연합(DVU)이 “독일 주간지”라고 이름을 붙인 선거용 신문을 발간하였다. 4면의 이 신문은 브레멘시 가구에 약 33만부가 배포되었다. 3면에는 “그들도 DVU를 선택할 것이다”는 제목 하에 빌헬름 카이젠, 쿠르트 슈마헤르, 후리드리히 에버르트 및 후리드리히 앵겔스의 사진들이 있다. 사진에는 당해 정치가가 한 말들이 쓰여져 있다. 카이젠의 사진 옆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1945년부터 1965년까지 브레멘시의 시장이었으며, 국가사회민주주의자인 빌헬름 카이젠, 그가 말하기를 자유가 없는 독일은 독일이 아니다. 브레멘은 우리 전 민중의 수탁자이다. 예전에는 제국의 유일한 수탁자로서 언제나 생각되었다. 우리의 전임자들은 이곳에서 옛 독일 황제의 사진들을 이유 없이 걸

지 않았다.”

그 외에 3면의 오른쪽 아래에 빨간색 바탕에 흰색으로 “전적으로 우리의 의견과 같다. DVU”, 그 면의 아래쪽에는 커다란 글씨체로 “독일인은 선택한다. DVU”라는 표현이 쓰여 있었다.

카이젠이 한 말은 중요부분이 1965년 브레멘시의 정부위원회 총재 퇴임시에 한 연설에서 발췌된 것이다.

1심에서 헌법소원 제기자는 빌헬름 카이젠은 DVU를 선택할 것이라든가 주장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DVU에게 요구하였다. 지방법원은 소를 인용하였다. 1심에 대해 피고는 상소하였고, 지방상급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바꾸고 소를 기각하였다. 지방상급법원은 다툼이 있는 선거광고가 빌헬름 카이젠의 사후 인격의 보호를 고려할지라도 기본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판시하였다. 다툼이 있는 말은 의견의 발표이고 사실의 주장이 아니라고 한다. 이는 분명히 입증할 수 없는 가정적 사실을 주장한 것이다. 공개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특히 선거전에서 한 이와 같은 의견의 발표는, 그것이 빌헬름 카이젠의 인격적인 상(像)에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라도 자유로운 의견발표의 자유의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행위가 인간에게 귀속되는 가치의 경시를 나타내는 표현일 경우에만 침해가 인정된다. 합법적 정당 DVU의 잠재적 지지자가 된다는 주장은 카이젠 스스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졌다할지라도 카이젠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표현은 DVU에 대한 지지가능성이 사회민주주의적 범주에서도 강조된다는 목적에 이바지하였다. 카이젠에 대한 중상모략 또는 인신공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카이젠의 일반

적 인격권은 침해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기본법 제2조 1항 규정의 보호작용은 사람의 사망으로써 소멸하기 때문이다.

지방상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써 헌법소원 제기자는 아버지의 사후 인격권 및 그 자신의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빌헬름 카이젠의 사회적 가치 보호청구권이 사후에도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항변한다. 이 청구권은 카이젠의 딸로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버지를 공격함으로써 그녀 자신의 존중 및 가치보호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빌헬름 카이젠이 아직도 살아 있을 경우 그가 DVU를 지지할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의견발표의 자유의 보호에 포함될 수 없는 사실의 주장이며, 사람들이 이러한 표현이 의견의 발표라고 보는 경우에도 그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인신공격이라는 것이다.

판시이유

헌법소원에 대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 헌법소원이 제기한 헌법상의 문제는, 한 정당이 선거전에서 행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의견의 발표에 대한 보호에 관한 것이다. 법적인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이다(BVerfGE 30 S. 173 : 61 S. 1과 비교하십시오).

헌법소원 제기자의 견해와는 달리, 이의가 제기된 지방상급법원의 판결은 기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빌헬름 카이젠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방법원 및 지방상급법원은 민법 제1004조 제1항 2호 및 제23조 제1

항의 해석과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헌법과는 무관한 이러한 민법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은 민사법원의 영역이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판결에서 관계가 있는 기본권의 의미와 범위를 참작하여야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기본권이 부여하고 있는 가치의 의미가 유지된다(BVerfGE 7 S. 198 205ff.와 비교하시오: 판례의 일관된 견해임). 그 이유는 권리다툼은 헌법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사법상의 권리분쟁으로 남아 그 해결은 사법상에서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는 지방상급법원이 처음부터 민법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헌법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의가 제기된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는 사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권리분쟁의 양 당사자의 기본권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간과된 때 및 고려될 수 있는 기본권의 보호범위가 부정확하고 불안정하거나 그 중요함이 부적절하게 평가된 때인데,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사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양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형량이 침해되고, 판결은 이러한 하자에 기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BVerfGE 1이 S. 361(388) = AfP 2000 S. 761과 비교하시오).

이의가 제기된 문맥에 들어 있는 DVU가 한 의견의 발표는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 이 기본권 규범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견해를 언어, 문자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발표하고 전파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의견은 사실의 주장과는 달리 발표자의 주관적 견해에 의하여 발표의 대상으로 된 것이 특징이다(BVerfGE 90 S. 241

(247ff.) = AfP 1994 S. 126 : BVerfGE 93 S. 266 (289) = AfP 1996 S. 56과 비교하시오). 기본권의 보호는 표현이 이성적인 것이든지 또는 감정적인 것이든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든지 또는 근거 없는 것이든지 그리고 타인에게 유익한 것인지의 여부 또는 오해를 유발하거나 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지의 여부 또는 가치가 있거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BVerfGE 30 S.336(347): 33 S. 1(14): 61 S. 1 (7): 93 S. 266(289) = AfP 1996 S. 56: NJW 2001 S. 591 (593), 2000, 12, 1 판결). 사실의 주장도 여론 형성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기본법 제5조 제1항 1호의 기본권 보호의 범위 안에 있다(BVerfGE 61 S. 1(8): 94 S. 1(7)과 비교하시오).

빌헬름 카이젠의 사후 인격권 보호에 대한 헌법의 판단기준은 기본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불가침성의 원칙이다.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으로써 공권력에 대하여 모든 인간을 멸시, 낙인, 박해, 무시 및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및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인간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가치를 저하시키는 그 밖의 것에 대하여 보호받을 의무(BVerfGE 1 S. 97(104): NJW 2001 S. 591 (593)는 사망으로써 종결된다(BVerfGE 30 S. 173 (194)과 비교하시오). 이것과는 상반되게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도출된 인격을 자유로이 전개할 권리는 사자를 보호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기본권의 담당자는 오로지 살아 있는 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BVerfGE 30 S. 173 (194)과 비교하시오).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과 연결하여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도출하여 발전된 일반적 인격권이 헌법에서

인정되었다고 하여, 이것이 이의가 제기된 판결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서 귀결된 사후(死後) 인격권 보호는 일반적 인격권의 작용과 동일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과 일반적 인격권간의 차이에 대해 강조한다.

차이는, 의견의 발표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량되는 반면 인간의 존엄성은 의견의 발표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형량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BVerfGE 93 S. 266(293f.) = AfP 1996. S. 56). 한편, 사자의 경우에 인간에게 귀속되는 일반적인 존중에 대한 요구권이 인정된다. 이는 특히 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멸시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BVerfGE 30 S. 173(194)과 비교하시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통하여 획득한 도덕적, 개인적 및 사회적 가치는 보호된다. 하나의 처분이 사자의 인격권의 보호범위를 침범한 것이 확실하다면 곧바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 사자의 인격권 보호 문제는 법적 지위의 형량의 방법으로 결코 상대화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침해는 충돌하고 있는 자유권들이 법률에서 인정되었다는 것. 말하자면 의견발표의 자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BVerfGE 75 S. 369(380)과 비교하시오). 그러나 개개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비슷한 기본권이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의 기본권의 이용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언제나 신중한 근거제시가 요구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BVerfGE 93 S. 266(293) = AfP 1996 S. 56과 비교하시오).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침해가 있어야 한다. 직업활동에 의하여 획득한 객관적 가치를 침해할 경우에는 예컨대 객관적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나 그것을 상당히 왜곡한다면 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족하다. 그와 같은 침해가 구체적인 의견의 발표에 있어서 존재하는지 여부는, 문맥에서의 그 의미를 고려할 때만 설명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선거전에서 문제된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포함시켜 생각하여야만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었는지 그 적절성은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의 주장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 또는 주관적 견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

지방상급법원이 다툼이 된 표현을 기본법 제5조 제1항 1호의 규정이 보호하는 가치평가로 본 것에 대해 상반되는 헌법상 고려할 만한 점은 없다. 지방상급법원은 타당하게 헌법소원제기자가 이의를 제기한 문장은 입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방상급법원은 그 표현은 전체적으로 다가오는 선거전 표현으로 보았는데 말하자면 사적 또는 경제 거래에서의 사익을 위한 표현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자유롭고 공개된 정치적 과정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선거전에서는 정치적 견해 대결이 최고도로 집중되어 있어 의견발표의 자유라는 거부할 수 없는 의미가 있다(BVerfGE 61 S.1(11f.) = AfP 1982 S. 215과 비교하시오). 기본법 제21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은 국민이 정치적 견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이는 이러한 견해형성의 가장 중요한 형

태인 선거에 참여할 때에 생긴다(BVerfGE 52 S. 63(82f.): 61 S. 1(11) = AfP 1982 S. 215와 비교하시오). 정당들은 기본법 제21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진 선거준비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한다(BVerfGE 8 S. 51(63): 61 S.1(11) = AfP 1982 S. 11과 비교하시오). 이 사명은 정치적인 견해다툼에 있어서의 중요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용에 대해선 부담이 가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견발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DVU에 대해 가해져서는 안된다. 그 표현이 전적으로 예측 내지 전망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는 전혀 중요치 않다. 이 문제는 충돌하는 법익을 형량할 때에 중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것이 인정될 때에는 당연히 형량의 문제는 배척된다.

정치적인 선거전에서도 당사자들의 의견발표의 자유는 의견의 발표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의 인간의 존엄성은 보호된다고 하는데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 이 점을 지방상급법원은 오해하지 않았다. 다툼이 있는 표현에 의하여 빌헬름 카이젠의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지방상급법원의 판단은 헌법상 이의가 제기될 수 없는 것이다. DVU가 행한 표현은 빌헬름 카이젠의 말을 정치적 선거전에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그 표현은 카이젠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빌헬름 카이젠을 DVU의 지지자들 속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빌헬름 카이젠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표현을 법률적으로 평가해 보면, 빌헬름 카이젠이 행한 정치적 행태가 사실적 관점에서 볼 때에 부적절함을 나타내는 표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 법적 논쟁의 대상은 오히려 DVU가 발행한 선거용 신문에 포함된 1991년도에 아직도 살아 있었다면 빌헬름 카이젠이 가졌을 잠재적인 지지결정에 대한 저자의 견해이다. 편견이 없고 이성적인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선거전 문구가 상업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광고문구와 비슷하게, 선거 승리를 위해 다소 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는 종종 왜곡된 상(像)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빌헬름 카이젠의 공적인 명예는 예컨대 그의 말이 부정적인 캠페인의 일부로 사용되어질 경우와 같은 특별한 상황 하에서만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전망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맥과 연결해 볼 때, 그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번역 : 손원선 (한국디지털대학교 법학과 교수)

출처 : AfP 4-2001, 32. Jahrgang SS. 295-298 □

영국사례 1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는 반드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불만신청

South Wales Evening Post의 2002년 4월 8일자 “아파트에서 벌어진 불행한 도끼 폭행사건” 제하의 기사내용이 부정확하여, 보도실천강령 제1조(정확성)를 위반했음에도 그러한 오보를 즉각적으로 정정하지 않았다고 불만신청을 제기됐다.

불만신청은 수용되었다.

문제의 기사는 흥기를 든 한 남자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동안 지역 주민들은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그 남자는 신청인과 소원해진 남편이었고, 이 사건이 신청인 부부와 신청인의 새 남자친구가 연루된 가정불화 때문이라고 암시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사에서 언급된 남자친구는 단지 이웃일뿐이라

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부정확한 기사내용으로 인해 자신과 자녀들이 소원해진 남편의 폭력 위협에 시달릴 것을 걱정했다. 신문사는 신청인에게 정정 기사를 즉각 게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동안 아무런 기사도 신지 않았다. 불만신청이 PCC에 제출됐을 당시에는 신청인의 남편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신문사는 오보를 지적받음과 동시에 정정 기사를 준비했으나, 의사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사를 게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사과했다. 오보를 정정한 짧은 후속기사는 5월 22일 게재되었다. 신청인은 불만족스러워 하면서 이 정정기사는 거의 두 달 전에 실린 전면 기사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결

첫 신문기사의 내용에서 신문사가 부정확하게 보도한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PCC는 이번 사태를 치유하고자 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고려하고자 한다.

PCC는 신문사의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하면서 “명백히 부정확한 기사가 게재된 것을 인지하면 반드시 즉각 이를 정정해야 한다”는 보도실천강령 제1조(정확성)의 규정을 충실히 따라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의 지연이 비록 비의도적인 점을 참작했지만 그 오보를 정정하는데 6주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것은 엄연한 사실로써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PCC는 짧은 후속 기사를 포함한 정정보도가 문제의 기사를 언급하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던 점은 이 불만신청 사건에서 너무도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영국사례 2

성범죄 기사는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불만신청

템즈 벨리 경찰은 익명의 성폭행 피해자를 대신해서 The London Metro에서 2002년 5월 27일 게재한 성범죄 관련 기사가 보도실천강령 제12조(성폭행 피해자)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불만신청은 수용되었다.

문제의 기사는 젊은 여성이 성폭행 당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는 사건이 일어난 도시명과 폭행 정황에 대한 상세 정보를 실고 있다. 나이, 최근의 건강문제, 사건이 발생한 고향 집 등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경찰 대변인은 그 기사는 지나치게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문사는 폭행사건이 발생한 특정 지역 및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평 결

범죄 피해자는 너무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으므로 보도실천강령 제12조는 편집인에게 매우 막중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 조항은 신원공개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신원공개를 초래하기 쉬운 정보의 게재도 금지하고 있다. 모든 편집인은 반드시 이 조항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떠한 공익의 보호도 있을 수 없다.

이 불만신청 사건에서, PCC

는 문제의 기사가 폭행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신원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 보도실천강령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PCC는 이 불만신청을 수용하면서, 성범죄를 다루는 기사에서 취해야 할 세심한 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이외의 사소한 설명도 범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실천강령 제12조의 목적은 피해자의 익명성 유지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영국사례 3

16세 이하 청소년의 인터뷰 기사는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해야

불만신청

S. Granton 씨는 자신과 남편의 동의 없이 Daily Post지의 기사가 신청인의 딸(15세)과 인터뷰를 하고 딸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부당하게 기사화하여 보도실천강령 제6조(청소년 보호)를 위반했다고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불만신청은 받아들여졌다.

문제의 기사는 신청인 딸의 인

터뷰를 토대로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중년 여성 살해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한 딸의 반응을 다루고 있다. 또한 기사는 신청인 딸의 사진과 함께 그 소년과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실었다. 신청인은 그녀가 동의하지 않은 딸과의 인터뷰를 끝낸 기자들이 자신에게 접촉했을 때, 딸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다시 신청인 딸과

접촉했다. 신청인은 소년이 체포될 당시 자신의 딸이 살인자의 여자친구라고 진술한 기사는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신청인의 딸이 인터뷰와 사진촬영에 동의했다고 말하면서 신청인 딸의 진술이 살인자의 성격을 새롭게 조명했기 때문에 부모 허락 없이 소녀에게 접근, 공익에 봉사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의 부정확성 주장과 관련하여, 신문사는 “지나해, 나는 석 달 동안 때때로 그의 여자친구였다”는 언급을 내세우며 반박했다.

평 결

16세 이하의 아동복지와 연루된 인터뷰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석 또는 동의 하에 행해져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보도실천강령의 조항에 따라 신청인 딸의 인터뷰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다. 신청인의 딸은 16세 이하로서 중요한 것은 분명 그녀의 복지다. PCC의 주요한 문제는 강령의 조항을 넘을 수 있을 만큼 예외적인 공익성이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PCC는, 명백히 보도실천강령에서 16세 이하의 청소년과의 인터뷰를 할 때 동의할 책임이 있는 소녀 부모의 바램이 무시

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살인자가 어떤 가수의 음악에 관심이 있고, 이상한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 등이 보도실천강령 위반을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

한편 PCC는 신청인의 딸이 소

년과 어울려 다닌 것이 체포 당시인지, 몇 달 전인지와 관련해 주장되고 있는 부정확성은 전체 기사 문맥상 보도실천강령 제1조의 위반을 제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호주사례 1

독자 기고문일지라도 신문사의 편집방침에 따라 게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문을 실어 주어야

신문평의회는 그리스계 호주인 단체가 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에 대한 반론을 수용하지 않은 시드니에서 발간되는 그리스어 신문인 The Vema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수용했다.

불만신청은 그리스 정교 호주 관구(管區)의 대주교인 Archbishop Stylianos가 그리스어로 작성한 서명 기사를 호주 관구가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신문에 기고하면서 비롯됐다.

기사는 해외에 살고 있는 순수 그리스인들의 세계평의회(SAE, 그리스어 약자), 특히 오세아니아 세계평의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다. “과격적이고 분열하는, 거짓과 사기”와 같은 단어가 신문평의회에 접수된 영어 번역문에서 발견되었다.

불만신청은 세계평의회 부의

장이며 오세아니아 지국장인 Costa Vertzayias 씨가 제기했다.

오세아니아 지국장은 대주교의 기사에 대한 상세하고 장황한 반박문을 작성해서 그 신문사에 보냈고 편집자는 이를 게재하겠다는 의사를 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박문은 게재되지 않았다.

양측간의 핵심 논쟁에 대해 신문평의회가 평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문평의회는 신문사가 반박 편지를 게재하거나, 신문 기사를 통해 SAE의 견해를 다루려고 어느 정도 노력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그 기사가 관구가 소유한 신문에 실린 대주교의 서명기사일 지라도 이것은 변함없는 호주신문평의회 의견이다. 그러므로 불만신청을 수용한다. □

호주사례 2

보도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신청인의 편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으므로 불만신청은 정당

신문평의회는 호주 Financial Review지에 실린 전직 정치인과 군 장비 공급에 관련된 일을 하던 국방부 퇴역 간부의 고용과 관련한 칼럼에 대한 퇴역 해군소장 Nick Hammond 씨의 불만신청을 수용했다.

문제의 칼럼은 전 국방부장관인 Peter Reith가 2002년 초 거대한 회사의 컨설턴트로서 임명되자,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군과 방위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신청인은 문제의 칼럼에서 Reith 씨의 임명보다 앞선 두 명의 선임 중 한 명으로 거명되었다. 칼럼 집필자는 두 사람 모두 "전역자 취업에 대한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고", 관련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해 상충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간행 직전에 Financial Review지는 Hammond 씨의 동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논평을 구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Hammond 씨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신청인은 이해상충으로 간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사내용의 몇 가지 부정확성에 대해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편집인에게 자신의 견해에 맞게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나 그 편지는 게재되지 않았다. Financial Review지는 신청인의 요청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

신문사는 칼럼내용은 "정부와의 계약에 총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정치가와 주요 국방각료의 입사문제"를 상세히 조사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호주신문평의회는 신문사가 신청인의 상황을 가능한 이해 상충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신문사는 그의 불만신청 편지를 오피니언면에 게재하거나 후속 기사 형식으로 게재했어야만 했다고 판단했다. □

호주사례 3

기사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로 입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불만신청은 부당

호주의 신문평의회는 New-South Wale에서 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 대한 인종편견을 야기하는 선거보도와 관련, Sydney Morning Herald 지를 상대로 한 James Saleam 씨의 불만신청을 기각했다.

그 기사에서 불만을 제기한 Saleam 박사는 난민에게 전단을 배포하는 호주 First Party의 일원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문제 기사는 신청인이 극단적인 정치 집단인 National Action의 전임 총수였다고 밝

히고 있다. 그 기사는 신청인이 소화기 공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1991년 National Action 일원 중 한 명이 살해당한 사건과 연루되었지만 무죄 판결 받은 경력 등을 다루고 있다.

신청인은 유죄판결을 받은 과거 행적 및 전단 배포행위 등을 다루고 있는 문제의 보도내용에서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악명 높은 사람으로 폄하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독자들이 자신을 의심스

런 인물로 단정짓게 하고 그가 책임지고 있는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신문사가 자신이 살인에 연루되었고 그의 전화가 정보기관에 의해서 도청되고 있다는 정보를 실수로 게재해서 신문평의회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청인은 기사가 사실을 오도했으므로 편집자는 그의 편지를 게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평의회는 Saleam 박사에 관한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신청인에 대한 비방이 발생하지 않았고, 신문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Sydney Morning Herald지

가 Saleam 박사가 1991년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로서 이를 보도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한 보도가 무성하기 마련이다.

신문평의회의 견해에 따르면, 기사에서 이런 사실의 언급은 독자에게 전달할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신청인은 기자와 대화하는 동안 핵심적인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미 밝혀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의 적시가 신청인에 대한 비방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의 기사는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고, 단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

곳한 공급원료 중에 하나로서, 휘발유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원유의 부산물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기사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원유를 발암물질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고, Stovac공장 항구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노동자는 원유 정제가 그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린피스 대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기사내용 중에는 '입증된 발암물질'이라는 표현도 포함하고 있다.

신문사는 기사가 Mobil사측과 접촉했고 기사게재 전 신청인측의 반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실, 기사는 나프타의 선적을 확인시켜주는 Mobil사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 회사는 기자와의 토론은 나프타에 관한 것이었지, 원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면 나프타와 원유의 차이를 지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인 회사가 "위험 물질 없어"라는 제목으로 보낸 편지는 The Advertiser사에 이틀 후 게재되었다. 문제의 기사내용의 핵심이 나프타와 암을 연결짓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항변이었다. Mobil사의 아델라이드 원유정제소는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없고,

호주시례 4

시민의 건강과 관련한 민감한 주제를 다룰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보도하여야

신문평의회는 2002년 8월 초 호주 남쪽의 Port Stanvac에 소재한 회사의 원유정제소의 나프타 선적과 관련해서 The Advertiser지 기사에 대한 Mobil Australia사의 불만신청을 수용했다.

신청인 회사는 2002년 8월 1

일자 기사가 회사에 많은 피해를 유발할 정도로 부정확하다고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문제의 기사는 Queensland의 실험용 원유 공장에 나프타 선적과 원유의 발암성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Mobil사는 나프타는 세계에서 가장 깨

생산물은 호주의 다른 원유 정제소에서 사용 가능한 가장 깨끗한 공급원료 중에 하나라고 단순하게 진술했다.

신문평의회는 기사의 민감성을 의식하고, 공중의 건강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 언론에 지워진 의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진술이 원유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

는 이 사건 기사내용에서 나프타와 원유의 차이는 잘못 정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원유는 Stanvac 항구에서 선적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사 내용에서 그 차이를 적절히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신문평의회는 평결과정에서 신문사는 신청인 회사의 입장을 신문에 게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지 않았다.

작은 공동체 집단에서는 용의자를 포함해 이 사건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게재된 기사를 통해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신청인이 인터뷰에 동의했다고 해서 범죄 희생자의 이름의 게재가 허락된 것이라고 가정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문사측은 신청인이 이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한다면, 성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이름도 드러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포괄하는 평의회 규정에 따르면, 기사에 중대한 공익이 있을 때만 사적인 정보의 게재가 가능하다. 신문평의회는 이번 사건에서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신청을 수용한다.

신청인은 또한 신문사가 자신에 대해 왜곡하였다고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신문사측이 신청인이 당한 범죄에 대해 경찰의 만족스럽지 못한 대응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평의회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왜곡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

호주사례 5

범죄사건의 피해자가 인터뷰에 동의하였다하여 자신의 신원 공표를 허락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신문평의회는 Northern Territory News지를 상대로 도난 피해자가 제기한 불만신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신청인은 도난 사건을 당한 후 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 동의했고 그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었다. 문제의 기사는 신청인의 이름과 거주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신청인의 집이 18개월 동안 세 번 도난당했고, 이로 인해서 신청인이 집의 보안장치를 강화하였으며 신청인이 26세의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포함한 다른 신원정보도 함께 게재하였다.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을 공

표하지 말라는 반복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측이 기사에서 자신의 신원을 노출시켰다고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신문사가 게재한 기사에 대해 신청인과 신문사측의 논쟁 속에서, 신문평의회는 신청인의 이름이 공표될 경우, 보복의 위협성에 시달릴 수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주목하였다. 신문사는 신청인의 이름만을 밝혔으므로 신청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의 요청이 없었지만 신청인의 성은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신문평의회는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조선일보 상대 5억 손해소송 권노갑 씨 패소판결

서울지법 민사26부는 6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내가 정치자금을 살포한 후 무마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는 듯한 사진과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권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근태 의원

의 선거자금 양심선언 파문이 불거졌을 당시 조선일보사가 ‘권노갑 정치자금 살포, 돈받은 후보·출처 밝혀야’라는 제목의 기사와 자택에서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갖는 모습의 사진을 보도했으나 여기에는 권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자택거실 사진을 게재해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권씨는 공인으로서 당시 정치자금의 불법지원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었고, 측근들과 회의하는 모습은 회의 장소가 자택 거실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2002. 12. 7(A33면)

“실부 선훈이 강간범 몰아” 주병진 씨 손해소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7월 무죄로 풀려난 개그맨 겸 사업가 주병진 씨가 6일 자신을 고소한 강모씨와 당시 이를 보도한 모방송사 등 4개 언론사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모두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주씨는 소장에서 “강씨는 돈을 갈취하기 위해 강간상처를 조작, 경찰에 신고해 본인을 강간치상범으로 몰아 본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언론은 이에 대한 확증도 없이 본인을 ‘여대생 강간범’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제작년 11월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에서 강씨를 성폭행하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2002. 12. 7.

신인가수에 돈 받은 MBC PD 불구속 기소

서울지법 강력부(부장 이삼)는 28일 신인가수를 방송에 출연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MBC PD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12월

서울 여의도 MBC방송국 근처 다방에서 신인가수 김모씨의 부친으로부터 “가요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뒤 김씨측으로부터 2,500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과 도장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돈 중 일부를 사용했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돌려준 점 등 정상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2. 11. 29.

‘총풍 허위보도’ 장석중 씨, 동아 기자에 소송

서울지법 민사25부는 13일 이른바 ‘총풍(銃風)’사건의 3인방 가운데 한사람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장석중 씨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아일보 이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씨는 장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풍사건에 대한 형사 항소심 재판부가 ‘사전 모의나 조직적인 무력시위 요청은 없었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 기사는 ‘한씨와

장씨가 베이징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나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사건의 실체다’라며 허위사실을 보도해 장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2. 11. 14.

월간조선은 문화방송의 반론보도문 게재해사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 공현)는 11월 8일 문화방송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월간조선은 문화방송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간조선이 2002년 6월에 발생한 서해교전과 관련, 문화방송이 방영하는 뉴스데스크 등의 프로그램에서 서

해교전 사태의 본질이 우리 어민의 월선 조업과 이에 대한 해군의 통제 부재에 있다고 왜곡하거나 오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여 신청인이 인격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신청인은 기사내용이 객관적 사실

에 입각하였고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반론보도 청구권은 피해자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시정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의문사위 악의적 왜곡' MBC 상대 손해소

조선일보는 28일 "매주 금요일 밤 방송하는 MBC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방송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미디어비평의 최용익 제작팀장, 담당 기자와 PD 5명, 성경환 앵커 등 8명에 대해 3억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선일보는 소장에서 "MBC 미디어 비평이 지난 9월 13일 '죽음의 진실' 가로막는 언론'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조선일보가 의문사위의 발표에 흠집을 내려는 저의로 허 일병과 같이 근무했던 부대원들의 진술을 왜곡·인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은폐·왜곡했다'고 허위사실을 방

송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또 "미디어비평은 '이 같이 허 일병의 죽음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크게 보도한 것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방송하는 등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2. 11. 29.(A34면)

강원랜드, 내일신문 상대로 한 반론보도청구소송 승소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 공현)는 9월 27일 강원랜드가 내일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내일신문은 2002년 3월 26일자에 신청인이 운영하는 카지노 영업과 관련하여 강원랜드에서 고객명의를 도용,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빼돌렸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피신청인은 취재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사실확인을 구하고 자료협조를 요청하는 등 기사내용에 신청인의 입장이나 해명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고 보도 이후 신청인의 보도자료를 통한 반론을 반영함으로써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지만 신청인이 이를 외면하고 허위의 해명만으로 일관

하였으므로 반론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이 언론사인 피신청인의 취재에 협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호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허위의 해명이라는 이유로 반론의 게재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나라, "허위사실 보도 명예훼손" 시사저널 손해소

한나라당은 8일 "허위사실의 보도로 명예가 손상됐다"며 주간지 시사저널을 발행하고 있는 (주)독립신문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나라당은 소장에서 "시사저널은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부인 한인옥 씨가 기양건설 감병량 회장 부부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의 기사를 보도, 이 후보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줘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언론기관이라 하여 사

실확인이 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할 자유는 없다"며 "시사저널이 고의로 허위보도를 한 이상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2002. 11. 9.

조선일보, 한겨레·시사저널 상대 각각 1억 손해

조선일보는 8일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신문사와 시사저널을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선일보는 소장에서 “한겨레신문사는 지난 9월 27일자 ‘한나라당 4억 달러 복지원 주장 어떻게 나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사가 마치

한나라당과 짜고 근거 없는 ‘설(說)’ 주 고반기를 통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또 “의문사진상위원회의 ‘허 일병 의문사’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을 빠짐없이 취재·보도했는데도

시사저널이 지난 9월 12일자 ‘허 일병 의문사 진상추적, 조선일보가 틀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마치 조선일보사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조작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2. 11. 9.

노후보 지지광고 게재 한겨레신문 간부 기소

서울지검 공안1부는 25일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낸 혐의로 출판업자 김모 씨(58)와 김씨가 의뢰한 광고를 게재한 한겨레신문 광고국 간부

고모 씨(53)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 28일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의견 광고를 한겨레신문

에 실은 혐의다. 고씨는 광고 내용이 위법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도 광고를 계속 게재한 혐의다.

동아일보, 2002. 10. 26.(31면)

중앙, 한겨레상대 손해배상 패소

1999년 10월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탈세 혐의로 구속될 무렵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와 사실 등 모두 8건을 문제삼아 중앙일보사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 부

장판사)는 10일 중앙일보사가 10억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이 사건에 대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중앙일보 쪽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겨레>의 관련 보도를 허위 보도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보도내용이 있으나 당시로서는 진실로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한겨레>가 당시 보광그룹 탈세사건과 관련해 홍 사장의 범죄 사실에는 침묵한 채 언론탄압 주장을 펼친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와 사실, 만평 등을 실자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겨레, 2002. 10. 11(14면)

‘제보자 주장 미확인 보도’ 충청일보 기자 구속

제보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할 경우 이를 미필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박정희 판사)은 지난 29일 출몰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된 충청일보 박모 대전취재본부장과 오모 기자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실에 근거해 기사화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기사화함으로써 결국 미필적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모·오모 두 기자는 지난해 10월 5일자 충청일보에 실린 <공문서 위조 ‘나물라라’ 제하의 기사에서 대전시 중구청 환경보호과가 폐기물처리업체인 D사를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해 주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인 바른언론 대전시민연대는 이 보도가 다른 업체의

제보를 기초로 사실확인 없이 쓰여졌으며 두 기자와 충청일보 사장, 편집국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세민 집행위원장은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당사자가 공무원 신분인 관계로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이를 대행케 됐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언론 또한 그동안의 보도태도에 대해 자성해 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02. 10. 31(3면)

김태정 전 법무장관 실복 승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5일 조선일보의 잘못된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태정 전 법무장관이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김씨에게 3천

만원을 지급하고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G그룹 회장 이용호 씨의 구명 로비 여부를 다룬 기사의 목적은 공익성이 인정되지만 진실이란 증거가 없고, 검찰이 공식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 검찰 간부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전해들은 사실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2. 10. 26.(29면)

“언론사 세무조사 정보공개 산돼”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8개 언론·사회단체들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당국이 탈세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각종 행정제재를 가하고 관련자료를 보유, 또 다

른 탈세방지나 적발에 이용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관련 정보의 공개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까지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무조사 대상자선정, 실시방법 등을 공개하면 납세자들이 정당한 납세를 기피, 세무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과세를 통한 재정확보와 조세정의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자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8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해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학술연구·행정감시 등을 목적으로 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세금부와 처분 등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2. 10. 24.

의문사위,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소송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11일 허일근 일병의 의문사와 관련,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도 없는 짜맞추기식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위원회는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지난 8월 30일자 기사에서 위원회의 허일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법의학 감정을 무시하고 신뢰성 없는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도, 위원회의 명예와 공신력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02. 10. 11.

이도준 씨, 3년만에 뒤늦게 기소

서울지검 형사4부(조근석 부장검사)는 지난 99년의 이른바 ‘언론대핵문건’ 사건과 관련, 문건 절취 혐의로 전 평화방송 기자 이도준 씨를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4일 뒤늦게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9년 7월 서울여의도에 있는 이종찬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개인 사무실에서 전 중앙일보 문일현 차장이 작성한 ‘성공적 개혁추진을 위한 외부 환경 정비 방안’이

란 제목의 A4 용지 7장짜리 문건을 비서관 신모 씨 책상서랍속에서 발견, 사무실 복사기로 1부를 복사한 뒤 절취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99년 11월 1일 이씨를 문건 절취 혐의로 구속했지만, 보름뒤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훔친 문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일 개연성이 있어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씨를 석방, 벌리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훔친 것은 사본이지만 원본의 내용이 합쳐진 ‘화체(化體)’이기 때문에 절도 혐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을 인지한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묵은 사건을 털어낸다는 차원에서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이씨를 기소했다”는 설명 외에 뒤늦은 기소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2002. 12. 4.

박영식 위원장, 유럽 3개국 언론계 시찰

박영식 위원장, 김용주 기획실장은 서유럽 3개국의 언론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고 11월 4일 귀국했다. 10월 24일 출국한 일행은 스페인의 카탈루냐 언론평의회, 포르투갈 언론최고위원회, 프랑스의 Le Monde 신문사를 차례로 방문해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의견 및 자료를 교환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다짐했다.

카탈루냐 언론평의회에서 시찰단 일행은 Francesc González Ledesma 회장 및 Joaquim Perramon Palmada 사무총장과 양 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Ledesma 회장은 언론평의회가 카탈루냐 주의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협회가 설립한 자율기구로서 협회가 정한 윤리강령에 따라 신청인의 불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고 밝히고 한국의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포르투갈에서는 언론최고위원회를 방문하여 Armando Torres Paulo 위원장, Jose Garibaldi 부위원장, Maria de Lurdes Monteiro 위원과 면담했다. Paulo 위원장은 언론최고위원회가 헌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

해자의 불만신청 외에도 직권으로 언론사에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신문·방송·광고 등과 관련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했다. 또 현재 포르투갈에서 언론개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르몽드 신문사에서 는 Robert Sole 옴부즈맨, Beatrice Malessena 반론권 담당자와 르몽드지의

독자 불만접수 처리 절차 및 내용에 대해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외부의 강제에 의하지 않고 언론사 자율적으로 독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르몽드지 특유의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찰에는 강현석 총무팀 차장이 수행했다.



〈스페인 카탈루냐 언론평의회에서 : 왼쪽부터 김용주실장, Francesc González Ledesma회장, 박영식위원장, Joaquim Perramon Palmada사무총장, 강현석차장〉

전북·경인지역 언론사대표 초청 간담회 가저

박영식 위원장은 10월 15일 전주에서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1월 20일에는 수원에서 경인지역 언론사 대표들

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효율적인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언론의 역할 및 지역 언론의 현실에 대해 논의했다.

차재영 대전중재위원, 위원직 사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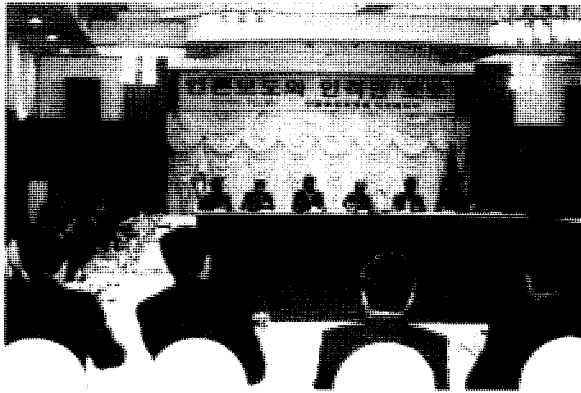
대전중재부 차재영 위원(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이 미국 텍사스 주립대 교환교수로 가계됨에

따라 10월 언론중재위원직을 사퇴했다. 차 전 위원은 2004년 2월까지 교환교수로 재직할 예정이다.

대전·제주지방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홍보와 효율적 운용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18일과 11월 29일 대전 유성호텔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각 지역 인사들을 초청하여 지방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지방토론회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라는 주제 논문을 발표한 차재영 위원(충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90년대 후반부터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중재신청과 명예훼손 소송의 급격한 증가로 각 언론사들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보도를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언론윤리 및 법제 교육과 훈련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언론사 내에 옴부즈맨이나 자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사의 보도기사에 대한 상시적인 비평과 검토작업을 실시” 할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우리 법원은 민주화된 사회에 걸맞게 공직자나 공인에 대한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예훼손 판결의 기준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지방토론회에서는 강정홍 위원(전 제민일보 편집국장)이 “자유언론과 명예훼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강 위원은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그 책임 또

한 막중하다는 사실을 언론인이 깨달아야 하며, 급증한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접근은 역시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의식이 상대적으로 진전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는, 언론 내부의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지난 10월 2일 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다. 박영식 위원장의 업무보고 후 실시된 질의에서 의원들은 현행법상 중재대상이 아닌 인터넷 언론을 중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당시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중재결정의 효력이 없어지는 이의신청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선심위 결정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선거법 벌칙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심위 결정 대

부분이 주의, 경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언론사의 특정후보지지, 최근 국가기관의 중재신청건수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 및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빈발·소송금액의 고액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위원장은 위와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안)을 이미 성안했으며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위헌 논란이 있는 선거법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한철, 『방송의 현실과 이론』, 범우사, 2002.
- 방송위원회, 『미디어선거시대 선거방송 보도의 방향』, 방송위원회, 2002.
- 이현구, 『세상에서 가장 쉬운 취재보도로』,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2.
- 한국언론재단 편, 『언론 명예훼손 핸드북 Q&A 100』, 한국언론재단, 2002.
- 강남준, “선거결과 예측 여론조사의 개선방안 : 유선전화 조사의 대안적 방법”, <미디어선거시대 선거방송 보도의 방향>, 방송위원회, 10. 30.
- 강원택,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정치적 효과와 의미”, <2002년 대통령 선거와 여론조사 보도의 쟁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0.18.
- 강정홍, “자유언론과 명예훼손”,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지방토론회 발표 논문, 2002. 11. 29.
- 공병철, “사이버 선거보도 모니터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 보도 모니터 어떻게 할 것인가?>, 시청자연대회의, 10. 22.
- 권혁남, “선거보도의 관행과 문제점”, 『언론중재』, 2002년 가을호.
- 권혁남, “선거보도 모니터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 보도 모니터 어떻게 할 것인가?>, 시청자연대회의, 10. 22.
- 권혁남, “대통령 선거와 지역 언론의 역할”, 대전언론문화연구원 등 주최 세미나, 2002. 11. 20.
- 김경호, “MP3의 진보와 온라인 음악 저작권 침해 : 냅스터(Napster)와 소리바다 판결의 의의”, 한국언론학회 200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002. 10. 12.
- 김기태, “매체환경변화에 따른 시청자 운동의 방향”, 한국언론정보학회 2002년 가을철 학술발표대회, 2002. 10. 11.
- 김대호,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산업 구조의 변동”,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와 바람직한 방송질서>, 한국방송학회, 10. 11.
- 김봉현, “기사형 광고의 윤리적 문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개최 세미나, 2002. 10. 25~26.
- 김영호, “선거보도심의창구에 비친 언론보도”, 『언론중재』, 2002년 가을호.
- 김우룡, “한국방송의 구도 및 규제제도”,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 확립 방안>, 한국방송학회, 10. 10.
- 김재영,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방송문화』, 2002년 11월호.
- 김재협,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문과 방송』, 2002년 10월호.
- 김재협,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명예훼손 소송 판결”, 『신문과 방송』, 2002년 11월호.
- 김정기, “신문의 2002년 지방선거보도 이용과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회 200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002. 10. 12.
- 나미수, “영국의 새 커뮤니케이션법”, 『신문과 방송』, 2002년 10월호.
- 박형상, “소송 위축효과, 문재완 반론에 대한 재반론”, 『신문과 방송』, 2002년 10월호.
- 박창희, “의견광고를 중심으로 본 광고책임의 문제”, 『신문과 방송』, 2002년 11월호.
- 성낙인, “선거법과 언론”, 『서울대 법학』, 제43호, 2002.
- 심 훈, “사회책임 이론에 근거한 미국 언론의 보도 역할

- 평가 : 20세기 후반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200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002. 10. 12.
- 유승용, “냉소주의 부추기는 선거보도, 대안없나 - 대선관련 보도 내용분석”, 『신문과 방송』, 2002년 11월호.
- 유승관, “1996년 미국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이 소수인종 방송과 이블의 소유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200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002. 10. 12.
- 유재천, “여론조사보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 대선여론조사 및 방송보도>, 한국방송기자클럽, 10. 25 ~ 26.
- 유호진, “대선 관련 TV 여론조사보도의 현황과 쟁점”, <2002년 대통령 선거와 여론조사 보도의 쟁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0. 18.
- 이건혁, “미디어 프레임이 부정감정, 정치병소, 정치효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회 200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002. 10. 12.
- 이승선, “광고와 인격권의 갈등에 대한 법적 판단의 특성 연구 : 명예훼손 관련 광고판례를 중심으로”, 『광고연구』, 2002년 가을.
- 이용성, “위법적 취재관행과 탐사저널리즘”, 『언론중재』, 2002년 가을호.
- 이용식, “취재현장에서 본 선거보도”, 『언론중재』, 2002년 가을호.
- 이은미, “뉴 미디어 시대, 수용자의 위상변화”, 한국언론정보학회 2002년 가을철 학술발표대회, 2002. 10. 11.
- 이인호, “디지털시대의 정보법질서와 정보기본권”, <디지털시대의 헌법 질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 2002. 11. 7.
- 이준용, “2002 대통령 후보 경선보도 평가”, 한국언론학회 2002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002. 10. 12.
- 이창현, “대통령 선거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현황과 문제점”, <미디어선거시대 선거방송 보도의 방향>, 방송위원회, 10. 30.
- 장하용, “방송정책과 시청자 주권”, 한국언론정보학회 2002년 가을철 학술발표대회, 2002. 10. 11.
- 장호순, “방송법의 현실과 문제점”,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와 바람직한 방송질서>, 한국방송학회, 10. 11.
- 전범수, “방송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 『방송문화』, 2002년 11월호.
- 정용준, “방송 소유구조의 다원화와 편성의 다양성”,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와 바람직한 방송질서>, 한국방송학회, 10. 11.
- 조준원, “화수분 같은 범죄사건, 그 보도의 함정”, 『방송문화』, 2002년 10월호.
- 조준원, “언론사건 소송에 대한 판결”, 『방송문화』, 2002년 11월호.
- 차재영,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위원회 대전 지방토론회 발표 논문, 2002. 10. 18.
- 최시중, “대선여론조사 분석과 전망”, <2002 대선여론조사 및 방송보도>, 한국방송기자클럽, 10. 25-26.
- 한상희, “정보화와 헌법”, <디지털시대의 헌법 질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 2002. 11. 7.
- 현경보, “방송사 내부에서 본 선거 여론조사보도의 실제와 한계”, <2002년 대통령 선거와 여론조사 보도의 쟁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0.18. □

On-Line 중재 상담실



저작권 침해에 당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강사입니다. 11월 8일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만든 초스피드 영어 단어 암기비법 책과 강의를 거의 흡사하게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방송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제 제자들은 마치 제가 그 사람 것을 도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더군요. 아무튼 위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문제의 인물이 사용한 방식은 ○○○ 선생의 저작권 침해임>을 사과방송하도록 하고 싶는데 어떤 중재를 신청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영어 학습방법이 사실은 본인이 개발한 것임을 방송을 통해 밝히고 싶다면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은 방송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정정 및 반론의 범주가 아닌 사과방송은 중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02-732-6031로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중재관련 문의

중국에 있는 제 친구가 한국에 왔다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행했던 친구와 손님들 간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났습니다. 제 친구는

결에서 몸싸움을 말렸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증인으로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일보가 제 친구가 주먹을 휘둘러 입건된 것으로 보도했으며 더욱이 저의 친구의 부친 이름까지 거들면서 매도했습니다. 한 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이며,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입니다.

문의하고 싶은 것은 저의 친구가 중국 조선족입니다. 이미 귀국했습니다. 조선족은 중국국적 소유자인데 외국인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이 가능한지, 또 신청할 경우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을 바랍니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외국인이라도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신청은 피해당사자인 외국인의 명의로 하셔야 하며, 중재신청을 하셔야 되면 중재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미 출국하여 중재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으나, 대리인 지정은 중재부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수가 있는지요. 도대체 ○○신문의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사를 보고 1,200여 개의 접포가 입점해 있는 선인상가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29일자 ○○신문 31면에 “용산선인상가상우회 상인대표권 선인상가비대위에 넘

기기로"라는 제목의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상우회에서는 상인대표권을 비상대책위로 넘기기로 합의한 바가 없으며, 선인상가 임차권협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새로 구성될 선인상가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기기로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선인상우회와 비상대책위에서 "선인상가대책위원회"를 공동 구성하여 임차권협상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초기 의견조율 중입니다.

따라서 선인상우회에서는 즉시 오보에 대한 정정기사를 요구합니다.

어찌하여 기사의 기본조건인 협약서와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지 상인들은 ○○신문사의 저의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정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독 거부 및 상인들과 함께 ○○신문사를 성토할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내용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R 문제가 된 ○○신문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고 있다면 당사자인 상우회의 명의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02-732-6031로 문의해 주십시오.

Q **신문에 회사에 난처한 기사가 났어요**

저는 그다지 크지 않은 여행사에 다닙니다. 그런데 ○○신문에 우리 회사가 덩핑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기사는 이 달 14일에도 덩핑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문제는 덩핑에 관한 정의나 기준도 없이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공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기사상 내용입니다. 기사를 보면 규모가 큰 회사가 거부한 단체여행을 우리 회사가 유치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거부한 단체여행을 위험성을 가지고서라도 유치한다는 점에 대해 덩핑이란 단어가 적합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사가 맑은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논리적으로 기사를 써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지, 제가 우리 회사에 조금에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 신문에 게재된 회사 관련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면 회사의 명의로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02-732-6031로 전화해 주십시오.

Q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나요?**

편파적인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송 내용을 미리 알고 막을 대책은 없는지요? 어떠한 단체를 막론하고 없어져야 할 단체로 매도해 버리는 내용이 공중파를 타고 흘러간다면 그 여파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음과 동시에 심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손쓸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R 아직 방송되지는 않았으나 방송을 앞둔 프로그램의 내용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당사자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방송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되기 이전의 문제는 도와드릴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결과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신청인(언론사)의 2회 불응으로 인해 합의간주된 경우, 그리고 중재부의 직권 중재결정에 대해 7일 이내 쌍방 중 어느 한 쪽에서도 이의신청이 없어 결정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위의 경우 언론사가 합의사항 또는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부의 직권 중재결정에 대해서 어느 한 쪽이라도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중재 출성립 결정이나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인해 중재가 결렬되었다면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TV뉴스보도에 대한 문의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당한 일을 문의 드립니다. TV뉴스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정정, 사과 방송이 가능한지 혹은 보상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송의 10월 18일자 사건사고 보도에서 잘못된 보도로 한 사람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사건사고 보도 첫머리에 안양의 문모 씨가 자신의 아이들을 볼모로 자살소동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모 씨가 자살을 하려고 한 이유를 "아내가 밤마다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유흥업소에 나가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 문모 씨와 그 아내는 이미 이혼한 상태이며, 아이들의 양육권은 이혼한 아내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몇몇 방송에서는 아예 이혼한 상태임을 보도하지 않고 마치 아직도 문모 씨와 그의 이혼한 아내가 결혼상태인 양 보도하였습니다.

둘째, 사건 당시 문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자살소동 이전에 이혼한 아내의 집에 쳐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1차로 피주소로 끌려갔다가 혼방된 후 다시 아내 집에 난입하여 아이들을 볼모로 자살소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셋째, 문모 씨의 아내는 유흥업소나 유흥업소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문모 씨가 술에 취해 한 술주정을 그대로 방송에서 여과없이 방송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문모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경찰들이 제압하기 힘들자, 술을 달라는 문모 씨의 요청에 막걸리에 수면제를 타 겨우 제압하여 연행하고 아이들을 구출해 낸 것입니다.

물론 방송에서 문모 씨라는 가명을 쓰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지만 당시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1,000여 명이 넘고 이혼한 아내와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근처에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TV의 무분별한 보도는 이혼한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며,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정정, 사과 보도가 가능한지 그리고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면 피해당사자가 경우 문모 씨의 부인의 명의로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전국으로 방송된 중앙방송사의 보도에 대해서는 서울중재부에, 그리고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중재부에 중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중재위원회가 도와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에 국한되며, 사과방송은 중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질적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법적 소송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에 의문을 갖고...

2001년 11월 27일자 ○○신문에 "○○, 중국에 200억원 규모의 TFT LCD수출" 제하로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기반의 벤처회사인 ○○이 최근 중국의 업체와 200억원 규모의 TFT LCD 수출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회사는 향후 TFT LCD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을 공동 추진하고 전자·정보·통신관련 신상품 연구·설계·합작생산 및 마케팅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 회사를 12월말에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두고 지금은 압류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제외한 前 직원 및 후임 직원이 형사고발을 했는데, 그런 계약서나 공문을 받고 기사를 썼는지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지 기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사를 낼 수 있는 것인지, 공정성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인지 글쓴이가 기자의 자질에 의문이 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일으켰다면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사에 직접 언급된 당사자나 기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만일 문제의 기사가 사실과 다름이 확실하고,님께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재처서는 기사에 게재인의 행위나 실명 등이 거론된 바 없으므로 중재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회사의 LCD 수출계약 기사화가 님의 명예나 기타 법익에 어떠한 손상을 가할 수 있다면 님께서는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겠지만, 그 기사로 인해 님께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 또한 중재신청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신청을 제외한 기타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 접수는 안되나요?

온라인대체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인데 이메일로는 접수가 안되나요?

R 중재신청의 대상이 되는 매체는 정간물법에 의해 등록된 신문, 잡지 등의 인쇄매체와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매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뉴스, 웹진 등 온라인매체는 저희 위원회의 중재대상이 아니며, 언론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보도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오프라인 매체에 보도된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중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정간물법에 의해 중재대상이 되는 매체의 경우라도 중재신청서는 해당 중재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팩스나 인터넷으로는 중재신청을 접수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 영업에 피해가 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사실 개요는 1999년 8월 회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동년 12월에 검

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어서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엉겁결에 당했던 일이라서 법률에 대한 검토 작업도 하지 못했고 지금의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요즈음도 검색사이트에서 기존의 기사(구속 기사만 있고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기사는 없음)를 검색할 수가 있어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가 있는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귀 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R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자 또는 범인으로 보도된 후 무죄판결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추후보도 청구는 사건이 무혐의·무죄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저희 위원회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도움을 드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적 구제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언론인의 횡포에 맞서서

한 언론인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기사를 내보냈을 경우 단지 정정보도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한 증거도 증인도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잘못을 인정했고,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만 분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피해가 너무 크며 그 언론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R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해당 언론에 직접 혹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이외의 방법으로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기자 등을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 등 법률적인 소송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언할 수 입장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실린 기사에 대해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소재 사립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번 여름방학기간 동안 수학특기적성시간에 J학원 인터넷 방송을 활용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방식은 인터넷방송을 보여주고 멈춤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식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방송은 재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라 제가 가르치는 1학년 학생에게는 상위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50분 수업시간 동안 많아야 3문제를 풀어야 하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는 50분 수업시간동안 1문제를 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수업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 ○○신문 게시판과 기자에게 왜곡된 제보를 해서 제가 학교법인으로부터 사적권유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수업은 방송으로 끝”이라는 제하의 문제의 기사는 교단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시설을 일부 교사들이 편법수업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최근 경기도 수원 Y여고 모 학생은 ‘선생님이 정규 수업시간에 J학원 인터넷 강의만 틀어놓고 놀기만 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는 인터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사 내용 중 “선생님이 정규 수업시간에 J학원 인터넷 강의만 틀어놓고 놀기만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교사인 제가 수업도 안하고 놀기만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신문기사로 해서 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귀하께서 지적하신 ○○신문의 보도 중 귀하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 경기도 수원 Y여고 모 학생은 “선생님이 정규 수업시간에 J학원 인터넷 강의만 틀어놓고 놀기만 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 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학년 주임은 수 차례에 걸쳐 J학원에 다니라고 유도성 발언을 하고 있어 이제는 지겹다”는 것이라라고 보도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글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께서 주장하신대로, 귀하께서 특정학원을 수강하도록 학생들에게 유도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언

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보도 관련

경찰서 사무실 책상 위에 놔둔 서류를 기자가 보고 한글 이니셜과 나이, 주소, 직업과 함께 그대로 보도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기자가 볼 수 있도록 놔 둔 경찰관의 책임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귀하께서는 기자가 경찰서에서 습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기사화할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를 문의하셨습니다.

보도가 되었음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해당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을 경우로,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당언론사에 보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아달라는 정정보도나 피해자의 입장을 보도하라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은 사실이지만 개인신상에 관해 필요 이상 자세히 보도해 누구인지 알게 한 경우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성명권이나 프라이버시침해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이나 과실로 기자에게 정보를 노출시킨 경찰관의 책임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차원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언론중재 대상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자 일간지 및 방송에서 용산기지 토양의 기름오염에 대한 서울시의 은폐의혹 사실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담당자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근무의욕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8월 5일 개인 지참한 토양시료에 대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이하로 나타난 사실이

있었으나 개인지참서류이고, 또한 기준미만 (오염되지 않았다는 뜻)이어서 서울시에 보고할 의무도 없었고, 그러므로 서울시가 이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가 '은폐'가 아닌 '은폐의혹제기'로 되어있어 이 문구가 언론의 중재신청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해당기사들이 '은폐'라고 단정하지는 않고 '은폐의혹제기'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 중재신청이 가능한 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서울시가 은폐한 사실이 없고 해당기사에서 제기된 의혹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서울시는 각 언론사를 상대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는 반론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는 중재신청은 해당공무원이 아닌 서울시가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중기간행물의증거등에관한법률 제16조 7항 참조).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02-732-6031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사에 관한 익명 및 허위기사

얼마전 저희 학교 축제에 도우미 선발 대회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자가 연락이 와서 인터뷰 요청을 하여 전화상으로만 간단히 몇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잊지도 않은 사실을 기재함은 물론 비판적인 글을 쓰면서 본인에게는 물어 보지도 않고 개인의 이름과 학년, 학과 등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지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추측하건대, 귀하께서 기자와 인터뷰하지도 않은 내용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하라는 요구하는 것이며, 이와 유사한 경우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 구할 수 있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

씨는 ~라고 인터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라는 식의 보도문이 될 것입니다.

다른 대처 방법으로는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기자 등을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보도문의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고, 언론중재위원회 차원에서는 조언할 수 입장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신청서 양식 및 중재절차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02-732-6031로 문의해 주십시오.



예측기사에 관하여

현재 우리 나라 일간지들이 제공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기사에 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야후, 네이버, 다음 등 대표적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사들이 대부분 관련 사안이 끝나기 전에 기사화하여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측이 틀릴 경우 초래할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있었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 모 대통령 후보가 참석했다는 기사가 경기 시작전인 14시 30분경에 야후 포털사이트에 일간지 기사실명으로 올라 있어서 의아한 생각으로 여러 사이트를 검색해본 결과 대부분의 뉴스 사이트에서 기사실명으로 버젓이 기사를 올려놔서 이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기사는 기사를 쓸 때 현실 그대로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런 예측기사가 그대로 통용되는 사회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 사회나 언론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 감독할 언론중재위원회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심의1팀입니다.

저희 중재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로 피해를 회복하고자 할 때 이를 접수하여 중재를 해 드리는 기관이며, 저희가 언론사를 감독, 관리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상의 보도내용은 저희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

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

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을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

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

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 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

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

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 송 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 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아니? 어떻게 이런 기사가...



불공정한 선거 기사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찾아 주십시오.
왜곡되고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바른 선거문화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심의합니다.
- 선거기사에 대한 후보자의 시정요구를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사과문, 정정보도문 게재 및 주의,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후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건을 회부받아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제보해 주십시오. (<http://www.pac.or.kr>)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담: (02)732-6023~4

<http://www.pac.or.kr>